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49-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3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위탁: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광선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승철 전문연구원  
                  윤병석 연구위원



## 요 약

---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고, 동 기준 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검통계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기준 항목별로 점검한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층연구를 통해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한다.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및 관련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통계와 이행지수를 활용하여 부문별,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실태와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운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 간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 관련 조사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2011년도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이 관

련법에 규정된 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2012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분석을 위해 농어촌 시·군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22명의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 여부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를 조사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전문가 30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3. 주요 연구 결과

우선, 점검통계를 활용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주거 부문의 하수도, 교육 부문의 방과후학교, 응급 부문의 도서·벽지서비스, 그리고 안전 부문의 경찰 출동 등 모두 4개 항목이다. 그러나 도서·벽지서비스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의 보다 세부적인 질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고, 경찰 출동의 경우 경찰청에서 코드 1(응급상황)에 대한 건별 출동시간이 아닌 시·군 평균 출동시간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이행실태 점검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도 대비 2013년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비교해 보면 많은 기준 항목의 이행실태가 향상되었다. 즉 32개 항목 중 21개 항목이 2011년 대비 2013년의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으며, 1개 항목은 목표 달성정도가 동일하였다. 반면, 6개 항목은 이행실태가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1개 항목(경찰 순찰)은 2013년에 신설되어 연차별 비교가 불가능한데다, 특히 관련 점검통계 구축도 불가능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하였다. 다른 3개 항목은 기준 내용이 개정되었거나 이행실태 점검방법이 수정되어 연차별 이행실태 비교가 불가하였다.

9개 부문 20개 항목 22개 지표를 통해 이행지수를 산출하여 부문별, 지역별로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고, 응급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낮으며,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군지역에 비해 도농복합시가 높다. 군지역은 보건의료, 교육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는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높다. 둘째, 도별 종합 이행지수는 제주도와 경기도가 가장 높고 전라북도가 가장 낮다.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7개 항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행지수가 1 이상이었으나 도시가스 보급률 등 8개 항목은 이행지수가 0.5 이하인 지역이 많아 위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2012~13년 간 종합이행지수 순위를 3개 분위로 나누어보면 전체 시·군 중 43개 시·군의 분위가 상승하고, 36개 시·군은 하락하였다. 상승한 시·군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문화 부문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된 지난 3년 간 문화 부문의 공공서비스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농어촌 주민들은 관람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지원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농어촌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수요가 어느 특정 연령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농어촌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과 같은 ‘작은’ 시리즈를 통한 시설 공급, 유희 공동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 공급,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을 통한 마을 또는 지역사회 단위의 문화활동 증진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으로는 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책적 기능 정립, ②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연계 강화, ③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사업 정비, ④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조직 정비, ⑤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축소와 목표 수정 등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 및 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①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 도입, ② 관계 부처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③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④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 방안 발굴 등이 필요하다.

## ABSTRACT

##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of 2013

The rural services standard as an advanced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1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The rural services standard as defined by the President's decree is to mean the criteria and level of minimum public services needed for people to live daily life in the rural areas, and is operat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The rural services standard is composed of 32 items from the 9 service sectors including housing, transportation, education, public healthcare, welfare, emergency, cultur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heir detailed items and level of goal are publicly published by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rural services standard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3 years. During the tim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REI) has annually monitored the level of achievement for the standard. KREI has reported the monitoring result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oke more active political competition for accomplishing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level of accomplishment for the standard in par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for the past 3 years. This implies that not only the political effect has been great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tandard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 system has brought up various problems during its oper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ural services standard such as policy programs, budget, regulations, plan, and so forth have been pointed out. The adequacy of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standard has been also brought up as a main problem. Thus at this point of time, it is needed to cool over the problems looking back the past years of the operation of the standard system.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is to review and evaluate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in each rural Sis and Guns, and in overall rural areas. Another study purpose is to analyse the problems of the standard system which have occurred in the past 3 years and to propose relevant improvement measur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pply of public services have been increased by operation of the standard system.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the policy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s is not relatively significant since duration of the standard system has not been long enough. Moreover, majority of rural residents are not aware of the standard system so active promotion is required for the future. Second, policy function of the standard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rom the medium and long term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standard system shall play a role as not only for 5 year mid-term policy goal but also as an ultimate standard as a long-term policy direction. Third,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to be amended for the standard system as not recommended but mandatory, and to be reflected in planning scheme in more concrete and detailed form. Fourth, a separate budget is needed to induce interests and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andard. Fif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s needed and reorganized not on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rom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omote policy efforts in achieving the standard. Lastly, the items and level of achievement are to be revised for reasonable operation of rural services standard.

Researchers: Kwang-Sun Kim, Seung-Chul Noh, and Byeong-Seok Yoon.

Research Period: 2013. 4~2013. 12

E-mail Address: yeskskim@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및 운영 경과 ..... 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의 목적과 방법 ..... 8

### 제2장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점검통계에 의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13
2. 이행지수에 의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66
3. 2011~13년 이행실태 평가 ..... 95

### 제3장 농어촌서비스기준 문화 부문 심층연구

1.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현황과 정책 의의 ..... 109
2.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 ..... 111
3.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방안 ..... 128
4. 문화 부문 심층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149

###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및 정책 수요

1. 조사 및 분석 개요 ..... 153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실태와 성과 평가 ..... 155
3.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관련 정책 수요 ..... 168

###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 발굴

1.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운영 방향 ..... 177
2. 정책 개선 과제 발굴 ..... 186

부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문별·부처별 사업 예산 .....	193
2.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 점검 결과 .....	198
3.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의 변화(2012~13년) ..	202
4.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	205
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설문지 .....	217
6.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설문지 .....	229
참고문헌 .....	241

## 표 차례

---

### 제1장

- 표 1- 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항목·세부내용 ..... 5
- 표 1- 2.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문별 사업 예산 ..... 7
- 표 1-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연차별 추진 방법 ... 12

### 제2장

- 표 2-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 14
- 표 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 15
- 표 2- 3.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내용 및 방법 ..... 22
- 표 2- 4.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10년 기준) ..... 25
- 표 2- 5.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 26
- 표 2- 6. 마을공동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행실태 ..... 27
- 표 2- 7.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 28
- 표 2- 8.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 30
- 표 2- 9. 대중교통 이행실태 ..... 31
- 표 2-10. 인도 구분 이행실태 ..... 34
- 표 2-11. 농어촌 학교(초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 35
- 표 2-12. 시·군별 우수고등학교 육성 이행실태 ..... 37
- 표 2-13. 폐교 재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행실태 ..... 38
- 표 2-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이행실태 ..... 39
- 표 2-15.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이행실태 ..... 40
- 표 2-16. 평생교육 프로그램 거점시설 이행실태 ..... 41
- 표 2-17. 주요 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 42
- 표 2-18. 주요 과목별 이행실태 ..... 43

표 2-19.	순회방문 진료 이행실태 .....	44
표 2-20.	의약품 구입 가능 이행실태 .....	46
표 2-21.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	47
표 2-2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이행실태 .....	49
표 2-23.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이행실태 .....	50
표 2-24.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	51
표 2-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서비스 이행실태 .....	52
표 2-26.	구급차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	54
표 2-27.	119 EMS구급헬기 운영 현황 .....	55
표 2-28.	해양경찰서 EMS 장비 장착 함정 및 헬기 현황 .....	55
표 2-29.	의료장비를 구비한 산림청 헬기 현황 .....	56
표 2-30.	방법용 CCTV 설치 이행실태 .....	58
표 2-31.	소방 출동 이행실태 .....	59
표 2-32.	도서관 도서 열람 및 대출 이행실태 .....	61
표 2-33.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	62
표 2-34.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행실태 .....	64
표 2-35.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이행실태(행정리 기준) .....	65
표 2-36.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	67
표 2-37.	부문별 이행지수의 시·군 평균 및 표준편차 .....	70
표 2-38.	주거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71
표 2-39.	시·도별 주거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	73
표 2-40.	교통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74
표 2-41.	시·도별 교통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	75
표 2-42.	교육 부문 평가 지표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76
표 2-43.	시·도별 교육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	77
표 2-44.	보건의료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78
표 2-45.	복지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80
표 2-46.	시·도별 복지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	81

표 2-47.	응급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81
표 2-48.	시·도별 응급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82
표 2-49.	안전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84
표 2-50.	시·도별 안전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84
표 2-51.	문화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85
표 2-52.	시·도별 문화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86
표 2-53.	정보통신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87
표 2-54.	시·도별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88
표 2-55.	지역별 2013년 종합이행지수	89
표 2-56.	시·도별 종합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90
표 2-57.	2012~13년 종합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변화	91
표 2-58.	군과 도농통합시의 2012~13년 종합이행지수 순위의 분포 변화	92
표 2-59.	시·군 종합이행지수 순위 변화의 시·도별 분포	93
표 2-60.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변화	99
표 2-61.	시·도별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달성률 비교	103
표 2-62.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평균	107

### 제3장

표 3- 1.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 항목 및 세부내용	111
표 3- 2.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2
표 3- 3.	주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2
표 3- 4.	독서 항목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113
표 3- 5.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114
표 3- 6.	문화 부문의 과거 3년 전과 개선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14
표 3- 7.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115
표 3- 8.	읍·면 내 도서 대여 가능 시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16
표 3- 9.	연간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 및 관람 장소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18
표 3-10.	응답자 특성별 연간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	119

표 3-11.	연간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 및 관람 장소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20
표 3-12.	응답자 특성별 연간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	121
표 3-13.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나 즐거움에 대한 주민조사	122
표 3-14.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	123
표 3-1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내용	124
표 3-16.	문화·여가 활동하기 좋은 장소	125
표 3-17.	문화·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26
표 3-18.	문화·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전문가 조사	126
표 3-19.	문화·여가 활동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127
표 3-20.	연차별 문화예술시설 배치 계획	131
표 3-21.	전라북도 문화인력 현황	132
표 3-22.	문화·복지 인력 배치 계획	133
표 3-23.	전북의 주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134
표 3-24.	진안군의 삶의 질 정책 추진 경과	136
표 3-25.	2013년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현황	148

#### 제4장

표 4- 1.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158
표 4- 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160
표 4- 3.	농어촌 주민들의 과거 3년 전과 비교한 기준항목별 개선 체감도 평가	162
표 4-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64
표 4- 5.	농어촌 주민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중요성 평가	171
표 4- 6.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172
표 4- 7.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별도 자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	174

#### 제5장

표 5- 1.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한 점검통계 구축 논의 사항	185
표 5- 2.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한 점검통계 구축 논의 사항	185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 1.	주거 및 교통 부문 이행지수 분포 .....	75
그림 2- 2.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 분포 .....	79
그림 2- 3.	복지 및 응급 부문 이행지수 분포 .....	83
그림 2- 4.	안전 및 문화 부문 이행지수 분포 .....	87
그림 2- 5.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분포 .....	89
그림 2- 6.	2012, 2013년 종합이행지수 분포 .....	92
그림 2- 7.	2012~13년 종합이행지수 변화 .....	94

### 제3장

그림 3- 1.	문화·예술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 .....	129
그림 3- 2.	전북의 문화 향유 관련 영역별 필요 문화·복지 시설 .....	130
그림 3- 3.	전북 김제의 지평선 시네마 개관식과 영화관 전경 .....	131
그림 3- 4.	문화·복지 프로그램 추진방향 .....	133
그림 3- 5.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입구 및 수영장 .....	137
그림 3- 6.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전경 및 공연장 .....	138
그림 3- 7.	폐교를 활용한 진안 창작공예공방 전경 및 청소년 체험장 ..	138
그림 3- 8.	진안 창작공예공방 전경과 공방 내 작품 전시실 .....	139
그림 3- 9.	수공예 동호회 공방과 퇴촌 연주인 동호회 공간 .....	143
그림 3-10.	예술가 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후용초등학교와 거주 시설 ...	145
그림 3-11.	후용공연예술센터 공연장과 의상·소품실 .....	145
그림 3-12.	송계아트스튜디오와 태백탄광문화연구소 예술교육프로그램 ...	147
그림 3-13.	군 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과 강원문화예술교육 공감마당 ..	149

**제5장**

그림 5-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안 .....	178
그림 5- 2. 당진시 석문면의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	189

# 제 1 장

---

## 서 론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및 운영 경과

####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도입 의의

- 200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서비스 제공에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 영국의 경우 1980~90년대 광우병의 창궐과 농어촌의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쇠퇴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2000년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였다(송미령 등, 2009a).
  - OECD에서도 2008년 독일 쾰른(Cologne)에서 개최된 농촌발전포럼에서 ‘농어촌 지역 서비스 전달’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상정하여 회원국 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OECD, 2008).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그리고 2000년대 말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송미령 등, 2009a).

- 김대중 정부까지 공공서비스의 공급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에 한정된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라는 공공부조형 사회서비스 관점에 기반하였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생활지원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 증대라는 관점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정책이 전환되었다.
  - 이에 더해 2000년대 말에는 기존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대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송미령 등, 2009b).
-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내외 정책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1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고시’로 공표하였다.
- 기존 논의들에 의하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학술적 개념).
- 이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재정의하고 있다(법적 개념).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제44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목적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임을 밝히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의의는 다음과 같다(송미령 등, 2009a; 김광선 등, 2010).
  -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도입은 도·농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셋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정책 목표가 아닌,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전달체계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 입장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 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섯째, 정부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수립, 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과정의 선진화 등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경과

### □ 관련법과 계획의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근거법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도 각 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각각의 해당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입 당시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2013년부터 ‘안전’ 부문과 그 하위의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현재는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용되고 있다(2013.9.9일자 농식품부 고시).
  - 최근 농어촌 지역에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역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라는 기준을 신설하였다.<sup>1)</sup>
  - 이는 살인(미수 포함),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과 같은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던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 신설 항목 외에도 교육 부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과 보건의료 부문의 ‘순회방문’ 항목, 안전 부문의 ‘방범설비’ 항목의 세부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의 경우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기존의 내용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로 수정하였다.
  - ‘순회방문’ 항목은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라는 기존의 내용에 따라 순회방문 서비스를 모든 마을에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하기도 하며, 실제 목표의 달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되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로 수정하였다.
  - ‘방범설비’ 항목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를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 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로 보다 구체화 하였다.

---

1) 2012년 10월 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09년 1천46건에서 2011년 1천471건으로 2년 새 40% 정도 증가하였음.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농어촌 주민 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012년), 범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주민의 비중이 59.3%에 달했음.

표 1-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항목·세부내용

부문	항목	세부내용
1. 주거	(1)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2)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3)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2. 교통	(6)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7)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8)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11)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12)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13)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14)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4. 보건의료	(15)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 가능하다.
	(16)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17)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5. 복지	(18)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20)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21)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22)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응급	(23)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24)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7. 안전	(25)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26) 방범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27)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28)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8. 문화	(29)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3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31)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9. 정보통신	(32)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 관련 사업과 예산의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목표 달성(기준 이행)을 위한 별도의 정책사업과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 즉 목표 달성(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 사업 및 예산 역시 큰 틀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2기 삶의 질 계획의 사업예산은 5년간(2010~14) 총 34조5천4백억 원이며, 이 중 국비는 22조6천8백억 원이다.

-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 부처의 예산은 2013년 기준 연간 3조4천2백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이 30.8%, 환경부 예산이 28.9%,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5.1%, 여성가족부 예산이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부문별로는 주거 부문이 47.6%, 복지 부문이 27.4%, 보건의료 부문이 6.4%, 안전 부문이 5.3%, 교육 부문이 4.9%, 교통 부문이 3.5%, 문화 부문이 2.8%, 응급 부문이 1.2%, 그리고 정보통신 부문이 0.8%를 차지한다.
  - 전체 예산은 2012년도의 3조7백억 원에 비해 11.6% 증가하였다.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문별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부문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전체
2012년	1,430,861	109,911	174,929	189,912	830,397	36,72	169,163	96,714	29,426	3,068,034
2013년	1,629,548	120,229	169,442	217,655	937,790	42,703	182,051	96,842	28,332	3,424,592
증감	13.9%	9.4%	-3.1%	14.6%	12.9%	16.3%	7.6%	0.1%	-3.7%	11.6%

주: 자세한 사항은 &lt;부록 1&gt; 참조.

## □ 추진 조직의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동 협의회는 위원장(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영, 달성 정도의 평가 등에 대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 2012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 동 업무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와 동 법의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는 전문지원기관 지정 이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추진되어 오고 있다.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의 목적과 방법

###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목적<sup>2)</sup>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그 법적 근거의 마련과 운용을 위한 계획체계 내 수용에도 불구하고 달성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노력·권고 사항이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나 지자체계획의 경우는 해당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제시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

2) 본문의 해당 부분은 김광선 등(2012)의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수록한 것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또는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정부 및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 둘째, 달성해야 할 객관적 목표와 현 실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셋째,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각 농어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실태를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비교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농어촌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이라는 객관적 기준, 그리고 현 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다섯째,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의 평가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예산편성 및 신규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2013년도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기준 자체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평가하는 것 외에도, 지난 3년 간 운영해온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목적을 지닌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선진제도 중 하나로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도입되었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을 반영해야 할 제2기 삶의 질 향상 계획이동 제도 시행에 앞서 수립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 외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의 불명확성, 별도 예산이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관심 저하, 기준 내용 자체의 문제, 추진 조직의 미비, 점검·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정책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5년(제3기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간)을 준비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장기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주요 내용과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해 연도부터 매년 각 기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연차별 공통추진업무와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 연차별 공통추진업무는 점검통계와 이행지수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매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통계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공표하는 공식통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자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별 이행실태와 기초자치단체별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 또 점검통계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이행지수로 변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 이행실태를 비교 평가하고 있다.
-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층연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별 조사로 추진되어 왔다.
  - 2011년도의 경우에는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정도,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시·도계획(충남)과 시·군·구계획(화천·장흥)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정도, 기초자치단체 단위

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2012년도의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심층연구로서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에 대한 심화연구,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와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를 발굴하였다.<sup>3)</sup>
- 2013년도의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문화 부문에 대한 부문별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어촌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특별추진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

3) 해당 모범사례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총괄팀에서 보완하여 2013년 7월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한국농촌경제연구원)로 엮어서 발간하였음.

표 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연차별 추진 방법

구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1년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 분석 (4)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2012년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2013년에는 제외)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 ‘총괄팀’에서 별도 자료집 발간
2013년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문화 부문 심층연구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 제시

## 제 2 장

###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1. 점검통계에 의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1.1. 이행실태 점검 개요 및 방법

##### 1.1.1.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9개 부문, 32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4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 32개의 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는 내용에 따라 2~3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점검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한다.
  - 예를 들어 주거 부문 난방 항목의 내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의 경우, ①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수준’과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우선 추진’의

4)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부문, 31개 기준(44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고지 제2013-131호에 의해 9개 부문, 32개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45개 세부기준으로 구분되었음.

두 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45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총 53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식통계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협조와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가 필요하다(표 2-1).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에 있어 공식통계로 구축이 가능한 것은 12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협조(각각 29개, 11개)가 필요하다.
  - 교통 부문의 1개 세부기준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sup>5)</sup>
    - 교통 부문: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해운법」)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단위: 개

9개 부문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통계 보완		기타
					중앙행정기관 협조	지자체 행정조사	
주거	5	8	9	2 <sup>6)</sup>	5	2	
교통	3	5	5	1	1	2	1*
교육	6	7	7	0	6	1	
보건의료	3	3	5	1	1	3	
복지	5	6	9	6	2	1	
응급	2	3	4	0	4	0	
안전	4	5	6	0	6	0	
문화	3	6	6	2	2	2	
정보통신	1	2	2	0	2	0	
계	32	45	53	12	29	11	1

주: \*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 항목을 의미함.

- 5) 주거 부문 상수도 항목의 세부기준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의 경우 2012에는 「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3년에는 실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

- 공식통계를 비롯하여 중앙행정기관 내부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점검통계를 구축하였으나, 일부 구축하지 못한 통계는 대체자료를 활용하였다(표 2-2 참조).
  - 경찰 순찰 항목과 관련하여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현황과 순찰계획 자료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의 공간 단위가 부적합하였다.
  - 행정리별 방범용 CCTV 현황에 대한 자료 역시 아직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아 행정조사 결과로 대체하여 활용하였다.
  - 경찰 출동 소요시간 자료는 시군별 평균 소요시간만이 구축 가능하였다.
    - 응급서비스, 소방 출동의 경우 건별 소요시간이 협조되어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하였다.

표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부문	관련 항목	통계 구분	통계명	구축 여부	비고
주거	주택	주통계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2010년 기준)	○ (통계청)	
	난방	주통계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12년 기준)	○ (산자부)	
		부통계	시·군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결과(2012년 누적)	○ (산림청)	
			시·군별 그린홈100만호사업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보급현황) (2012년 누적)	○ (산자부)	
	마을 공동시설	주통계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 (2013. 11 조사)	○ (행정조사)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현황(2013. 11 조사)	○ (행정조사)	
	상수도	주통계	상수도 통계연보(상수도보급현황) (2011년 기준)	○ (공식통계)	

6) 2012년 점검까지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공표통계로 분류함. 그러나 실제로 이 비율은 공표되지 않을뿐더러 통계청(통계개발원)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에 ‘중앙행정기관 내부자료’로 분류함.

부문	관련 항목	통계 구분	통계명	구축 여부	비고
	상수도	부통계	지자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관리 현황(2012년 기준)	○ (환경부)	
	하수도	주통계	하수도 통계연보(하수도보급현황) (2011년 기준)	○ (공식통계)	
교통	대중교통	주통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수)(2010년 기준)	○ (공식통계)	
		부통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행 마을(2013. 11 조사)	○ (행정조사)	
	여객선	주통계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2012년 기준)	○ (국토부)	
	인도 (人道)	주통계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구분 계획 여부 및 결과 구축 (2013. 11 조사)	○ (행정조사)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주통계	읍·면별 초·중학교 현황 (2013. 4 기준)	○ (교육부)	
		부통계	읍·면별 초·중학교 통학버스 제공 현황(2013. 11 기준)	○ (교육부)	
	고등학교	주통계	시·군별 우수고교 및 기숙형 고교 현황(2009년 기준)	○ (교육부)	
	폐교	주통계	시·군별 초중고 폐교별 주민 의견 수렴 현황(2012년 기준)	○ (교육부)	
	방과후 학교	주통계	시·군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2012년 기준)	○ (교육부)	
	의견수렴	주통계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2013. 11 조사)	○ (행정조사)	
	평생교육	주통계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2013. 4 기준)	○ (교육부)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주통계	내과·산부인과·치과 병원, 한방병원, 물리치료실 현황 (2012년 기준)	○ (복지부)	
		부통계	시·군별 산부인과 분만 여부 (2013. 11 조사)	○ (행정조사)	
	순회방문	주통계	의료 취약 마을 현황 (2013. 11 조사)	○ (행정조사)	
			행정리별 보건직원 순회방문진료 현황(2013. 11 조사)	○ (행정조사)	
의약품 구입	주통계	전국사업체조사(의약품/의료용품 소매점, 공공의료 기관 현황) (2011년 기준)	○ (공식통계)		

부문	관련 항목	통계 구분	통계명	구축 여부	비고
복지	노인	주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신청자, 판정자, 급여자 등 현황) (2012년 기준)	○ (공식통계)	
			노인복지시설현황(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현황)(2012년 기준)	○ (공식통계)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서비스 수혜자 현황 (2013. 11 조사)	○ (행정조사)	
	청소년	주통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2년 기준)	○ (공식통계)	
	아동	주통계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전국지 역 아동센터 현황)(2012년 기준)	○ (공식통계)	
			각 시·군 읍·면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2년 기준)	○ (교육부)	
	영유아	주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2012년 기준)	○ (공식통계)	
			읍·면별 보육시설현황 (2012년 기준)	○ (복지부)	
	다문화 가족	주통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서비스 제공 현황(2012년 기준)	○ (공식통계)	
응급	응급 서비스	주통계	시·군별 각 건별 도착소요시간 자료 (2012년 기준)	○ (소방청)	
	도서·벽지 에 대한 응급 서비스	주통계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선박 및 헬기 현황(2012년 기준)	○ (해경청)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헬기 현황 (2012년 기준)	○ (산림청)	
		시·도별 EMS전용헬기운영 현황 (2012년 기준)	○ (소방청)		
안전	경찰 순찰	주통계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2012년 기준)	△ (경찰청)	경찰서별(시·군별) 현황 구득 (활용 불가)
			행정리별 일일 순찰 계획 (2012년 기준)	× (경찰청)	자료 미구축
	방법설비	주통계	행정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2012년 기준)	× (경찰청)	자료 미구축 (행정조사 자료 활용)
		부통계	시·군별 포구/항만 현황 및 방법용 CCTV 설치 현황(2012년 기준)	○ (해경청)	

부문	관련 항목	통계 구분	통계명	구축 여부	비고
	경찰 출동	주통계	시·군별 각 건별 도착소요시간 자료 (2012년 기준)	△ (경찰청)	시·군별 평균소요시간 구득
	소방 출동	주통계	시·군별 각 건별 도착소요시간 자료 (2012년 기준)	○ (소방청)	
문화	독서	주통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문고) 현황) (2013. 7 기준)	○ (공식통계)	
		부통계	대안 방안 운영 여부 (2013. 11 조사)	○ (행정조사)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주통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12년 기준)	○ (공식통계)	
			시·군(지방문화원)별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수 (2012년 기준)	○ (문광부)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2012년 기준)	○ (문광부)	
	찾아가는 문화공연	주통계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최 현황(2013. 11 조사)	○ (행정조사)	
정보 통신	초고속망	주통계	시·군별 초고속망 구축 현황 (2012년 기준)	△ (창조과학부)	해당 기준 100% 달성으로 간주함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2012년 기준)	○ (창조과학부)	

### 1.1.2. 이행실태 점검 방법

#### □ 점검 방법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4년까지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그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기본적으로 농어촌 시·군 전체의 ‘달성률’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달성률이란, 어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서 전체 대상 지역 중 달성하고 있는 지역의 비율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달성률은 ‘읍부 총 가구 수(A) 대비 읍부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B)의 비중’, 즉 ‘ $B/A \times 100$ ’으로 계산된다.
- 지자체를 대상 지역으로 하는 항목의 경우, ‘달성 시·군의 비율’을 해당 서비스기준의 달성률로 제시한다.
  - 예를 들어, 청소년 항목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유무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그 전체 달성률은 전체 138개 시·군 중 몇 개 시·군에 해당 시설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 각각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그 내용에 따라 달성되어야 하는 지역 단위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단위의 통계가 필요하다.
  - 농어촌서비스기준마다 달성되어야 하는 공간 단위가 시·군, 읍·면, 행정리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총 인구 및 가구, 읍 또는 면 지역 가구, 읍·면 수, 행정리 수 등을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계산한다.
  - 예를 들어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개별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파악하면 되지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에 대해서는 시·군별 면부 가구와 면부 상수도 보급 가구를 알아야 한다. 또한 ‘공동시설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경우 각 행정리의 공동시설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의 대상은 전국 138개의 도농복합시 및 군으로 하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필요 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하였다.
  - 현재 농어촌 시·군은 충남 연기군이 2012년 7월 1일 부로 세종특별시에 편입됨에 따라 138개 시·군이다.
  - 충남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 부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점검통계에 따라 2011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도농복합시로 간주하였다.
- 행정리는 지자체 행정조사 시점(2013년 11월) 기준 행정리 수를, 그리고 읍·면은 2012년 기준 1,397개를 기준으로 한다.7)

- 단, 통계의 출처와 기준년도에 따라 2011년 기준의 읍·면 수(1,400개)와 센서스 및 지역조사 통계 이용 시 2010년 기준 행정리 수(36,295개)를 활용한다.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총 53개의 관련 통계(점검통계)를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점검통계의 기준년도를 직전 연도로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2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2012년 기준의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2011년도 통계를 활용한다.
    - 예를 들어 상하수도통계, 전국사업체조사 등은 아직 2012년 기준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2011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 지자체 행정조사의 경우 2013년 11월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결과는 2013년 10월 기준의 실태로 간주한다.

#### □ 농어촌서비스기준 32개 항목 점검 방법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4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 32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항목별 세부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당 세부기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sup>8)</sup>

7) 금번 이행실태 점검부터 연기군(現 세종특별시)과 당진군의 변동을 반영하여 2010년 기준 행정리 수와 2011년 기준 읍·면 수가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8) 2012년까지 이행실태 점검은 모든 세부기준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고시된 32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32개 항목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 첫째, 복수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비스기준 항목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이행실태가 해당 항목의 이행실태이다.
  - 예를 들어 주거 부분의 주택 항목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의 경우, 세부기준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둘째, 복수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되는 서비스기준 항목의 점검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 첫째, 복수의 세부기준 중 1개의 세부기준이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의 중심내용이고 나머지 세부기준들이 이를 보완하는 경우, 그 중심 세부기준을 달성하였는지 점검한다.
    - 예를 들어, 주거 부분의 상수도 항목의 경우, ①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와 ②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된다. 이때 ‘세부기준 ①’은 본 서비스기준의 중심내용이고, ‘세부기준 ②’는 이를 보완하는 지표이므로, ‘세부기준 ①’의 이행실태를 상수도 항목의 이행실태로 점검한다.
  - 둘째, 복수의 세부기준이 모두 해당 서비스기준의 중심내용일 경우, 그 세부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예를 들어, 복지 부분의 다문화가족 항목은 ①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와 ②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 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 두 세부기준 모두 해당 항목의 중심내용이다. 따라서 두 세부기준으로 모두 달성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을 검토한 결과, <표 2-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2-3.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내용 및 방법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비고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도시가스 미보급에 대한 보완 사항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수 /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한 개소 이상 있는 행정리 수 × 100	운영비 지원과 상설프로그램 지원 모두 달성되어야 함. 다만, 상설 프로그램 지원 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시·군별 면부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부 주민등록 인구 × 100	지자체 수질 검사 및 관리 는 상수도 미보급에 대한 보완 사항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시·군별 공공하수처리인구 수 / 시·군별 총인구 × 100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 한다.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은 대중교통 부족에 대한 보완 사항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도서지역과 본도 간 노선별 연간 운항 횟수 / 365	여객선 운임 지원은 보완 사항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 한다.	일부 구간이라도 차도와 구분된 구간이 있는 도로 수 / 읍·면 소재지로의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수 × 100	
교육	유치원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초등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2013년 점검 시 농어촌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있는 것이 필수조건.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은 보완 사항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비고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2011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150개교의 기숙형 고교 유무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폐교 수 / 폐교 수) × 100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 총 학생 수 × 100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여부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비형식 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 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주요 과목 진료 가능 여부 점검	주요 과목: 내과,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진 의료 접근성 낮은 행정리 수 / 의료 접근성이 낮은 행정리 × 100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구입 가능 시설이 1개 이상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자세한 사항은 47~48페이지 Box 참조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시·군별 청소년 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 운영 여부 점검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서비스 실시 여부 점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과 방문서비스 모두 제공시 달성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비고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 해경, 산림청별 응급의료장비 구축 선박 및 헬기 운영 여부	모든 사항 구축 시 달성 간주
안전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범죄취약마을 1일 1회 순찰 여부 확인을 통해 본 기준 이행실태 확인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마을별 CCTV 설치가 중심내용이며, 항포구 CCTV는 보완 사항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시·군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여부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문화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도서 대출/반납 시설이 중심내용이고, 대안적인 방법은 보완 사항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시설 유무와 (시설에 상관없이) 모든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개최 여부 동시 점검	문화시설과 관람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개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정보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광대역통합망 구축 마을 수 / 총 마을 수 × 100	초고속망과 광대역통합망 모두 중심내용이지만 광대역통합망 구축은 초고속망 구축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점검함.

주: 서비스기준 내용 중 강조된 내용은 32개 항목이 되는 중심내용을 의미함.

## 1.2.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 1.2.1. 주거 부문 이행실태

####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전국 138개 농어촌 시·군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는 전체 638.0만여 가구 중 563.6만여 가구로, 88.3%에 달한다. 머지않아 기준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는 89.8%, 군은 84.0%로 지역 간 달성률에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 그러나 동 기준(9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단 38개 시·군으로, 달성 시·군 비율이 27.5%에 그친다.
  - 도농복합시가 50.0%(27곳)이며, 군지역은 13.1%(11곳)이다.

표 2-4. 최저주거기준 이행실태(2010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2.1	60.6	84.0	11 / 84	13.1	-
도농복합시	96.5	75.3	89.8	27 / 54	50.0	-
전체 농어촌 시·군	96.5	60.6	88.3	38 / 138	27.5	

####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 전국 135개 시·군의 읍부 도시가스 보급은 2012년 기준 총 178.3만여 가구 중 85.4만여 가구에 이루어져, 본 기준의 달성률은 47.9%이 이른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60.3%, 군이 34.9%로 큰 차이를 보인다.
-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체 32개 시·군으로 23.7%이다.
  - 이 중 도농복합시가 22곳(42.3%), 군이 10곳(12.0%)이 해당한다.
  - 특히 68개 시·군에는 읍지역에 조차 도시가스 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보급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표 2-5.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0.2	0.0	34.9	10 / 83	12.0	1
도농복합시	97.7	0.0	60.3	22 / 52	42.3	2
전체 농어촌 시·군	97.7	0.0	47.9	32 / 135	23.7	3

주: 비고란의 값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수'로, 읍지역이 없는 계룡시, 거제시, 웅진군을 의미함.

- 농어촌지역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보급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 관련 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산림청의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대표적이며, 2012년까지 각각 12,856호, 70,523호에 보급이 이루어졌다.
  - 이는 2012년 기준 달성률이 2.9% 밖에 되지는 않지만, 향후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예상된다.

####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마을공동시설 항목의 이행실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실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다.
  -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시설 중 일부에 요가, 노래교실 등의 상설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 이에 따라 동 기준의 달성률은 40.4%이며, 이중 군지역이 44.3%로 도농복합시의 달성률(34.9%)보다 높다.
- 모든 행정리 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총 19개 시·군(13.8%)으로, 군이 15곳(17.9%), 도농복합시가 4곳(7.4%)으로 나타났다.

표 2-6. 마을공동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44.3	15 / 84	17.9	
도농복합시	100.0	0.0	34.9	4 / 54	7.4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40.4	19 / 138	13.8	

##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 검사와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른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 전체 농어촌 시·군의 달성률은 59.0%로, 해당 서비스기준 충족값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 군은 52.4%, 도농복합시는 65.5%로,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면부 상수도 보급률이 75% 이상 기준을 달성한 곳

은 32개 시·군(23.2%) 뿐이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18곳(33.3%), 군지역이 14곳(16.7%)이었다.

표 2-7.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8.9	10.9	52.4	14 / 84	16.7	-
도농복합시	100.0	18.1	65.5	18 / 54	33.3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0.1	59.0	32 / 138	23.2	-

-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한 보급 외에, 지자체에서는 상당 부분 마을상수도 등을 통한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계산하면 68.5%로 크게 상승한다.
  - 달성 시·군 역시 52개 시·군(37.7%)으로 증가한다.
- 마을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상수도 원수의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 「수도법」 제29조 제1항,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 2012년 이행실태 점검까지는 위와 같은 법률에 의거한 의무 사항으로 모든 시·군에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13년 이행실태 점검 시 실제로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총 18,758개의 소규모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중 18,224개 시설(97.2%)에 대하여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이루어졌다.9)

- 138개 시·군 중 107개 시·군(77.5%)에서 모든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이루어졌다.

### < 전남 완도군의 도서형 경로복지센터 운영 >

- 도서지역의 경로당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랑방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다수임. 전남 완도군은 고향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경로당을 건강, 휴식, 여가 등 복합기능의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로 발전시킴.
  - 센터는 2층 건물로, 1층에는 방, 생활체육시설, 물리치료실, 찜질방, 샤워실,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다용도실, 이장실, 화장실 등이 있음.
- 도서형 경로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군에서 연간 960만 원(1·4분기 월 100만 원, 2·3분기 월 60만 원)이 지원되며, 이는 경로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됨.
- 여가프로그램으로는 레크리에이션, 건강체조, 웃음치료, 율동, 노래교실, 실버게임 등이 운영 중이며, 참여 인원이 많고, 있는 공간이 확보된 센터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됨.
  - 여가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양성을 위해 목포대학교의 ‘건강복지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탁함.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이 2012년 2월부터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를 비롯한 경로당에서 주 5회, 개소당 2시간씩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함.
- 경로당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실제 노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여가프로그램 미운영 경로당에서 운영 요청 건의가 증가함.

자료: 송미령 등(2013)

- 9) 단, 31개 시·군의 534개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 및 관리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해당 지자체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결과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 138개 농어촌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77.6%로 동 기준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83.5%인 반면, 군 지역은 59.5%로 해당 서비스기준에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 또한 전체 농어촌 시·군 중 동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56개 시·군(40.6%)으로 동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시·군이 여전히 많다.
  - 특히 군 지역의 경우 하수도 보급이 특히 부족하다. 도농복합시 중 기준을 달성한 곳은 38곳(70.4%)인 반면, 군은 18곳(21.4%)에 불과하다.

표 2-8.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8.3	1.3	59.5	18 / 84	21.4	-
도농복합시	96.7	50.6	83.5	38 / 54	70.4	-
전체 농어촌 시·군	96.7	1.3	77.6	56 / 138	40.6	

## 12.2. 교통 부문 이행실태

###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기준으로 138개 시·군의 36,295개 행정리 중 32,820개 행정리에서 동 기준을 달성하고 있어, 달성률은 90.4%였다.
  - 군 지역의 달성률은 88.7%이며 도농복합시는 92.8%였다.
- 그러나 모든 행정리에서 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은 충남 계룡시가 유일하다.

표 2-9. 대중교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8.7	69.1	88.7	0 / 84	0.0	-
도농복합시	100.0	73.7	92.8	1 / 54	1.9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69.1	90.4	1 / 138	0.7	-

- 대중교통 항목의 달성률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농어촌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아직 많다. 특히 오지마을 노인들의 경우 마땅한 교통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한 대안이자, 대중교통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 및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시·군별로 대중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37개 시·군 중 68개 시·군(49.6%)에서 공영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미니버스 포함), 콜택시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33곳(61.1%), 군이 35곳(41.7%)이었다.

### < 충북 옥천군 안남면 마을순환버스 >

- 안남면은 대청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매년 5억 원 가량 배정받고 있는데, 이 자금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면 발전 방안에 관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함. 그 가운데 마을들을 순회하는 버스 운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에 개관한 배바우도서관 버스로 면내 마을들을 순회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라 하더라도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노선 운행을 허용하고 있음.
- 마을순환버스가 운행되면서 교통 접근성이 열악했던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됨.
  - 버스는 안남면 관내 마을을 하루 9회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버스 기사를 한 명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음. 또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특징적인 것은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한 컨설팅, 주민 의견 수렴, 버스 도입 시 각종 절차적 문제 대응 등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은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담당함.
  -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12개 마을 이장과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1명 등 당연직 24명과 여기에서 추천한 선출직 12명 등 36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 송미령 등(2013)

####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 행정기관(읍·면사무소)이 위치해 있는 본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지역은

138개 농어촌 시·군 중 군이 8곳, 도농복합시가 3곳 등 총 11개 시·군이며, 본도의 수는 총 36개이다.<sup>10)</sup>

- 36개의 본도 중 1일 1회 이상 왕복 여객선이 운항되는 곳은 34개로, 본 기준의 달성률은 94.4%이다.
  - 용진군의 백령도와 대청도의 경우 1일 평균 0.9회 왕복 운항하였다.
- 도서지역 거주민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여객선 운임비 중 일부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세부기준은 해당하는 모든 시·군에서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 35조 2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내항 여객운송사업이란, 국내항 간에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또는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한다.

#### 다.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각 읍·면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도로와 이 중 일부 구간(위험 구간, 사고 다발 구간 등)만이라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본 기준의 달성률은 11.4%로 이행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가 10.9%, 군이 11.9%로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10) 2012년 이행실태 점검 시 본도의 수는 총 37개 였으나, 2013년 이행실태 점검 시 36개로 감소함. 완도군 보길도(보길면) 항로의 경우 도로가 연결되면서 폐쇄됨.

- 모든 도로에 인도가 일부 구간이라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7개 시·군뿐이었으며, 이 중 도농복합시가 5곳, 군이 2곳이었다.

표 2-10. 인도 구분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11.9	2 / 82	2.4	2
도농복합시	100.0	0.0	10.9	5 / 52	9.6	2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11.4	7 / 134	5.2	4

주: 비고란의 숫자는 행정조사 시 응답하지 않은 지역의 수임. 달성 시·군 비율 산정 시 응답하지 않은 시·군은 제외하고 계산함.

### 1.2.3. 교육 부문 이행실태

####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학교가 유지되어야 한다.<sup>11)</sup> 이에 본 기준은 읍·면별로 최소 하나의 초등학교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즉 학생 규모에 상관없이 농어촌 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읍·면별로 1개교 이상 유지하는 것을 달성 목표로 하였다.
- 분석 결과, 138개 시·군의 1,397개 읍·면 중에서 초등학교가 1개교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곳은 1,374개 읍·면으로 달성률이 98.6%에 달한다.
  - 지역별로 군 97.9%, 도농복합시 99.1%로 차이가 크진 않다.

11) 2012년까지 본 기준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기준이었으나, 논의를 통하여 2013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 육성'으로 수정되었음.

- 동 기준을 달성한 곳도 123개 시·군으로 89.1%에 이른다.
  - 도농복합시는 92.6%였으며, 군은 86.9%였다.
- 다만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1,781개교에 달했으며, 이는 1,011개 읍·면에 분포하고 있어, 본 기준의 이행실태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표 2-11. 농어촌 학교(초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60.0	97.9	73 / 84	86.9	-
도농복합시	100.0	80.0	99.1	50 / 54	92.6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60.0	98.4	123 / 138	89.1	-

- 농어촌의 경우 1개 읍·면의 면적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넓으며, 이에 도별로 등하교를 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거리라도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스쿨버스 등 통학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스쿨버스는 농어촌 학교 육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 138개 시·군의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737개교 중 1,702개교에서 운영 중이었다(62.2%).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이 69.8%로, 도농복합시(53.3%)보다 오히려 많은 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지역의 등하교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 제주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

-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는 농어촌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최근까지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제주도의 경우는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의 13개, 서귀포에 18개 초등학교가 통·폐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2013년 2월 현재에도 초등학교 29개교(본교 21, 분교 8), 중학교 5개교가 소규모학교로 관리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주도에서는 지역 주민과 행정의 연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외부에서 학생 유입을 위한 공동주택 등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함.
  -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보조비율 50%를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함. 또 빈집 수리인 경우에 소요예산의 70%까지 지원함.
- 최근 마을의 공동주택 사업과 더불어 제주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제주연대’가 2012년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함.
  - 제주도 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전교조 제주지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약 40명으로 구성됨.

#### < 제주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 현황 >

마을명	사업 내용	추진 년도	사업비(백만 원)			도 지원율
			계	자부담	지원비	
봉성리(어도교)	9세대	1999	215	115	100 (도 50, 군 50)	46%
성산 수산1리(수산교)	4세대	2011	250	250	-	0%
하가리(더덕교)	10세대	2011	864	464	400(도)	46%
남읍리(남읍교)	24세대	2012	2,105	1,505	600 (도500, 특교100)	24%
곽지리(곽금초)	24세대	2013	2,494	1,994	500(도)	20%

자료: 송미령 등(2013)

##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 교육과학기술부(現교육부)에서 2009년에 선정한 총 148개<sup>12)</sup>의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는 119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어, 86.2%의 달성률을 보인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은 81개 지역(96.4%)이 기준을 달성한 데 비해, 도농복합시는 38개 지역(70.4%)만이 달성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농어촌 우수고등학교가 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2-12. 시·군별 우수고등학교 육성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81 / 84	96.4	-
도농복합시	38 / 54	70.4	-
전체 농어촌 시·군	119 / 138	86.2	-

- 위의 중앙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고교 외에도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그와 유사한 우수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138개 시·군 중 105개 시·군이 기숙사 건립, 명문고/특화고 육성, 자율형 공립고교 육성, 인재(영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지자체를 포함할 경우 본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132개 시·군으로 달성률이 95.7%로 상승한다.

12) 실제로는 150개 고등학교였으나, 이행실태 점검 대상 지역이 138개 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학교 수를 148개로 나타내었음. 이에 따라 활용 통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이행실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음(표 2-60 참조).

## 다. 폐교 요건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2012년에 폐교된 학교의 수는 총 56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폐교 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는 55개교(98.2%)로 나타났다.
- 56개 학교는 전체 39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38개 시·군에 위치한 학교는 모두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97.4%). 다만, 경남 통영시의 1개교는 폐교 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13. 폐교 재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100.0	100.0	24 / 24	100.0	60
도농복합시	100.0	83.3	96.0	14 / 15	93.3	39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83.3	98.2	38 / 39	97.4	99

주: 비고란의 값은 '해당없음'으로, 폐교된 학교가 없는 지역을 의미함.

##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 138개 시·군의 초·중·고교 학생 총 241.9만여 명 중 교과목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193.6만여 명으로, 본 기준의 달성률은 80.0%에 이른다. 이는 본 기준의 달성 목표인 70.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도농복합시가 78.0%, 군이 88.5%로 두 지역 모두 달성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
  - 다른 서비스기준 항목과는 달리 도농복합시가 군보다 낮은 달성률을 보이는데, 이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학원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군보다 양호하게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각 지자체를 살펴보면, 122개 시·군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88.4%), 16개 시·군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70%에 미치지 못한다.
- 도농복합시 중에는 13곳, 군 중에는 3곳이 달성률이 70% 미만이다.

표 2-1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교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9.9	66.9	88.5	81 / 84	96.4	-
도농복합시	94.7	51.6	78.0	41 / 54	75.9	-
전체 농어촌 시·군	99.9	51.6	80.0	122 / 138	88.4	-

#### 마.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파악한 결과, 138개 시·군 중 9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은 68.1%에 이른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35곳(34.8%), 군이 52곳(61.9%)에 설치되어 있다.

표 2-15.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52 / 84	61.9	-
도농복합시	35 / 54	64.8	-
전체 농어촌 시·군	94 / 138	68.1	-

- 이와 같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도로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94개 시·군에 대하여 실제 위원회가 개최되었지를 파악한 결과, 85개 시·군에서는 1회 이상 개최되었으나, 9개 시·군에서는 개최된 바가 없어 그 역할이 아직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별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구득하였다. 평생교육시설은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되는데, 농어촌 주민이 참여한다는 특성상 학교 및 대학교 시설 등의 준형식보다 학교 부설, 평생학습관 등의 비형식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 전국 1,397개 읍·면 중 295개 읍·면에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어 동 기준의 달성률은 21.1%로 나타났다.<sup>13)</sup>

13)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등 시설 외에도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의 경

- 도농복합시는 141개 읍·면(25.6%)에서, 군은 154개 읍·면(18.2%)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 전국 138개 시·군 중 모든 읍·면에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의 남양주시와 용인시, 단 2곳이었다.

표 2-16. 평생교육 프로그램 거점시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66.7	0.0	18.2	0 / 84	0.0	-
도농복합시	100.0	0.0	25.6	2 / 54	3.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21.1	2 / 138	1.4	

- 다만, 행정조사를 통해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인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총 875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할 경우, 이행실태는 62.6%로 증가한다.

## 1.2.4. 보건의료 부문 이행실태

### 가.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 동 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별 내과, 산부인과, 치과 등 과목

우 현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 여부 파악이 불가하여 해당 항목 이행실태에서 제외되었음.

의 병원, 한방병원, 물리치료실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5개 과목에 대한 1차 진료가 모두 가능해야 해당 기준 항목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2012년까지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행정조사를 통해 본 기준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나,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과목별 병원 현황 자료를 협조 받아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 전국의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주요 과목의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97개 시·군으로 달성률은 70.3%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중에는 50곳(92.6%), 군 중에는 47곳(56.0%)에서 이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표 2-17. 주요 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47 / 84	56.0	
도농복합시	50 / 54	92.6	
전체 농어촌 시·군	97 / 138	70.3	

- 5개 주요 과목별 실태를 살펴보면, 내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비교적 1개소 이상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124개 시·군(89.9%), 산부인과는 101개 시·군(73.2%)에만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1차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은 66개 시·군(47.8%)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4)</sup>

14) 산부인과 중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함.

표 2-18. 주요 과목별 이행실태

단위: 개, %

구분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물리치료실	산부인과	분만 가능
진료 가능 시·군 수	136/138	138/138	138/138	124/138	101/138	66/138
달성률	98.6	100.0	100.0	89.9	73.2	47.8

주: 산부인과 분만 가능 여부는 공식통계가 없어 행정조사를 통해 조사함.

### <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

-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지역의 임산부들이 타 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직접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짐.
  - ‘찾아가는 산부인과’란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임산부에게 출산 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 경상남도에서는 2008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와 지역 보건소 등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시행함.
  -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한 해 총 146회 이동진료실을 시행함.
- 2009년 10월부터는 이 사업을 본격화하여, 안동의료원과 위탁 협약을 맺고, 안동의료원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5명으로 이동 산부인과 팀을 구성하고 매월 해당 지역에 2~3차례 순회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음.
-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시설을 짓는 방식에서 서비스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형적인 틀을 깬다는 데 의의가 있음.

자료: 송미령 등(2013)

## 나.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 행정조사 결과, 전국 행정리 중 대중교통이 하루 3회 이상 운행되지 않고 의료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은 2,753개 마을이며, 이 중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지는 곳은 765개 마을(27.8%)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는 625개 마을 중 206개 마을(33.0%), 군은 2,128개 마을 중 559개 마을(26.3%)에서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이 이루어졌다.
- 오지마을이 있는 시·군은 138개 시·군 중 73개 시·군이었으며, 이 중 16개 시·군(21.9%)만이 모든 오지마을에 월 1회 이상 순회방문을 실시하고 있었다.
  - 16개 시·군 중 도농복합시가 5곳, 군이 11곳이었다.

표 2-19. 순회방문 진료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26.3	11 / 50	22.0	34
도농복합시	100.0	0.0	33.0	5 / 23	21.7	31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27.8	16 / 73	21.9	65

주: 비고의 수치는 순회방문이 필요한 오지마을이 없다고 응답한 지역을 의미함.

### < 강원 강릉시의 보건소-보건진료소 만성질환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

- 강원도는 넓은 면적(전국 17%)에 비해 낮은 인구밀도(90.2명/km<sup>2</sup>, 최하위)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임.

- 특히 면 지역 주민은 시내까지 대중교통이 있어도 하루에 3~4번 정도 운행되는 등 여건이 열악하여 진료시간에 비해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됨.
  - 순회진료 역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월 1회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강릉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만성질환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함. 원격진료시스템은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원격지 보건기관 또는 민간병원과 연계하여 원격진료 및 처방,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강원도에서는 만성질환관리시스템을 2003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16개 시·군, 42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 중에 있음.
-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스템 등록인원은 3,071명으로 34,650건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만성질환(고혈압·당뇨)에 대하여 2,266명이 23,085건, 치매, 우울 상담 등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는 402명이 1,824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내·외부의 평가 결과를 통해 원격진료시스템이 의료취약지역 주민 질병관리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송미령 등(2013)

#### 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촌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읍·면별로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때 관련 시설의 의약품소매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농어촌지역, 특히 면지역의 경우 의약품 소매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관련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전체 1,400개<sup>15)</sup> 읍·면 중 1,393개 읍·면(99.5%)이 동 기준을 달성하였다.
  - 군 지역의 읍·면은 99.8%,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99.1%의 달성률을 보였다.
  -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 연천군, 강원도 원주시와 철원군, 충남 계룡시, 전남 남원시 등 총 7개 시·군의 일부 읍·면에는 의약품 소매시설이 없다.

표 2-20. 의약품 구입 가능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85.7	99.8	82 / 84	97.6	-
도농복합시	100.0	66.7	99.1	49 / 54	90.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66.7	99.5	131 / 138	94.9	-

## 1.2.5. 복지 부문 이행실태

###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라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보호부양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그 종류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이 있다.

15) 2012년 기준 총 읍·면은 1,397개이나,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므로 2011년 기준 전국 총 읍·면 현황(1,400개)을 활용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간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sup>16)</sup>
- 이를 분석한 결과, 138개 시·군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총 29.7만여 명에 달하고, 이중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19.5만여 명으로, 달성률은 65.9%에 이른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67.1%, 군이 64.2%로 비슷한 수준이다.
- 본 기준을 100% 달성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본 기준은 이행실태 점검 체계 상 100%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급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급여자를 모두 합하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탈락자를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전체보다 많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표 2-21.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2.3	30.9	64.2	0 / 84	0.0	
도농복합시	85.9	52.7	67.1	0 / 54	0.0	
전체 농어촌 시·군	85.9	30.9	65.9	0 / 138	0.0	

**< 도움이 필요한 노인 및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

- 2012년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이행실태 점검은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다음의 자료를 협조 받아 활용함 $((B+C+D)/A \times 100)$ .

16)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정의와 그 이행실태 점검 대상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함.

- A: 도움이 필요한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등급외,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 수급자)
- B: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중 (시설/재가) 급여 현황
- C: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현황
- D: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현황

○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

- 독거노인,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등 간 중복 확인이 어려워 전체 도움이 필요한 노인 현황이 부정확함.
- 둘째, 독거노인 대상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 단순 현황 및 실태 파악의 성격이 강하여, 일상생활 지원이 주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차이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신설(2010.2.)되어 반영이 필요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홀로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노인장기요양급여나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이유로 2013년부터는 공식통계(일부 행정조사 필요)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객관성을 제고함( $(B+C+D)/A \times 100$ ).

- A: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즉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간주
- B: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 급여 현황
- C: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혜자 현황
- D: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현황

##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지역은 127개 지역으로 나타나, 달성률은 92.0%였다.
  - 도농복합시에서는 53개 지역에 해당 시설이 분포해 98.1%의 달성률을, 군 지역에서는 74개 지역에 동 시설이 분포해 88.1%의 달성률을 보였다.
  - 지역별 평균 센터 수 역시 도농복합시가 3.8개로 군(2.8개) 보다 약간 많았다.

표 2-2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74 / 84	88.1	-
도농복합시	53 / 54	98.1	-
전체 농어촌 시·군	127 / 138	92.0	-

##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본 항목과 관련하여 정부는 읍·면지역에 초등학생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등 방과후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아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다.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주로 민간에 의해 설치되고 정부(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다.
- 2010년부터 교육부는 아동센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 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시범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초등돌봄교실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은 관련 부처와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농어촌지역 아동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설치된 읍·면은 해당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국 1,397개 읍·면 중 동 기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읍·면은 1,368개(97.9%)로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읍·면에서 방과후 돌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군 지역은 822개 읍·면(97.2%),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546개 읍·면(99.1%)에서 운영되고 있다.
  - 방과후 돌봄시설이 모든 읍·면에 1개소 이상이 설립되어 있는 농어촌 시·군은 118개 지역으로 동 기준의 달성 시·군 비율은 85.5%이다.
    - 군 지역의 달성 시·군 비율은 82.1%(69개 지역)이며, 도농복합시의 달성 시·군 비율은 90.7%(49개 지역)이다.

표 2-23.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57.1	97.2	69 / 84	82.1	-
도농복합시	100.0	87.5	99.1	49 / 54	90.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57.1	97.9	118 / 138	85.5	-

##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 138개 시·군 1,397개 읍·면 모두 영유아가 3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에 모든 읍·면에는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982개 읍·면으로, 본 기준의 달성률은 70.3%에 불과하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80.6%, 군이 63.6%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는 보육시설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 본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총 32개 시·군(23.2%)이었으며, 이 중 도농복합시가 17곳, 군이 15곳에서 달성하였다.

표 2-24.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15.4	63.6	15 / 84	17.9	-
도농복합시	100.0	42.9	80.6	17 / 54	31.5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5.4	70.3	32 / 138	23.2	-

## 마.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다문화가족 항목의 서비스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문교육이 모두 만족되어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방문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예산에 편성되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실태 점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무를 파악하면 가능하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38개 농어촌 시·군 중 8개 시·군을 제외한 130개 시·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달성률이 94.2%로 나타난다.
  - 도농복합시의 달성률은 96.3%(52개 지역)이며, 군 지역의 달성률은 92.9%(78개 지역)이다.

표 2-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78 / 84	92.9	-
도농복합시	52 / 54	96.3	-
전체 농어촌 시·군	130 / 138	94.2	-

- 다만, 방문서비스만을 따로 놓고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옹진군, 단 한 곳뿐이다. 센터가 없는 다른 7개 시·군의 경우 인근 지역 센터에 위탁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천 옹진군의 경우 여건 상 개별 가정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각 읍·면사무소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경기 양평군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구축(행복돌봄과) >

- 복지서비스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나, 각 영역·제도·사업별로 접근하는 현행 전달체계는 서로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 양평군도 마찬가지로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하는 무한돌봄센터는 양평군청 주민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방문보건팀은 보건소에 위치하여 조직체계상 연계 협력이 쉽지 않았음.
  - 이에 양평군청은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업무와 보건과 복지업무 수행 조직을 통합하여 2013년 2월 14일 전국 최초로 ‘행복돌봄과’를 신설하였다.
  - 행복돌봄과에서는 보건과 복지 수요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한돌봄센터(사회복지사)와 방문보건팀(간호사)이 합동 방문을 실시함.
    - 합동 방문 시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필요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간호사는 질병 및 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함.
    - 초기 사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통합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함.
  - 무한돌봄센터와 방문보건팀을 통합한 행복돌봄과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건·복지 연계 조직으로 개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효율적·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으로 주목받음.
    - 보건과 복지 연계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상, 전달체계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차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한 사례임.
- 자료: 송미령 등(2013)

## 1.2.6. 응급 부문 이행실태

### 가.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 138개 농어촌 시·군에서 2012년 한 해동안 총 88.8만여 건의 응급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30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는 65.2만여 건으로, 달성률은 73.4%이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73.2%, 군이 73.9%로 차이가 거의 없다.
- 반면, 모든 신고에 대하여 30분 이내로 도착한 지역은 한 곳도 없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60~80% 정도의 달성률을 보였다.

표 2-26. 구급차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기준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2.2	61.3	73.9	0 / 84	0.0	-
도농복합시	82.9	64.6	73.2	0 / 54	0.0	-
전체 농어촌 시·군	82.9	61.3	73.4	0 / 138	0.0	

####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낙도·벽지에 헬기, 선박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는 소방방재청의 EMS 헬기 외에도, 해양경찰청의 선박 및 헬기, 산림청의 헬기 등을 활용한다.
  -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의 장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한 선박 및 헬기 현황을 살펴본다.
- 소방방재청의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전용헬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15개 소방항공대에서 총 27대(임차 1대 포함)의 EMS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헬기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에 응급출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소방방재청에서는 2대 이상 헬기를 보유한 항공대는 구급헬기를 지정, EMS장비가 상시 탑재되어 있으며, 1대를 보유한 항공대는 이동식 EMS 장비를 이용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2-27. 119 EMS구급헬기 운영 현황

단위: 대

총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7	3	3	2	2	2	1	1	3	2	1	1 (임차)	1	2	2	1

- 해양경찰서마다 함정 및 헬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하여 낙도 및 벽지에 대한 환자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139대의 함정과 8대의 헬기에는 응급의료장비가 상시 설치되어 있어 낙도 및 벽지의 응급환자 이송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다.<sup>17)</sup>

표 2-28. 해양경찰서 EMS 장비 장착 함정 및 헬기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인천	학교	동해지방청			서해지방청				남해지방청				제주지방청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울산	부산	창원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함정	139	17	1	3	8	9	9	15	8	10	5	10	6	3	12	9	10	4
헬기	8	2	0	0	2	0	0	2	0	0	0	0	1	0	0	0	1	0

- 산림청 헬기는 시·도별로 1대 이상씩 운용되어 총 18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벽지에 대한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17) 2012년 이행실태 시 점검 시 EMS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함정 및 항공기는 각각 294대, 23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이행실태 점검 시 EMS 장비가 상시 구축되어 있는 함정 및 항공기는 각각 139대, 8대로 나타남.

표 2-29. 의료장비를 구비한 산림청 헬기 현황

단위: 대

계	본부 (원주)	서울	강원 강릉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북 익산	전남 영암	경북 안동	경남 양산	경남 함양
18	1	2	2	2	2	2	2	1	2	2

### < 소방방재청의 Heli-EMS(항공구급서비스) >

- 2012년 3월 중앙119구조단(단장 김준규)은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최상의 Heli-EMS(항공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학 및 외상외과 관련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함.
- 이에 따라 의사가 없거나 의사의 헬기 동승이 불가능한 전국 도서지역으로의 항공구급 출동 시 전문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고 출동하게 됨. 이로써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 등 응급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는 물론, 기내에서 응급수술까지도 가능해짐으로써 소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대구 이전 청사 건립과 함께 대형헬기의 추가 구입을 추진함으로써 서북도서는 물론, 동쪽으로 울릉도·독도, 남쪽으로 이어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도서지역에 대한 Heli-EMS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 중임.

## 1.2.7. 안전 부문 이행실태

### 가.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본 기준은 2013년 개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새롭게 신설된 기준이다. 그러나 본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농어촌 지역 치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도록 신설되었다.
- 본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협조를 통하여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과, 각 지구대 및 경찰서별 일일 순찰계획(행정리 단위)이 파악되어야 한다.
  - 범죄취약 지역 마을은 범죄 발생 건수, 강력범죄 발생 여부 등 치안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지원기관이 선정할 계획이다.
    - 최근 1년간 1회 이상 강력범죄가 발생한 행정리 및 최근 5년간 3회 이상 강력범죄가 발생한 행정리를 범죄취약 지역으로 간주한다.
    - 5대 강력범죄: 살인(미수 포함),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구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점검이 어렵다. 다만, 경찰청 공문을 통해 현재 모든 행정리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나.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 본 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정확도 및 최신화에 제한 사항이 있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 행정조사를 통하여 행정리별 CCTV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 전체 행정리 중 1.1만여 행정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달성률은 30.0%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많은 마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다.

- 도농복합시 30.4%, 군 29.6%로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
- 모든 마을에 CCTV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응답한 133개 시·군 중 9개 시·군으로 6.8%에 불과하다.
- 그러나 본 행정조사 결과는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있어도 CCTV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경찰청의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협조가 필요하다.

표 2-30. 방법용 CCTV 설치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1.3	29.6	6 / 82	7.3	2
도농복합시	100.0	3.3	30.4	3 / 51	5.9	3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3	30.0	9 / 133	6.8	5

- 행정리별 방법용 CCTV와 더불어 향포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48개 시·군의 2,172개 향포구 중 166개 향포구에 CCTV가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7.6%)
  - 관내 모든 향포구에 CCTV가 설치된 곳은 화성시가 유일하다(3개소).

#### 다.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 전체 138개 농어촌 시·군의 평균 출동시간 중 10분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모든 지역이 해당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0%).<sup>18)</sup>

- 그러나 향후 보다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시·군별 각 건의 도착 소요시간 자료가 필요하며, 경찰청과 이에 대한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라.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 2012년 138개 농어촌 시·군에서 19,978건의 화재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 것은 8,549건으로, 달성률은 42.8%에 이른다. 본 기준의 목표치인 5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가 44.6%, 군이 39.7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농어촌의 경우 이동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도 좋지 않아 출동시간이 과다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차의 출동에 앞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표 2-31. 소방 출동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67.7	10.0	39.7	0 / 84	0.0	
도농복합시	88.0	14.8	44.6	0 / 54	0.0	
전체 농어촌 시·군	88.0	10.0	42.8	0 / 138	0.0	

- 18) 112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치의 긴급성에 따라 현장 출동 여부가 결정됨. 그 분류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신고 등에는 긴급출동(코드 1), 경찰의 현장조치는 필요하나 단순 폭행사건 및 교통 사고 등의 신고는 일반출동(코드 2), 생활소음과 불법 주·정차, 노점 단속 등 단순불편 신고 등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는 비출동(코드 3) 등이 해당함.

### < 충청남도의 공용소화기 보급 사업 >

- 농어촌의 경우 주택에 인접한 곳에서 농어업 관련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화목 겸용 보일러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센터가 3~4개의 읍·면에 1개 정도 입지하고 있어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는 농어촌 마을에 공용소화기를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진압을 도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와 각 시·군별 소방서는 농어촌 마을, 유인도서 마을,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용소화기를 비치함.
  -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 충남 16개 시·군 4,430개 마을 중 30%에 해당하는 1,320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용소화기 보급
  - 27개 유인도서 55개 마을 등 도내 유인도서 마을 전체에 공용소화기 보급
  - 도내 모든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는 1대의 공용소화기 비치
- 공용소화기 보급 사업은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하며, 운영은 각 시·군별 소방서에서 수행함. 특히 유사 시 즉각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 소방서는 매월 공용소화기에 대한 관리와 주민 교육을 실시함.
- 공용소화기 보급의 성과로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77건의 화재에서 공용소화기가 초기 진화에 사용되었으며, 약 28.5억 원의 재산 피해가 경감된 것으로 추정됨. 또한 그러한 초기진압 효과와 지속적인 마을별 교육을 통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초기진압체제가 구축됨.
- 공용소화기 보급 사업이 2009년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각 시·군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용소화기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을 선정하여 추가 보급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 송미령 등(2013)

## 1.2.8. 문화 부문 이행실태

###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 전국 1,397개 읍·면 중 609개 읍·면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 달성률이 43.6%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의 달성률은 40.8%이며, 도농복합시는 47.9%였다.
- 관내 모든 읍·면에 도서관 시설이 있는 시·군은 4곳(2.9%)이었으며, 이 중 군 지역은 1곳(1.2%), 도농복합시는 3곳(5.6%)이다.
  - 4개 시·군은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시, 충북 증평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이다.

표 2-32. 도서관 도서 열람 및 대출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9.1	40.8	1 / 84	1.2	-
도농복합시	100.0	5.6	47.9	3 / 54	5.6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5.6	43.6	4 / 138	2.9	-

- 이와 같이 농어촌에는 도서관이 없는 읍·면(특히 면) 지역이 매우 많다.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의 도서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행정조사를 통하여 시·군별로 도서관이 없는 지역 주민에게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기 위한 대안적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36개 시·군(무응답 2개 군 제외) 중 64개 시·군(47.1%)에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sup>19)</sup>, 우편을 이용한 대출/반납, 제3자를 이용한 대출/반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본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시설 현황, 공연 및 전시 개최 현황을 파악하였다.
  - 시설 조건과 문화프로그램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예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시설의 유무와 그 시설들에서 월 1회 이상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sup>20)</sup>
- 그 결과, 138개 시·군 중 문화시설이 있는 동시에 각종 문화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관람 가능한 곳은 113개 시·군으로, 81.9%의 달성률을 보였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가 88.9%로 군(77.4%)에 비해 문화 부문 서비스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달성률)	
군	65 / 84	77.4	-
도농복합시	48 / 54	88.9	-
전체 농어촌 시·군	113 / 138	81.9	-

19) 순회문고란,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 다량의 도서를 일정기간 동안 비치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의미함.

20) 지방문화원 공연 및 전시는 월 1회 이상, 문예회관 전문공연은 분기별 1회 이상이 달성 목표임. 그러나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크므로 총합의 평균이 월 1회 이상인지를 검토함.

### < 전북 장수군의 작은 영화관 >

-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장수군은 가장 가깝다고 하는 대도시도 전주 62km, 광주 96km, 대전 97km, 대구 142km에 이르고 있어, 장수군 자체의 지역서비스는 물론 인근 대도시의 중심지 기능 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함.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문화·여가 서비스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 전북 장수군은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군민 문화·체육시설인 한누리 전당 건립을 추진함. 특히 한누리 전당 내에 작은 영화관 한누리시네마를 설치·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장수군은 한누리시네마가 개관 전 관내에 영화관이 전혀 없어, 영화를 보기 위한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낭비가 적지 않았음.
- 한누리 전당에 설치되어 있던 전시관의 이용 정도가 낮자, 총 7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수요가 높은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함.
  - 2개의 상영관과 매점 및 매표소 등 부대시설을 합하여 300m<sup>2</sup>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관람석은 1관 36석, 2관 54석 등 모두 90석으로 이루어짐.
  -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읍·면 단위로 순회 셔틀버스를 운행함.
- 개봉영화 선정 및 영화관 운영 등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한누리시네마는 전문 기업인 (주)글로벌미디어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무휴로 1일 10회 개봉영화를 상영하고 있다(10~23시).
- 한누리시네마 개관 이후 인구 2만 3천여 명에 불과한 장수군에서 관람객이 연간 3만 2천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률이 높음. 또한 장수군에도 도시 못지않은 개봉 영화관이 있다는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생김.
- 한편 장수군 한누리시네마의 사례가 확산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도정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시책으로 시·군별 ‘작은 영화관’ 건립을 포함한 ‘5대 생활밀착형 작은 시리즈’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송미령 등(2013)

## 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하여 각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연 2회 이상 이루어진 읍·면을 조사한 결과, 485개 읍·면으로 달성률이 34.7%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는 38.8%, 군은 32.0%로 도농복합시에서 약간 높았다.
- 모든 읍·면에서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이루어진 곳은 응답한 135개 시·군 중 19개 시·군(14.1%)으로 나타났다.

표 2-34.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0.0	32.0	10 / 83	12.0	1
도농복합시	100.0	0.0	38.8	9 / 52	17.3	2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34.7	19 / 135	14.1	3

## 1.2.9. 정보통신 부문 이행실태

### 가.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 초고속망의 항목은 ①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와 ②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등 2개 세부기준이 모두 만족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초고속망은 모든 지역에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sup>21)</sup> 광대역통합망은 초고속망 구축이 필수

적이므로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된 지역의 비율로 본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하다.

-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된 마을은 전체 36,229개 행정리 중 26,597개 행정리로 달성률이 73.4%에 달하여, 목표인 80%에 약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시(77.4%)가 군(70.6%)보다 약간 높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 달성률이 목표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138개 중 67개 시·군(48.6%)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에 따라 구축률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 다만, 세대 수 기준으로 구축률을 살펴보면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세대에 구축되어 있어 해당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
  - 달성 시·군은 102개 시·군(73.9%)으로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거의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이행실태(행정리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00.0	28.0	70.6	34 / 84	40.5	-
도농복합시	100.0	33.0	77.4	33 / 54	61.1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28.0	73.4	67 / 138	48.6	-

주: 세대 수 기준의 경우 달성률은 89.0%, 달성 시·군 비율은 73.9%에 달함.

- 21) 초고속망 구축의 경우 이미 전국 모든 곳이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2008년 기준 구축률이 99.7%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관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더 이상 초고속망 구축률을 조사 및 발표하지 않고 있음.

## 2. 이행지수에 의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2.1. 이행지수 점검 개요

#### 2.1.1. 이행지수 변수 구성

-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를 산출하여 전국 농어촌 시·군들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3년 점검에서도 이행지수를 활용한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다만, 2012년도까지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와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이행지수’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지만, 2013년에는 부문별 이행지수 및 종합이행지수만을 다룬다.
    - 국가 최소서비스기준으로 선정된 기준들임을 고려하여 또다시 핵심기준을 선정하는 작업은 제외하였다.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은 <표 2-36>과 같다. 총 20개 항목 22개 평가 변수를 이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산정하였다. 일부 시·군에만 해당하거나 달성 여부로 결정되는 등 지수를 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이행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총 12개이다.
  - 여객선, 폐교,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항목은 일부 시·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행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 고등학교, 의견수렴,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청소년, 다문화가족,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항목은 통계 자료가 충족 혹은 미충족의 이분 형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을 가져야 하는 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 그 외에 경찰 순찰은 이행실태 점검 통계의 한계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출동 항목은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집계 방법 등 자료의 문제로 지수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표 2-36.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부문	항목	평가 변수	기준 충족값
주거	주택	최소 주거 기준 이상 주택 비율	90%
	난방	읍 지역 도시 가스 보급률	50%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행정리 비율	100%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100%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71%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100%
	인도(人道)	인도 설치 도로 비율	100%
교육	유치원/초·중교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	100%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	100%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100%
보건 의료	의약품 구입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100%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100%
	아동	방과후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영유아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안전	도난 방지	CCTV설치 행정리 비율	100%
	소방 서비스	5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문화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100%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100%
정보통신	초고속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 2011/2012년 이행지수는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나, 2013년 이행지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산정한다.
  - 2011년도에는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2012년도에는 각 시·군의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중치 부여를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러나 부문별, 항목별 가중치의 차이가 커서 특정 기준 항목이 부문별 이행지수나 종합이행지수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중치를 매년 변경함에 따라 점점 결과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이행지수를 산정한다.

## 2.1.2. 지수 산출 방법

-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출에서는 표준화 점수법을 응용한 지수 산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표준화 점수법에서는 지표값에서 평균을 빼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 지수값을 산정한다.
  - 표준화 점수법은 각 지표별로 그 값들을 Z-score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각 지표값들을 평균 0, 표준편차 1의 분포를 갖도록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표값에서 평균을 제하고, 이를 다시 표준편차로 나누어 구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에서는 지표값에서 평균을 빼는 대신, 기준 충족값을 제하여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 이러한 지수 산출 방식은 다른 산출 방식에 비해 지수값만을 보고도 서비스 기준의 충족 정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각 지표값에서 기준 충족값을 제하였기 때문에 지역이 해당 서비스기준을 충족한다면 부문별 이행지수는 0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기준을 초과 충족하였다면 양의 값(+), 반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 반면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첫째,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수화 대상인 점검통계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
  - 둘째, 지수화 대상인 각 기준 항목의 표준화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3년 이행지수 산정 방식은 서비스 기준별 충족값을 기준으로 한 선형변환(Linear Scale Transformation) 방법을 채택한다.
- 선형변환에 의한 지수는 시·군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기준으로 모든 시·군의 지수값이 0~1 사이에 분포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기에 유리하다.
- 그러나 일반 선형변환은 각 서비스 항목 내 최댓값과 최솟값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들이 서비스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서비스 기준의 충족값(표 2-36 참조)을 이용한 선형변환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하였다.
- 항목별 서비스기준을 이용한 이행지수에서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시·군은 1, 기준을 초과달성한 시·군은 1이상, 충족하지 못한 시·군은 0-1 사이 값을 갖기 때문에 각 서비스기준별 시·군의 충족값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x_{ij} = \frac{x_{ij} - x_{j^{\min}}}{S_j - x_{j^{\min}}}$$

$x_{ij}$  =  $i$ 지역  $j$ 지표의 선형변환지수

$x_{ij}$  =  $i$ 지역  $j$ 지표값

$S_j$  =  $j$ 지표의 서비스기준 충족값

$x_{j^{\min}}$  =  $j$ 요인의 최솟값

## 2.2.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이행실태 평가 결과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는 9개 부문 20개 항목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의 이행지수는 부문 내 항목들의 단순평균으로 산출하였다.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2년과 비교하여 부문의 수와 부문 내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2~2013년 간 서비스기준 이행지수의 변화는 종합 순위만 비교하였다.
- 부문별 이행지수의 평균을 보면 보건의료 부문의 평균이 가장 높고 응급 부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군에 비해 도농복합시가 높다.
  - 이행지수의 평균이 높은 것은 달성률이 높은 도시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군보다는 도농복합시들의 달성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문별 이행지수의 공간 분포는 시·군 순위에 따라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나누어 세 분위의 시·도별 분포와 전국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표 2-37. 부문별 이행지수의 시·군 평균 및 표준편차

분야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주거	0.66(0.18)	0.82(0.19)	0.73(0.20)
교통	0.42(0.18)	0.52(0.20)	0.46(0.19)
교육	0.97(0.13)	0.81(0.17)	0.91(0.16)
보건의료	0.99(0.06)	0.96(0.15)	0.98(0.10)
복지	0.67(0.14)	0.76(0.08)	0.70(0.13)
응급	0.34(0.11)	0.30(0.11)	0.32(0.11)
안전	0.32(0.15)	0.36(0.17)	0.33(0.16)
문화	0.37(0.21)	0.46(0.27)	0.40(0.24)
정보통신	0.90(0.33)	1.01(0.34)	0.94(0.33)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2.2.1. 주거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주거 부문의 이행지수는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도시가스 보급률, 마을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 6개 평가 지표로 이루어진다.
- 항목별 이행지수 평균을 보면 군에서는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0.95)의 지수가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에서는 하수도 보급률(1.12)이 가장 높다. 특히 도농복합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이행지수 평균이 1 이상으로, 많은 도시에서 충족값(71%)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행지수가 낮은 항목은 군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 도농복합시에서는 마을공동시설의 프로그램 지원 비율이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군과 도농복합시에서 모두 표준편차가 가장 큰 지수로 지역 간 차이가 큰 항목이다.

표 2-38. 주거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주거 부문 이행지수		0.66(0.18)	0.82(0.19)	0.73(0.20)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0.74(0.27)	0.95(0.17)	0.82(0.25)
난방	도시가스 보급률	0.35(0.52)	0.71(0.71)	0.49(0.62)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지원 비율	0.95(0.14)	0.95(0.10)	0.95(0.13)
	프로그램 지원 비율	0.50(0.40)	0.41(0.36)	0.46(0.38)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0.64(0.34)	0.81(0.35)	0.71(0.36)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0.80(0.26)	1.12(0.19)	0.93(0.28)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주거 부문 이행지수의 분포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시·군이 상위 30% 내에 속한 비율이 높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보인다.
  - 경기도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상위 30% 내에 속해 있으며 제주도는 2개 도시가 모두 상위 30%에 속해 있다.
- 이행지수가 높은 시·군은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이행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달성군·양주시·화성시·사천시·울주군·용인시·광양시·김해시·양산시·경산시 등으로 도농통합시가 8개, 군이 2개로 도농통합시의 이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군도 광역시에 속한 군이다.
  - 이행지수가 가장 낮은 10개 지역은 군위군·하천군·의성군·성주군·진안군·청송군·서천군·울릉군·영양군·해남군 등으로 모두 군이며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들은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비율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다른 5개 항목에서는 모두 낮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과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비율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표 2-39. 시·도별 주거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0	1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3	2	0	15
강원도	3	10	2	15
충청북도	3	7	1	11
충청남도	5	6	4	15
전라북도	0	9	4	13
전라남도	2	10	9	21
경상북도	5	4	14	23
경상남도	6	5	7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 2.2.2. 교통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교통 부문은 대중교통 기준 충족 비율(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시내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리)과 인도 설치 도로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 항목별 이행지수의 평균을 보면 대중교통은 0.68로 비교적 높는데 비해 인도 설치 도로 비율은 0.23으로 낮아 교통 부문의 이행지수가 인도 설치 항목으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인도 설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2-40. 교통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교통 부문 이행지수		0.42(0.18)	0.52(0.20)	0.46(0.19)
대중교통	대중교통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0.63(0.23)	0.75(0.18)	0.68(0.22)
인도	인도 설치 도로 비율	0.20(0.22)	0.28(0.31)	0.23(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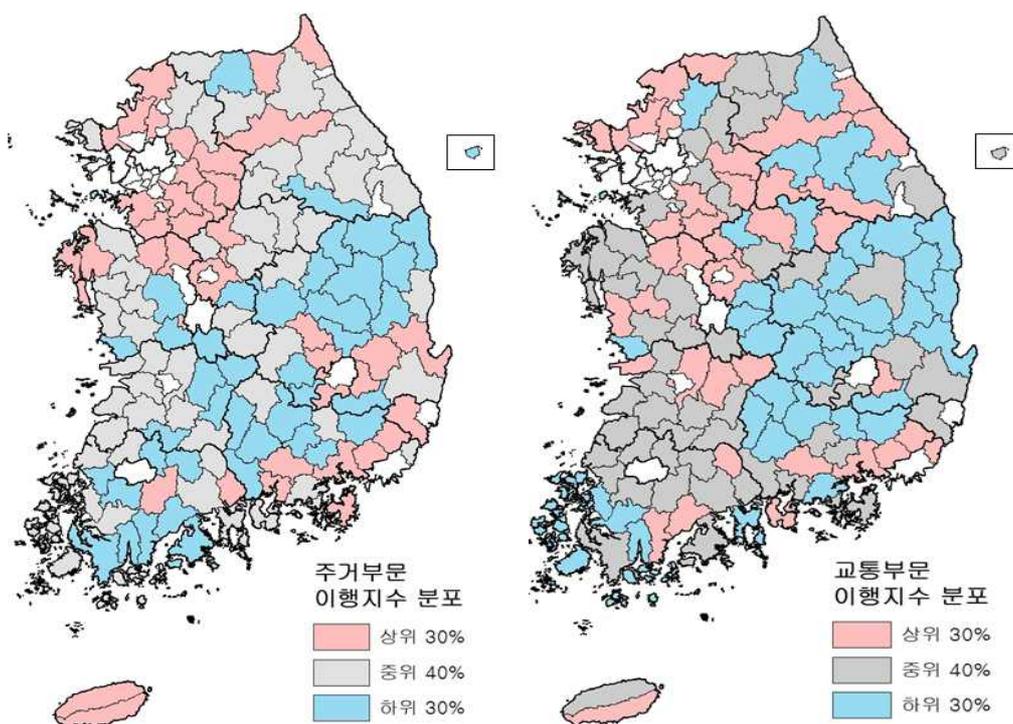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교통 부문 이행지수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강원도, 그리고 충청북도 내 시·군이 상위에 속해 있는 비율이 높고 산간지역이 많은 경상북도 시·군들은 하위에 많이 분포되어 지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통 부문에서 상위에 속한 시·군은 계룡시·파주시·양주시·여주군·군산시·진주시·장흥군·천안시·충주시·양평군 등으로 경기도 내 시·군이거나 각 도에서 비교적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이다.
  - 반면 하위에 속한 시·군은 신안군·성주군·영동군·여주시·완도군·평창군·군위군·울진군·봉화군·영덕군 등으로 도서 및 산간지역이 많아 지형적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2-41. 시·도별 교통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0	1	0	1
인천광역시	1	0	1	2
울산광역시	0	1	0	1
경기도	9	5	1	15
강원도	6	5	4	15
충청북도	5	1	5	11
충청남도	5	9	1	15
전라북도	4	9	0	13
전라남도	3	11	7	21
경상북도	1	6	16	23
경상남도	5	6	7	18
제주도	1	1	0	2
합계	41	55	42	138

그림 2-1. 주거 및 교통 부문 이행지수 분포



### 2.2.3. 교육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유치원·초·중학교,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교육 부문은 모두 4개 평가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 지표의 이행지수 평균이 가장 높고 평생교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지수는 군과 도농통합시에서 모두 1이상을 나타내 기준값을 충족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표준편차가 다른 항목보다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크다.
  -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도 군과 도농통합시에서 모두 1에 가까운 평균 지수값을 나타내 다른 항목에 비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시·군이 많은 지표이다.
  - 반면 평생교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의 지수값은 군과 도농통합시에서 모두 가장 작다.

표 2-42. 교육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교육 부문 이행지수		0.97(0.13)	0.81(0.17)	0.91(0.18)
유치원/초·중교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	0.95(0.16)	0.98(0.09)	0.96(0.14)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	0.67(0.24)	0.48(0.29)	0.60(0.28)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2.04(0.38)	1.52(0.62)	1.84(0.55)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0.20(0.13)	0.28(0.21)	0.23(0.17)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교육 부문 이행지수 순위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시·군이 하위 30%에 속한 비율이 높고 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의 시·군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 30%에 속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부문 이행지수가 높은 지역은 산청군·임실군·고령군·음성군·보은군·괴산군·남해군·합천군·경남 고성군·장성군 등으로 모두 군지역이며 충청북도 내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은 춘천시·포천시·원주시·연천군·강릉시·평택시·군산시·양양군·남양주시·철원군 등으로 도농복합시가 7개가 속해 있으며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시·군이 분포되어 있다.
- 시지역의 교육 부문 이행지수가 낮은 것은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 군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이는 두 지표의 특성 상 도시 지역의 이행지수가 낮다.

표 2-43. 시·도별 교육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0	1	0	1
인천광역시	0	2	0	2
울산광역시	0	0	1	1
경기도	1	3	11	15
강원도	0	4	11	15
충청북도	7	4	0	11
충청남도	4	8	3	15
전라북도	7	3	3	13
전라남도	5	7	9	21
경상북도	7	16	0	23
경상남도	9	6	3	18
제주도	0	1	1	2
합계	41	55	42	138

## 2.2.4.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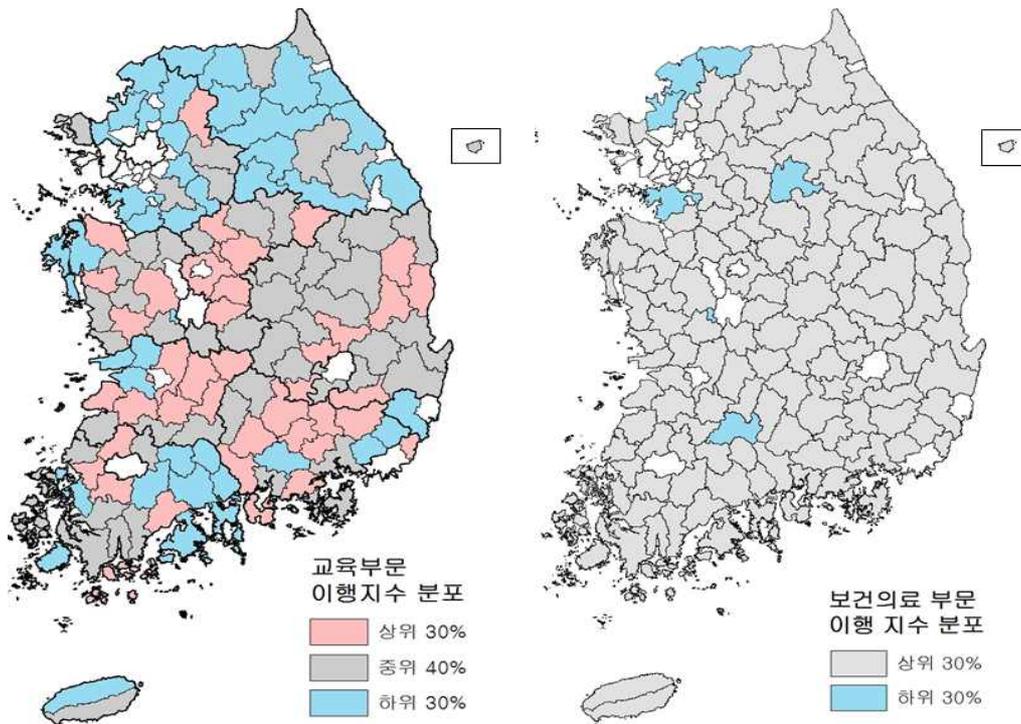
- 보건의료 부문의 이행지수는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과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 의약품 구입 부문의 이행지수를 보면 평균이 0.98로 매우 높고 표준편차도 0.10으로 낮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를 보이고 있으나, 계룡시·철원군·원주시·연천군·파주시·화성시·남원시 등 7개 시·군만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44. 보건의료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		0.99(0.06)	0.96(0.15)	0.98(0.10)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내 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0.99(0.06)	0.96(0.15)	0.98(0.10)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그림 2-2.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 이행지수 분포



## 2.2.5. 복지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복지 부문은 노인·아동·영유아 등 3 개 항목, 즉,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의 평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 항목별 이행지수를 보면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의 평균이 0.95로 가장 높고 군(0.93)과 도농복합시(0.98)에서도 충족지수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 아동과 영유아 항목에 비해 노인 항목의 지수가 0.5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으며 표준편차도 작아 군과 도농복합시 전체적으로 노인 부문의 서비스기준 달성률이 낮다.

표 2-45. 복지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복지 부문 이행지수		0.67(0.14)	0.76(0.08)	0.70(0.1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0.47(0.13)	0.52(0.10)	0.49(0.12)
아동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	0.93(0.19)	0.98(0.07)	0.95(0.16)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0.60(0.27)	0.79(0.19)	0.67(0.26)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복지 부문 이행지수 순위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상위 30%에 속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상위 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도와 충청남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에 속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에 속한 시·군은 화천군·여주군·양주시·강릉시·강원 고성군·김포시·포천시·제주시·남양주시·용인시 등으로 대부분이 도농복합시이다.
  - 반면 하위에 속한 시·군은 옹진군·울릉군·곡성군·예천군·의령군·옥천군·연천군·진안군·군위군·임실군 등으로 모두 군이다.
  - 상위에 속한 지역들은 세 항목에서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수를 보인 반면, 하위 지역들은 세 항목 모두에서 작은 값을 보여 복지 부문에서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6. 시·도별 복지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0	1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0	2	2
울산광역시	0	1	0	1
경기도	12	2	1	15
강원도	8	4	3	15
충청북도	4	5	2	11
충청남도	7	8	0	15
전라북도	1	6	6	13
전라남도	2	12	7	21
경상북도	2	11	10	23
경상남도	2	5	11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 2.2.6. 응급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응급 부문 이행지수는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로 산출되었다.
- 지수는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이 다소 높으나 전체 시·군 평균이 0.32로 많은 시·군이 충족 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도 0.11로 다른 지수들에 비해 작아 전체적으로 시·군의 응급 부문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7. 응급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응급 부문 이행지수		0.34(0.11)	0.30(0.11)	0.32(0.11)
응급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0.34(0.11)	0.30(0.11)	0.32(0.11)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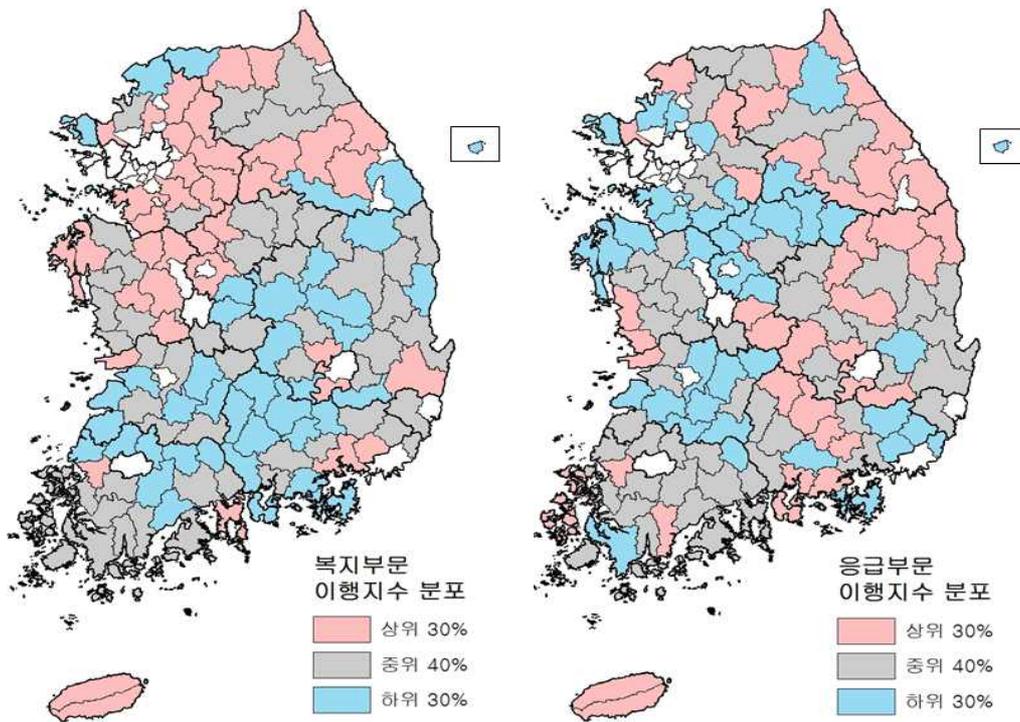
○ 시·도별 이행지수의 분포를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군들이 상위 30%에 속한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은 하위 30%에 속한 시·군의 비율이 높았다.

- 상위에 속한 시·군은 제주시·서귀포시·연천군·김포시·의령군·증평군·합천군·칠곡군·영양군·경남 고성군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도 지역의 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하위 지역은 무주군·기장군·통영시·당진시·울릉군·구례군·강화군·안성시·진천군·계룡시 등으로 군과 도농통합시가 혼재되어 있다.

표 2-48. 시·도별 응급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0	0	1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0	2	2
울산광역시	0	1	0	1
경기도	4	4	7	15
강원도	9	4	2	15
충청북도	3	1	7	11
충청남도	2	8	5	15
전라북도	1	4	8	13
전라남도	3	16	2	21
경상북도	9	12	2	23
경상남도	7	5	6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그림 2-3. 복지 및 응급 부문 이행지수 분포



### 2.2.7. 안전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방법설비와 소방 출동 등 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안전 부문 이행지수는 8개 부문 이행지수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두 항목 모두 지수 값이 작다.
- CCTV 설치 행정리 비율과 5분 내 소방서비스가 도착 가능한 행정리 비율 지표는 각각 평균 지수가 0.32와 0.35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작은 값을 보여 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안전 부문의 두 항목은 다른 부문에 비해 평균 지수 값이 작은 동시에 표준편차는 큰 편이다. 이는 많은 지역에서 두 항목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역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9. 안전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안전 부문 이행지수		0.32(0.15)	0.36(0.17)	0.33(0.16)
방법설비	CCTV설치 행정리 비율	0.32(0.28)	0.32(0.26)	0.32(0.27)
소방 출동	5분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0.32(0.15)	0.39(0.20)	0.35(0.18)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안전 부문 이행지수의 공간 분포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내 시·군들이 상위에 속한 비율이 높고 반면, 경기도·전라남도·경상남도는 하위에 속한 시·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 부문 이행지수 상위 시·군은 서귀포시·증평군·광양시·아산시·인제군·음성군·거창군·순천시·여주군 등으로 군과 도농복합시가 혼재되어 있다.
- 하위 시·군은 의령군·김천시·안성시·영천시·울진군·경남 고성군·남해군·하동군·용인시·영양군 등으로 나타났으며 위 지역들은 두 항목에서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지수값이 작다.

표 2-50. 시·도별 안전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2	0	2
울산광역시	0	1	0	1
경기도	3	6	6	15
강원도	7	3	5	15
충청북도	7	3	1	11
충청남도	5	10	0	15
전라북도	5	6	2	13
전라남도	2	10	9	21
경상북도	5	8	10	23
경상남도	3	6	9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 2.2.8. 문화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문화 부문의 이행지수는 독서(도서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등 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항목별 이행지수를 보면 독서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이 각각 0.43과 0.38로 비교적 작은 값을 보여, 두 평가 지표에서 아직 부족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독서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이행지수의 표준편차가 모두 크게 나타나 두 항목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 많으면서도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문화 부문에서 지역 간 향유 기회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1. 문화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문화 부문 이행지수		0.37(0.21)	0.46(0.27)	0.40(0.24)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0.39(0.21)	0.48(0.27)	0.43(0.24)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0.35(0.31)	0.43(0.35)	0.38(0.33)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문화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분포를 보면 경기도의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상위 30%에 속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남도과 경상남도의 시·군은 약 절반이 하위 30%에 속해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 문화 부문의 이행지수가 가장 큰 지역들은 증평군·서귀포시·아산시·남양주시·천안시·칠곡군·제주시·가평군·음성군·파주시 등으로 군과 도농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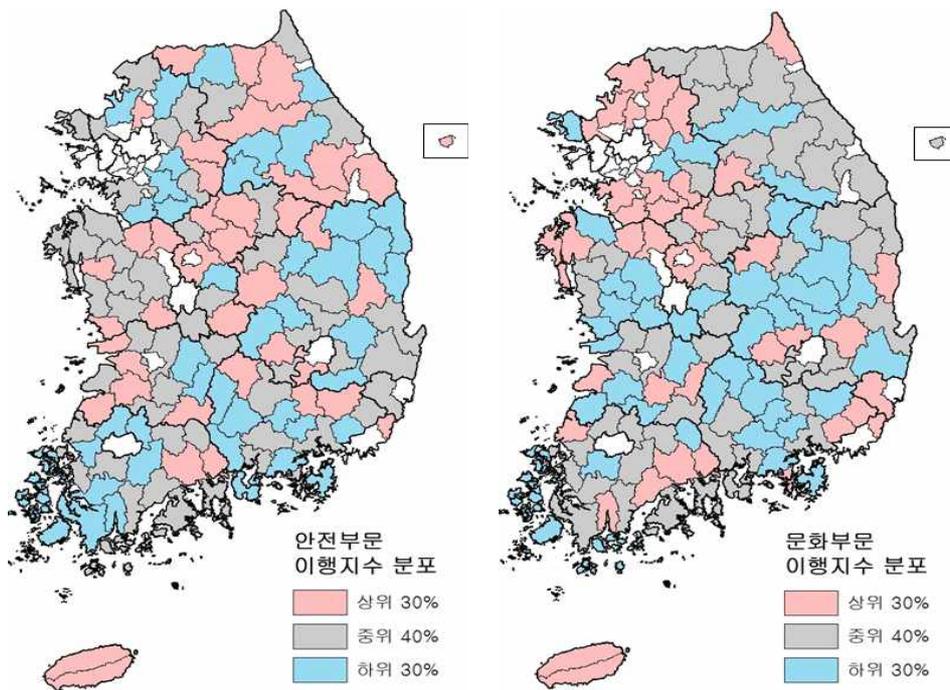
시가 혼재되어 있다.

-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은 공주시·상주시·김천시·안동시·진도군·서천군·영주시·거창군·구미시·순창군 등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이행지수가 큰 지역들은 두 항목에서 모두에서 가장 큰 지수 값을 보인 반면, 작은 지역들은 두 항목 모두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 문화 부문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2. 시·도별 문화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0	1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2	1	2	15
강원도	2	11	2	15
충청북도	3	6	2	11
충청남도	4	4	7	15
전라북도	3	5	5	13
전라남도	5	11	5	21
경상북도	5	9	9	23
경상남도	3	6	9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그림 2-4. 안전 및 문화 부문 이행지수 분포



## 2.2.9.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분석 결과

- 광대역통합망 구축률로 평가한 정보통신 부문의 이행지수는 0.94로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크며 특히 도농복합시는 1.01로 충족 지수값 이상이다.
- 그러나 지수의 표준편차가 0.3이상으로 다른 서비스기준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53. 정보통신 부문 평가 지표별 이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0.90(0.33)	1.01(0.34)	0.94(0.33)
초고속망	광대역통합망 구축율	0.90(0.33)	1.01(0.34)	0.94(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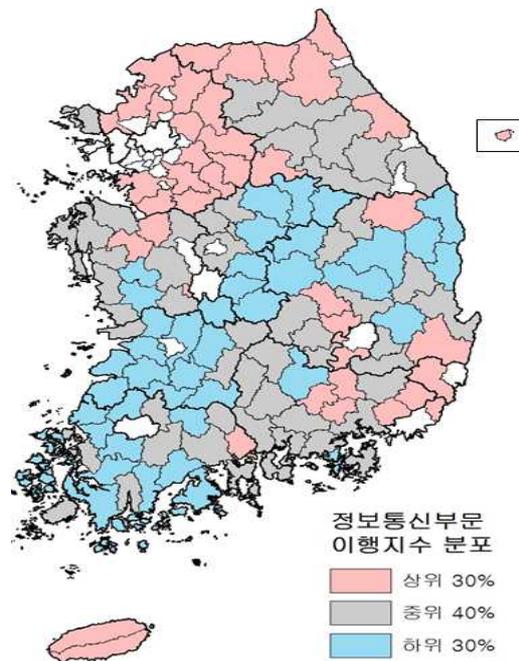
주: 괄호는 각 지수의 표준편차임

- 정보통신 부문의 이행지수를 보면 경기도 15개 시·군은 모두 상위 30%에 속해 있고 강원도 내 시·군도 절반가량이 상위 30%에 속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나, 이에 반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상위에 속한 시·군이 없어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3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광대역통합망 구축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절반에 해당하는 67개 시·군은 80%이상을 나타냈다 .
  - 다른 지역에 비해 지수 값이 작은 지역들은 고창군·김제시·순창군·남원시·고흥군·나주시·부안군·정읍시·익산시·괴산군 등으로 주로 전라남북도의 시·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표 2-54. 시·도별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1
대구광역시	1			1
인천광역시		2		2
울산광역시	1			1
경기도	15			15
강원도	7	8		15
충청북도		4	7	11
충청남도	3	9	3	15
전라북도		3	10	13
전라남도	1	8	12	21
경상북도	5	10	8	23
경상남도	5	11	2	18
제주도	2			2
합계	41	55	42	138

그림 2-5. 정보통신 부문 이행지수 분포



### 2.2.10. 2013년 종합이행지수 분석 결과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 산출 결과 전체 시·군은 0.6이며 군 지역의 평균 0.63으로 도농복합시(0.67)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2-55. 지역별 2013년 종합이행지수

	군지역	도농복합시	전체 농어촌 시·군
종합이행지수 (표준편차)	0.63(0.08)	0.67(0.08)	0.64(0.08)

- 2013년 종합이행지수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15개 시·군 중 13개가 상위 30%에 속하는 데 반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절반 이상의 시·군이 하위 3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 광역시 내 시·군 중에는 용진군만이 하위 30%에 속하고 기장군과 달성군은 상위 30%에 속해 타 시·도의 군에 비해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 종합이행지수가 높은 지역은 서귀포시·증평군·양주시·아산시·제주시·여주군·칠곡군·광양시·가평군·천안시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시·군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 반면 이행지수가 낮은 지역은 순창군·의성군·진안군·신안군·보은군·고흥군·곡성군·고창군·용진군·남원시 등으로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의 군지역들이 많다.

표 2-56. 시·도별 종합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시·도명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부산광역시	1	0	0	1
대구광역시	1	0	0	1
인천광역시	0	1	1	2
울산광역시	1	0	0	1
경기도	13	2	0	15
강원도	6	6	3	15
충청북도	3	6	2	11
충청남도	5	8	2	15
전라북도	1	4	8	13
전라남도	1	9	11	21
경상북도	2	9	12	23
경상남도	5	10	3	18
제주도	2	0	0	2
합계	41	55	42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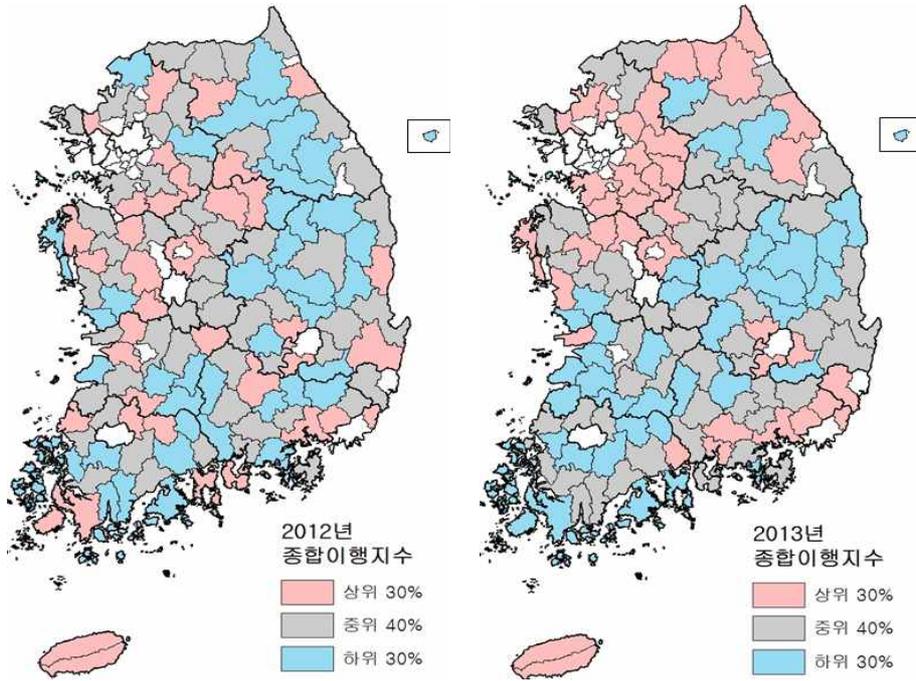
- 2012~2013년 종합이행지수의 순위 변화를 보면 2012년 상위 30% 41개 시·군 중 15개, 중위 40% 55개 시·군 중 22개, 하위 30% 42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2013년에도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지수 분위가 상승한(하위→중·상위, 중위→상위) 시·군이 43개, 하락한(상위→중·하위, 중위→하위) 시·군 36개이다.
- 하위에서 중위로 상승한 시·군은 17개(연천군·홍천군·영월군·단양군·장수군·임실군·순천시·장흥군·강진군·무안군·성주군·봉화군·밀양시·의령군·창녕군·경남 고성군·하동군)이며, 양평군·정선군·인제군·태안군은 하위에서 상위로 상승하였다.
  - 중위에서 상위로 상승한 시·군은 22개(울주군·남양주시·용인시·파주시·화성시·양주시·여주군·가평군·강릉시·화천군·양구군·강원 고성군·음성군·천안시·보령시·예산군·군산시·광양시·경산시·진주시·사천시·양산시)이다.
  - 이에 반해 16개 시·군(포천시·원주시·양양군·충주시·제천시·공주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홍성군·무주군·담양군·영광군·경주시·영덕군·남해군)은 상위에서 중위로, 11개 시·군(횡성군·보은군·옥천군·정읍시·진안군·고창군·화순군·함평군·김천시·안동시·울진군)은 중위에서 하위로 하락하였다. 9개 시·군(춘천시·익산시·김제시·순창군·여수시·곡성군·해남군·진도군·합천군)은 2012년 상위 30%에 속했으나 2013년에는 하위 30%에 속하는 변화를 보였다.

표 2-57. 2012~13년 종합이행지수의 시·군 순위 분포 변화

		2013년 종합이행지수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합계
2012년 종합 이행지수	상위 30%	15	16	9	40
	중위 40%	22	22	11	55
	하위 30%	4	17	22	43
	합계	41	55	42	138

그림 2-6. 2012, 2013년 종합이행지수 분포



○ 84개 군 중 20개(23.8%)는 종합이행지수 순위의 분위가 하락하고 27개(32.1%)가 상승하였으며, 도농복합시는 16개(29.6%)가 상승하고 16개가 하락하였다.

표 2-58. 군과 도농통합시의 2012~13년 종합이행지수 순위의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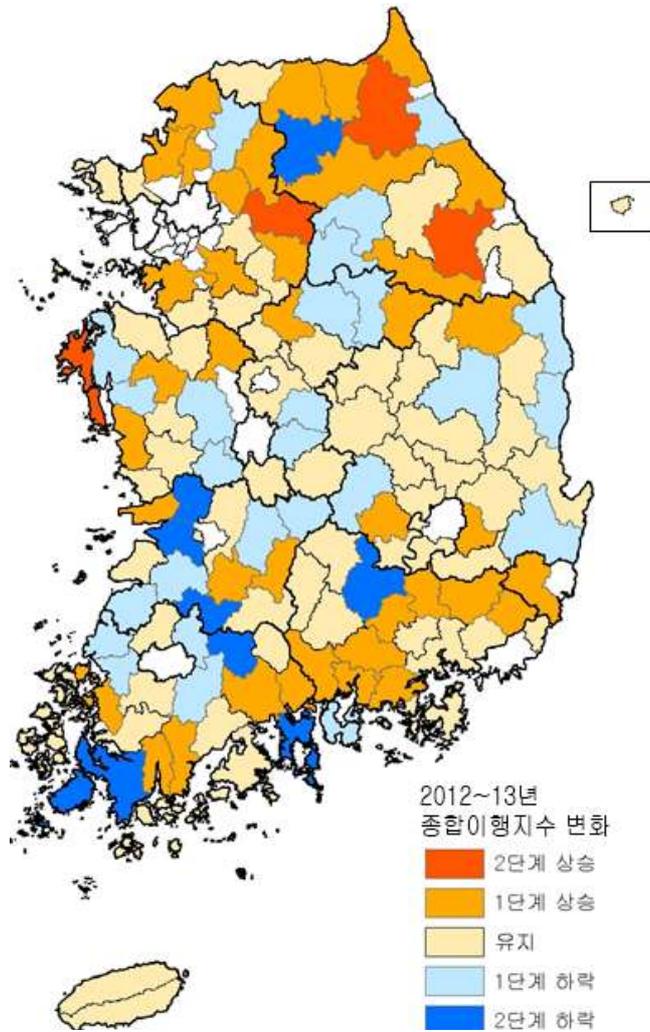
시·도	2012~13년 종합이행지수 변화별 시·군 수					합계
	분위 하락		유지	분위 상승		
	하위←상위	중위←상위 하위←중위		중위→상위 하위→중위	하위→상위	
군지역	5	15	37	23	4	84
도농복합시	4	12	22	16		54
전체 농어촌 시·군	9	27	59	39	4	138

- 시·군별 종합이행지수 순위의 변화 분포를 시·도별로 보면 분위가 상승한 시·군은 경기도가 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8개), 경상남도(7개)가 많았다. 반면 하락한 시·군은 전라남도(8개), 전라북도(7개)가 많다.

표 2-59. 시·군 종합이행지수 순위 변화의 시·도별 분포

시·도	2012~13년 종합이행지수 변화별 시·군 수					합계
	분위 하락		유지	분위 상승		
	하위←상위	중위←상위 하위←중위		중위→상위 하위→중위	하위→상위	
부산광역시	0	0	1	0	0	1
대구광역시	0	0	1	0	0	1
인천광역시	0	0	2	0	0	2
울산광역시	0	0	0	1	0	1
경기도	0	1	5	8	1	15
강원도	1	3	3	6	2	15
충청북도	0	4	5	2	0	11
충청남도	0	5	6	3	1	15
전라북도	3	4	3	3	0	13
전라남도	4	4	8	5	0	21
경상북도	0	5	15	3	0	23
경상남도	1	1	8	8	0	18
제주도	0	0	2	0	0	2
합계	9	27	59	39	4	138

그림 2-7. 2012~13년 종합이행지수 변화



### 3. 2011~13년 이행실태 평가

#### 3.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 변화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한 이래, 얼마나 많은 개선이 있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재의 9개 부문, 32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표 2-60 참조).
  - 각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달성률을 중심으로 하며 해당 기준의 특성상 달성률 계산이 부적합할 경우 달성 시·군 비율로 대신하였다.
- 주거 부문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2011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주택의 경우 2011년 80.1%에서 2012년에 88.3%(2013년 동일)로 크게 향상되었다
    - 2011년에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2012년부터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1년부터 36.2%에서 44.7%, 47.9%로 향상되었다.
  -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51.5%에서 56.1%, 59.0%로, 하수도 보급률 역시 2011년 73.2%에서 74.1%, 77.6%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 교통 부문의 경우 대중교통 관련 항목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객선, 인도 항목은 달성률이 감소하였다.
  - 15분 거리의 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은 2011년 82.4%에서 2012년 90.4%(2013년도 동일)로 향상되었다.

- 2011년에는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자료를, 2012년부터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 그러나 여객선 항목은 2011년 97.4%에서 2013년 94.4%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인도 항목 역시 2011년 19.0%에서 2013년 11.4%로 하락하였다.
  - 여객선 항목과 관련하여 2012년에는 웅진군 연평도가 기준에 미달한 반면, 2013년에는 웅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등 2개 도서가 미달되었다.
  - 인도 항목의 경우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특성상 값의 변화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
- 교육 부문에서는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의견수렴(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 항목은 교육부에서 선정한 우수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어 사실 향상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그와 유사한 우수고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폐교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항목의 경우 3개년에 걸쳐 꾸준히 향상되는 않았지만,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견수렴(교육발전위원회)과 평생교육시설 항목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의견수렴은 2011년 60.7%에서 66.7%, 68.1%로 향상되었으며, 평생교육시설은 18.9%에서 19.8%, 21.1%로 향상되었다.
  - 유치원/초·중교 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읍·면별 학교 유지로 그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향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순회방문 항목은 개선되었지만, 의약품 구입 항목은 약간 열악해졌다.
- 순회방문의 경우 2011년 4.4%에서 2012년 6.7%, 2013년 27.8%로 나타났

으나, 이행실태 점검방법에 변화가 있어 향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의약품 구입 항목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극히 일부 읍·면의 의약품 판매점이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서비스의 경우 그 이행실태 점검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이전의 달성률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 복지 부문은 청소년, 영유아, 다문화가족 항목이 2011년에 비해서 향상되었다.

-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항목의 이행실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청소년 항목의 경우 2012년에 달성한 시·군이 127개 시·군으로 2013년과 동일하지만, 이는 연기군이 세종특별시가 되어 제외되고, 전남 화순군이 새로이 기준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행실태가 향상되었다.
- 아동 항목의 경우 미미한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 노인 항목의 경우 2013년 결과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그 점검 방법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 응급 부문에서는 응급서비스 항목은 매우 열악해진 반면, 도서벽지 응급서비스는 개선되었다.<sup>22)</sup>

- 응급서비스 항목의 달성률은 2011~2012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3년 점검 결과 73.4%로 크게 하락하였다.
- 반면에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서비스는 달성률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관련 장비가 확충되고,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안전 부문은 방범설비, 경찰 출동 등의 항목은 개선된 반면, 소방 출동은 약간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2) 2012년 응급 부문의 서비스기준은 2013년에 들어와 응급 부문과 안전 부문으로 분리되었으며, 응급 부문에는 응급서비스와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에 대한 기준만 남아있음.

- 방법설비 항목은 2011년 11.0%에서 20.2%, 30.0%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경찰 출동 항목의 경우 3년 간 100.0%로 동일했으나,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므로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경찰 출동의 경우 시·군별 평균이 아니라, 응급 및 소방 출동과 동일한 수준에서 자료가 협조된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방 출동의 경우 2011년 51.4%에서 2012년 52.4%로 약간 개선되었으나, 2013년에 42.8%로 하락하였다.
  - 경찰 순찰 항목의 경우 2013년에 신설된 항목으로 이전과의 비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점검통계에 한계가 있어 점검할 수 없었다.
- 문화 부문의 경우 독서 항목은 하락하였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항목은 개선되었다.
- 읍·면에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 여건은 2011년 52.2%에서 43.2%, 43.6%로 약간의 굴곡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 반면에 문화시설이 있으며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관람할 수 있는 곳은 2011년 75.7%에서 81.9%로 향상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 항목 역시 14.0%에서 34.7%로 향상되었다.
- 초고속망 항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모든 곳에서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2011~2012년까지는 구축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2013년에는 구축 현황 자료를 구득할 수 있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실제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를 종합하여 2011년 대비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향상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수는 21개, 정체인 것은 1개, 하락한 것은 5개로 나타났다.<sup>31)</sup>

23) 고등학교 항목의 경우 활용통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지 총 시·군 수의 변화로

표 2-60.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변화

단위: %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1	2012	2013	'11~'13 비교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80.1	88.3	88.3	↗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36.2	44.7	47.9	↗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6.5	28.4	40.4	↗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6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51.5	56.1	59.0	↗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73.2	74.1	77.6	↗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82.4	90.4	90.4	↗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97.4	97.4	94.4	↘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19.0	14.0	11.4	↘
교육	유치원 /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	98.4	*1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85.7	86.3	86.2 <sup>23)</sup>	↗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97.8	95.7	98.2	↗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2.4	82.8	80.0	↗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60.7	66.7	68.1	↗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18.9	19.8	21.1	↗

인하여 이행실태가 약간 변한 경우로 항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자체적으로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1	2012	2013	'11~'13 비교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 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79.4	78.3	70.3	*2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4.4	6.7	27.8	*2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99.6	99.6	99.5	↘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 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7.3	27.1	65.9	*2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 다.	89.3	91.4	92.0	↗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를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97.9	98.0	97.9	—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69.9	67.9	70.3	↗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 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 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8.6	90.6 <sup>24)</sup>	94.2	↗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99.8	99.5	73.4	↘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100.0	100.0	100.0 <sub>25)</sub>	↗
안전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	-	*1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11.0	20.2	30.0	↗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100.0	100.0	100.0 <sub>29)</sub>	↗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 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51.4	52.3	42.8	↘
문화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52.2	43.2	43.6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 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75.7	87.1	81.9 <sup>29)</sup>	↗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 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 램을 향유할 수 있다.	14.0	30.2	34.7	↗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2011	2012	2013	'11~'13 비교
정보통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61.5	61.2	73.4 <sup>30)</sup>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정체된 경우 —, 하락한 경우 ↓로 나타냄.

2) 2013년에 신설된 기준으로 처음으로 점검하거나(\*1), 점검 통계나 방법이 변경된 경우(\*2)는 이행실태 향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시·군별 이행실태를 종합하여 도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2-61>과 같았다. 시·도별로 경기도와 제주도의 서비스기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 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제주도의 달성률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다소 열악한 편이다.

- 교육 부문의 경우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비교적 많

로 우수고등학교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2012년 점검 당시보다 증가하여 향상된 것으로 간주함.

24) 발표된 2012년 점검 결과는 94.2%였으나, 이 중 5곳은 2012년에 설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요청으로 고려한 결과임. 이에 2012년 말 자료를 활용하는 2013년 이행실태와 비교하기 위하여 2012년 점검 결과를 해당 5개 시설을 제외하고 재계산함.

25) 도서벽지응급서비스, 경찰출동 등 2개 항목은 2011년부터 모두 100%로 동일하지만, 보유 장비 및 인력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제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29)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은 시설과 월 1회 이상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는지를 동시에 점검함. 이에 2011, 2012년 점검 결과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재점검한 결과임.

30) 초고속망 항목은 2011~2012년에는 구축률을 확인할 수 없어 가입률로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나, 2013년에는 구축률 자료를 구축하여 점검하였으므로 본래 향상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움. 다만, 이러한 인프라의 경우 구축되었다가 철수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향상된 것으로 간주함.

31) 서비스기준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항목, 점검방법이 변경된 항목 등 5개 항목은 달성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제외됨.

은 지역에서 여건이 좋은 편이다.

- 보건의료 부문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복지 부문에서는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여건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등의 부문에서는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61. 시·도별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달성률 비교

단위: %

분야	항목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 주거	주택	93.6	87.3	88.1	90.0	88.8	87.9	82.6	87.0	86.7
	난방	73.0	14.6	43.9	41.8	21.8	26.2	44.8	36.1	0.0
	마을공동시설	42.9	55.5	50.9	43.2	12.9	28.3	35.7	63.7	90.7
	상수도	70.3	52.7	53.8	47.7	72.4	47.9	53.5	65.2	100.0
	하수도	81.0	81.3	72.5	68.8	75.0	68.7	74.4	85.3	88.0
2. 교통	대중교통	95.8	88.7	89.7	92.7	93.2	89.6	85.2	88.0	93.0
	여객선	-	-	-	-	100.0	100.0	-	100.0	100.0
	인도	28.5	19.2	9.8	9.8	7.1	8.2	5.7	12.6	18.4
3. 교육	유치원/초·중교	97.1	97.4	99.0	99.4	99.4	97.8	97.1	99.5	100.0
	고등학교	93.3	73.3	100.0	80.0	84.6	95.2	78.3	100.0	0.0
	폐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3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68.8	62.7	87.0	86.1	78.0	81.5	87.5	88.9	87.9
	의견수렴	53.3	53.3	63.6	100.0	46.2	81.0	95.7	50.0	0.0
	평생교육	43.9	24.6	22.5	21.7	13.8	15.3	17.6	16.2	41.7
4. 보건의료	진료서비스	93.3	53.3	72.7	80.0	61.5	61.9	56.5	77.8	100.0
	순회방문	58.6	1.0	35.2	40.4	27.4	9.7	54.3	45.3	100.0
	의약품구입	97.8	98.2	100.0	99.4	99.4	100.0	100.0	100.0	100.0
5. 복지	노인	71.5	72.1	65.2	69.1	63.7	60.5	68.1	59.3	71.4
	청소년	100.0	93.3	100.0	86.7	100.0	85.7	87.0	94.4	100.0
	아동	97.1	97.4	99.0	100.0	99.4	98.3	94.5	100.0	100.0
	영유아	93.5	82.5	71.6	77.0	60.4	66.8	63.4	58.9	100.0
	다문화가족	100.0	73.3	100.0	93.3	100.0	90.5	100.0	100.0	100.0

분야	항목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6. 응급	응급서비스	72.3	75.6	70.6	72.5	73.0	74.1	74.8	72.1	82.7
7. 안전	방법설비	35.7	35.1	47.1	33.2	28.2	13.9	37.1	24.5	61.0
	경찰 출동	<b>100.0</b>								
	소방 출동	27.7	46.4	<b>50.2</b>	<b>53.9</b>	<b>58.7</b>	49.1	30.8	43.5	<b>62.9</b>
8. 문화	독서	62.6	42.1	44.1	42.2	37.1	41.5	35.3	45.7	83.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66.7	86.7	72.7	<b>93.3</b>	69.2	<b>95.2</b>	78.3	<b>94.4</b>	50.0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59.7	34.2	46.1	30.4	34.0	39.7	29.4	15.7	<b>100.0</b>
9. 정보통신	초고속망	<b>96.2</b>	<b>84.4</b>	65.5	<b>78.4</b>	47.7	63.7	<b>74.1</b>	<b>84.4</b>	<b>94.8</b>

주 1) 음영으로 된 값은 해당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로 된 값은 달성하진 못했으나, 근사치를 의미함.

2) 응급 부문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그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은 이행실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본 시·도별 이행실태에서는 제외되었음.

### 3.2.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의 변화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9개 부문 20항목 22개 지표를 통해 산출·비교하였다.
  - 2013년 이행지수는 이전과 달리 서비스기준 항목의 충족값을 기준으로 한 선형변환 방법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 이행지수 1은 서비스기준에 충족한 것을 의미하며 1이상은 초과달성, 1이하는 미달성을 의미한다.
- 2012년에 비해 이행지수와 지표 변화에 따라 부문별 이행지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문별 이행지수는 2013년 이행지수만 분석하였다.
  - 2012~2013년 간 이행지수의 변화는 종합이행지수의 순위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다.
- 9개 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보면 종합지수는 제주(0.8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도(0.73)가 높았고 그 외 지역은 0.58-0.65사이다.
  - 제주도는 ‘도시가스 보급률’(0.00)과 ‘통학수단 제공 초등학교 비율’(0.13)에서 9개 도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나, ‘방과후학교 참여율’(2.02), ‘상수도 보급률’(1.39), ‘광대역통합망 구축률’(1.28), ‘하수도 보급률’(1.24) 등에서 1이상의 높은 지수값을 나타냈다.
  - 경기도는 ‘응급서비스 도착 비율’(0.31)이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으나 ‘광대역통합망 구축률’(1.32), ‘도시가스 보급률’(1.30),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1.08), ‘하수도 보급률’(1.08), ‘방과후학교 참여율’(1.04)에서 1이상의 지수값을 보였다.
  - 종합이행지수가 가장 낮은 전라북도는(0.58)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1.90으로 높은 지수를 나타냈으나 ‘평생교육기관 설치율’(0.14),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비율’(0.16), ‘도시가스 보급률’(0.20)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 22개 항목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9개 도 모두 1이상의 이행지수 값을 보였으며 지수 값이 2이상인 지역도 4개(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로 이행지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평생교육기관 설치 비율’은 이행지수가 높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0.5이하로 낮고 그 외 지역들도 0.2내외로 가장 이행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이다.
  -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에도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비율’, ‘하수도 보급률’, ‘초등학교 입지 읍·면 비율’,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비율’,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비율’, ‘광대역통합망 구축율’ 등에 대하여 시·군별 이행지수 평균이 1에 가깝다.
  - 반면 ‘도시가스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비율’, ‘인도 설치도로 비율’, ‘평생교육기관 설치 비율’, ‘응급서비스 도착비율’, ‘CCTV 설치 비율’, ‘소방차 도착 비율’, ‘도서대출이 가능한 읍·면 비율’ 등의 항목에서는 이행지수가 0.5 이하인 지역들이 많아 위 항목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012~2013년 종합이행지수의 변화는 각 연도의 시·군별 순위에 따라 시·군을 3개 분위(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나누어 분위 간 이동을 통해 분석하였다.
  - 시·군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체 138개 시·군 중 43개(31.1%)의 분위가 상승하였으며, 36개(26.0%)가 하락하고 59개 시·군은 2012년과 동일하다. 특히 양평군·정선군·인제군·태안군은 2012년에 하위 30%에 속했으나 2013년에는 상위 3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4개 군 중 20개(23.8%)는 종합이행지수 순위의 분위가 하락하고 27개(32.1%)가 상승하였으며, 도농복합시는 16개(29.6%)가 상승하고 16개가 하락하였다.
  -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분위가 상승하였고, 이어 강원도가 15개 중 8개, 경상남도가 18개 중 7개로 많았다. 반면 전라

남도는 21개 시·군 중 8개 시·군의 분위가 하락하였고, 이어 전라북도가 21개 중 7개, 충청남도가 15개 중 5개로 많았다.

표 2-62.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평균

분야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합지수		0.73	0.65	0.65	0.66	0.58	0.60	0.60	0.65	0.84
1. 주거	최저주거기준	1.08	0.84	0.88	0.97	0.83	0.88	0.52	0.71	0.89
	도시가스	1.30	0.23	0.54	0.60	0.20	0.32	0.32	0.41	0.00
	유지관리비	0.92	0.93	0.97	0.98	0.91	0.99	0.98	0.96	1.00
	프로그램운영	0.49	0.58	0.51	0.49	0.16	0.33	0.36	0.66	0.89
	상수도보급	0.93	0.71	0.66	0.50	0.87	0.57	0.68	0.69	1.39
	하수도보급	1.08	1.02	0.99	0.86	0.92	0.85	0.78	1.00	1.24
2. 교통	대중교통	0.87	0.65	0.65	0.76	0.78	0.65	0.52	0.62	0.78
	인도설치	0.40	0.24	0.24	0.27	0.24	0.17	0.11	0.29	0.23
3. 교육	초등학교	0.93	0.94	0.97	0.98	0.98	0.95	0.94	0.98	1.00
	통학수단	0.42	0.42	0.83	0.61	0.89	0.58	0.62	0.64	0.13
	방과 후 학교	1.04	1.21	2.10	1.98	1.90	1.96	2.11	2.14	2.02
	평생교육	0.46	0.26	0.24	0.21	0.14	0.16	0.19	0.18	0.44
4. 보건의료	의약품구입	0.95	0.95	1.00	0.93	0.99	1.00	1.00	1.00	1.00
5. 복지	노인	0.59	0.54	0.50	0.55	0.45	0.43	0.52	0.40	0.58
	아동	0.94	0.94	0.98	1.00	0.98	0.96	0.86	1.00	1.00
	영유아	0.93	0.81	0.69	0.73	0.54	0.62	0.57	0.55	1.00
6. 응급	응급	0.31	0.38	0.27	0.30	0.25	0.34	0.36	0.32	0.55
7. 안전	CCTV	0.38	0.36	0.45	0.33	0.29	0.18	0.37	0.23	0.65
	소방차	0.20	0.39	0.43	0.46	0.45	0.41	0.19	0.29	0.58
8. 문화	도서대출	0.63	0.40	0.44	0.39	0.35	0.38	0.34	0.46	0.85
	문화프로그램	0.59	0.39	0.50	0.35	0.33	0.40	0.33	0.19	1.00
9. 정보통신	광대역망	1.32	1.13	0.71	1.00	0.46	0.73	0.91	1.09	1.28



## 제 3 장

### 농어촌서비스기준 문화 부문 심층연구

#### 1.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현황과 정책 의의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3년에는 약 2만 4천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 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 문화 향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지리적인 이유로 충분한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른바 ‘문화 소외계층’도 나타나고 있다.
- 문화 소외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특정 계층 및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김정선, 2010), 이와 같은 개념에서 시설 부족과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공연, 관람, 교육 등 문화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적은 농어촌 주민은 지리적 문화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다.
  -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9.6%가 예술

행사를 관람하였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가 각각 72.5%, 73.9%의 관람률을 보인데 비해, 읍·면지역은 52.7%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 또한 연평균 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5.1회인 반면, 읍·면지역은 3.7회로 도시에 비해 적다.
-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모든 국민이 충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사회적 복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그리고 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경제·보건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의 개념이 행복추구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복지영역에 포함되었고, 문화복지의 개념도 등장하였다(조현성 등, 2004: 2).
  - 정부는 문화기회 격차 해소와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2: 37), 지자체에서도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민간의 문화 서비스 공급은 고소득층과 인구가 많은 지역에 편중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문화 서비스 공급을 시장 기제에 의존할 경우 계층 간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결국 문화복지 정책은 누구나 기본적인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간 문화 향유 기회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은 크게 도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 목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도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2.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

### 2.1.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적절성

- 농어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 적절한 서비스 공급 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으며, 또한 개인의 문화 향유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매우 주관적이다.
- 이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에 대해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장의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중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sup>32)</sup>

32) 전문가 및 주민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은 제 4장과 <부록 4>와 <부록 5>의 설문조사 표 참고

표 3-2.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전문 분야	응답자 수(명)
주거	2
교통	1
보건	3
사회복지	4
사회안전	2
지역개발	12
지역종합행정	2
기타	4

표 3-3. 주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합계		700	100.0
성별	남자	377	53.9
	여자	323	46.1
연령대	20-29세	149	21.3
	30-39세	180	25.7
	40-49세	204	29.1
	50-59세	138	19.7
	60-79세	29	4.1
거주지	경기도	282	40.3
	강원도	42	6.0
	충청북도	45	6.4
	충청남도	61	8.7
	전라북도	45	6.4
	전라남도	53	7.6
	경상북도	72	10.3
	경상남도	84	12.0
	제주특별자치도	16	2.3

-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내 각 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독서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전문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 독서 항목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43.3%의 전문가가 현 서비스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질의 강화와 접근성 기준의 강화에 대한 응답이 다음 순이었다.

표 3-4. 독서 항목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단위: %	
항목의 적절성	응답률
현행 유지(읍·면단위)	43.3
접근성 기준 강화(행정리단위)	16.7
읍·면/행정리 혼합(마을권역단위)	6.7
서비스 질 강화(거점읍·면/시·군단위)	20.0
기타	13.3
합계	100.0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까지 도달’과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에 대해서는 약 절반의 전문가가 ‘대체로 적합’ 또는 ‘매우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 그러나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과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향유’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향유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 판단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문화 향유에 대한 빈도와 접근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전문공연 프로그램의 향유 기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3-5.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단위: %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 세부항목	매우 부적합	대체로 부적합	판단 애로	대체로 적합	매우 적합	계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3.3	26.7	20.0	40.0	10.0	100.0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0.0	26.7	23.3	46.7	3.3	100.0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으며,	0.0	30.0	23.3	43.3	3.3	100.0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3.3	30.0	26.7	33.3	6.7	100.0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3.3	16.7	46.7	26.7	6.7	100.0

## 2.2.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현황

-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의 운영 현황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독서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에서는 대부분이 비슷하거나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3-6. 문화 부문의 과거 3년 전과 개선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단위: %

	매우 악화	악화	비슷	개선	매우 개선	합계
독서	0.0	10.0	53.3	36.7	0.0	10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0.0	0.0	46.7	53.3	0.0	100.0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0.0	3.3	33.3	60.0	3.3	100.0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 복권기금의 문화나눔사업, 그리고 지자체의 문화·예술 사업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은 국립예술단이 참여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농산어촌 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리고 농어촌 희망재단의 문화사업인 농어촌 문예회관 순회공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이 있다.

표 3-7.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목적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
농산어촌 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지방문예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
농어촌 문예회관 순회공연**	농어촌 지역 문화예술회관, 오지 및 섬마을 등 연극, 뮤지컬, 발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작품을 선정 공연하여 농어촌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주 1)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임.

2) \*\* 농어촌 희망재단의 문화 사업 프로그램임

자료: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농어촌희망재단,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홈페이지

○ 농어촌 주민의 도서관 시설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의 읍·면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마을문고(도서관) 등을 합하면 80% 이상의 읍·면 내에 도서 대출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1991년부터(농어촌은 1994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는 사업비(부지매입비 제외)의 80%(최대 16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인구 5만 명 당 공공도서관 1개관 개관을 목표로 2013년에는 공공도서관 37개관, 농어촌 공공도서관 10개관 등 47개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러나 도서관을 제외하면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도서의 대출과 열람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찾아가는 도서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 도서관의 추천을 받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 소외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서를 제공하고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 역시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3-8. 읍·면 내 도서 대여 가능 시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단위: %

읍·면 내 도서관 시설		도서관 시설 외 도서 대여 시설	
국·공립 공공도서관	52.3	없음	47.7
작은도서관	27.7	마을회관·경로당·주민센터 등 공동시설	25.6
학교도서관	23.9	이동도서관	21.9
마을문고(도서관)	19.9	도서대출 배달서비스	13.0
없음	12.6	버스정류장·정자 등 야외	3.3
문화센터	0.4	대여점	0.6
평생교육원	0.1		
아동복지센터	0.1		

- 주민들의 연간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는 1~3회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4~8회 관람을 한다는 응답이 20.3%를 차지하였다. 관람 장소는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이 41.4%로 가장 많았으나 타 시·군의 관련 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37.3%로, 거주 시·군을 벗어나 관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문화프로그램을 1회 이상 관람하는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나 월 1회, 즉 연간 12회 이상 관람률은 극히 낮다.
  -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혀 관람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7.9%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아직 프로그램 관람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공연 관람 장소도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거주하는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많으나 젊은 층에서는 타 시·군 관련시설 이용 응답이 절반 이상, 고령층에서도 38.9%로 나타나 시·군 내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직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표 3-9. 연간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 및 장소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간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	1~3회 관람	47.3	40.3	48.3	50.0	50.7	41.4
	4~8회 관람	20.3	24.8	21.1	20.1	15.2	17.2
	9~11회 관람	2.6	6.0	2.8	1.5	0.7	0.0
	12회 이상 관람	3.0	6.0	1.7	2.0	2.9	3.4
	전혀 없음	26.9	22.8	26.1	26.5	30.4	37.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문화프로그램 관람 장소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41.4	33.0	42.1	48.0	43.8	22.2
	타 시·군 관련 시설	37.3	54.8	34.6	31.3	29.2	38.9
	시·군 내 민간 문화공연시설	15.8	14.8	14.3	17.3	17.7	11.1
	읍·면 내 주민자치센터	4.9	3.5	3.0	6.0	8.3	0.0
	시·군청 시설	4.7	4.3	6.0	4.0	2.1	16.7
	읍·면사무소 시설	4.7	4.3	6.8	2.7	5.2	5.6
	시·군 내 지방문화원	3.5	2.6	2.3	2.7	8.3	0.0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내 공동시설	2.1	0.9	0.8	0.7	6.3	11.1
	극장	2.0	0.9	1.5	2.7	2.1	5.6
	기타	2.9	2.6	5.3	2.7	1.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는 도서관, 공연장, 마을공원, 임시행사장, 대학교, 문화센터, 찾아가는 문화공연, 종교시설에서의 행사, 문화시설, 모름임.

- 응답자 특성별 연간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를 보면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그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학력이 높고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저학력자와 자가용 미보유자에 비해 뚜렷이 많은 관람 횟수를 보였다.

표 3-10. 응답자 특성별 연간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

단위: %

응답자 특성		1~3회	4~8회	9~11회	12회 이상	전혀 없음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미만	46.4	3.6	0.0	0.0	50.0
	100~200만 원 미만	52.4	13.4	1.2	1.2	31.7
	200~300만 원 미만	42.4	19.4	2.2	1.4	34.5
	300~400만 원 미만	46.9	17.0	3.4	4.8	27.9
	400~500만 원 미만	49.0	24.5	2.1	2.8	21.7
	500~600만 원 미만	46.0	28.6	0.0	3.2	22.2
	600~700만 원 미만	62.2	24.3	2.7	0.0	10.8
	700~800만 원 미만	41.2	35.3	5.9	2.9	14.7
	800만 원 이상	40.7	14.8	11.1	14.8	18.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4.5	0.0	0.0	0.0	45.5
	고졸	53.8	12.5	0.0	1.9	31.9
	전문대졸	46.8	20.7	1.8	1.8	28.8
	대학교 졸	45.1	23.1	4.2	3.9	23.7
	대학원졸 이상	42.4	27.1	1.7	3.4	25.4
자가용 보유 여부	예	47.2	21.5	2.5	3.3	25.5
	아니오	48.4	7.8	3.1	0.0	40.6

○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는 연간 1회가 32.0%, 2회 관람이 24.2%로, 읍·면 주민의 약 절반이 연간 1~2회 전문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 장소는 타 시·군의 관련 시설이 시·군 내 시설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농어촌 지역에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 전문공연 프로그램의 관람 횟수가 가장 많은 20대에서도 분기별 1회, 즉 연간 4회 이상 관람하는 비율이 8.7%에 불과하다.
- 전문공연 관람 장소에서 타 시·군의 관련 시설 이용 비율이 20대는 절반 이상, 60대에서도 거의 절반으로 나타나 아직 시·군에 전문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3-11. 연간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 및 장소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간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	1회 관람	32.0	33.0	27.8	34.0	35.4	22.2
	2회 관람	24.2	23.5	24.1	26.7	21.9	22.2
	3회 관람	10.5	8.7	9.0	11.3	13.5	11.1
	4회 이상 관람	4.9	8.7	4.5	3.3	3.1	5.6
	전혀 없음	28.3	26.1	34.6	24.7	26.0	38.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장소	타 시·군의 관련 시설	43.1	58.8	43.7	37.2	32.4	45.5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39.0	27.1	32.2	45.1	52.1	36.4
	시·군 내 민간 문화공연시설	9.5	8.2	8.0	13.3	8.5	0.0
	시·군 내 지방문화원	4.4	2.4	5.7	3.5	7.0	0.0
	시·군청 시설	3.5	2.4	4.6	2.7	2.8	18.2
	읍·면 내 주민자치센터	2.7	2.4	2.3	3.5	2.8	0.0
	읍·면사무소 시설	2.5	2.4	4.6	0.9	1.4	9.1
	기타	2.7	1.2	4.6	1.8	4.2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 시설은 공연장,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종교시설에서의 행사, 문화시설

- 응답자 특성별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를 보면 소득이 높고 자가용 보유 응답자의 관람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가 대체로 많아지는데, 특히 월평균 수입이 7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관람 횟수가 많았고, 자가용을 보유한 응답자의 관람 횟수가 미보유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
  - 반면 최종학력은 저학력자에서도 프로그램 관람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프로그램 관람 횟수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표 3-12. 응답자 특성별 연간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횟수

단위: %

응답자 특성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혀 없음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미만	28.6	42.9	0.0	0.0	28.6
	100~200만 원 미만	21.4	23.2	8.9	1.8	44.6
	200~300만 원 미만	36.3	17.6	8.8	5.5	31.9
	300~400만 원 미만	28.3	17.9	11.3	4.7	37.7
	400~500만 원 미만	36.6	31.3	12.5	1.8	17.9
	500~600만 원 미만	38.8	26.5	6.1	10.2	18.4
	600~700만 원 미만	45.5	27.3	12.1	3.0	12.1
	700~800만 원 미만	17.2	31.0	17.2	13.8	20.7
	800만 원 이상	22.7	18.2	13.6	9.1	36.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3.3	33.3	0.0	16.7	16.7
	고졸	38.5	17.4	15.6	2.8	25.7
	전문대졸	22.8	27.8	10.1	3.8	35.4
	대학교 졸	31.8	25.2	9.5	6.2	27.4
	대학원졸 이상	34.1	27.3	6.8	2.3	29.5
자가용 보유 여부	예	32.1	24.1	11.2	5.3	27.4
	아니오	31.6	26.3	2.6	0.0	39.5

### 2.3. 문화 부문 정책 수요

○ 농어촌 주민들은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 ‘보고 듣고 구경하는 즐거움’이 목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60세 이상 응답자를 제외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몸과 마음의 휴식’을 목적으로 문화·여가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높고, 젊은 층일수록 ‘보고 듣고 구경하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아 연령층에 따른 활동 목적에 차이를 보였다.

- 연령별 활동 목적의 차이는 문화 프로그램의 대상 계층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3.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나 즐거움에 대한 주민조사

단위: %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몸과 마음의 휴식	45.3	40.3	46.1	48.0	47.8	34.5
보고 듣고 구경하는 즐거움	30.6	41.6	33.3	23.5	24.6	34.5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9.4	3.4	5.0	13.2	15.2	13.8
배우는 즐거움	6.6	4.0	7.2	7.4	6.5	10.3
직업, 일자리 등에 대한 준비	3.3	5.4	2.2	3.4	2.2	3.4
재능 발견과 활용	2.6	3.4	3.3	2.5	0.7	3.4
단체 활동 참여와 친교	1.4	1.3	1.1	1.0	2.9	0.0
사회적 기여	0.7	0.7	1.7	0.5	0.0	0.0
모름	0.1	0.0	0.0	0.5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은 ‘문화·예술 관람’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관광’이나 ‘취미·오락’에 대한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연령층에 따라 하고 싶은 활동에 차이를 보였다.

- 젊은 층일수록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관광’과 ‘취미·오락’에 대한 수요가 높다.
- 특히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취미·오락’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층일수록 자신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4.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

단위: %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문화예술 관람 (전시회, 공연 등)	29.3	36.2	32.8	28.4	21.0	17.2
관광 (문화유적 방문, 풍경 관람 등)	18.0	12.1	17.2	23.0	16.7	24.1
취미·오락 (공예, 등산, 낚시 등)	15.7	14.8	12.8	14.7	18.8	31.0
문화예술 참여 (노래교실, 사진촬영, 춤 등)	9.9	8.1	11.7	8.3	12.3	6.9
휴식활동 (산책, 사우나, TV시청 등)	9.6	12.8	8.3	7.8	11.6	3.4
스포츠 참여활동 (체육활동, 운동경기 등)	8.6	5.4	11.1	8.3	9.4	6.9
스포츠 관람 (경기장 방문, TV 시청 등)	6.3	10.1	5.0	5.4	4.3	10.3
사회활동 (봉사, 종교, 동호회 등)	2.6	0.7	1.1	3.4	5.8	0.0
모름	0.1	0.0	0.0	0.5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고령층에서 문화 활동을 통한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고령층은 교육과 체험을 통한 학습 프로그램이 큰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큰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참여, 공연,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이며, 어르신 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학교, 문화나눔 봉사단,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문화동아리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2005년 10개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sup>33)</sup>하고 있으며 2012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 점수가 91.2점으로 매우 높았다.<sup>34)</sup>

표 3-1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내용

목적	프로그램명	내용
문화·여가 교육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대상 악기, 노래, 연극, 무용, 사진 등의 다양한 예술장르 맞춤형 교육
	어르신동아리활성화	어르신들의 지속적, 자생적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어르신문화축제지원	광역별 어르신 문화 축제 개최
	찾아가는 문화학교 (전문가 파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시설 등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 대상 예술장르 맞춤형 교육
재능 기부	찾아가는 문화학교 (이수자강사 파견)	어르신문화학교를 수료한 이수자강사가 유치원, 학교, 마을회관, 요양원 등의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예술장르 교육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어르신들이 지역축제,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배움을 나누는 재능기부 봉사 활동 실천
	생활문화전승	어르신들이 간직해 온 생활문화(지식과 경험, 풍습, 공동체 문화 등)가 세대·지역 간에 교류,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한국문화원협회(2012)

○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여가 활동 장소는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자택 등으로 접근성과 시설의 수준이 장소 선정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 연령층별 활동 장소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을 가장 좋은 장소로 선택하였으나, 다음 선호 장소로 30~50대가 읍·면 주민

3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1 문화예술 정책백서」, p.84

3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2013. 3. 13.,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다.

자치센터를 선택한 반면, 2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택을 선택해 연령층별 차이를 보였다.

표 3-16. 문화·여가 활동하기 좋은 장소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34.3	34.9	34.4	37.3	31.9	20.7
읍·면 주민자치센터	15.7	5.4	17.2	21.1	16.7	17.2
자택(집)	10.4	17.4	7.2	8.8	8.7	13.8
시·군 내 민간 문화공연시설	9.0	8.1	8.9	10.3	9.4	3.4
읍·면사무소 시설	8.1	7.4	8.3	6.9	11.6	3.4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내 공동시설	7.4	6.7	8.3	4.9	8.0	20.7
타 시·군의 관련 시설	6.3	10.7	7.8	3.9	2.9	6.9
시·군청 시설	4.6	6.7	2.2	3.4	5.1	13.8
시·군 내 지방문화원	2.6	1.3	3.3	2.5	3.6	0.0
기타	1.6	1.3	2.2	1.0	2.2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 장소는 전국의 명승지, 종교시설, 체육관, 휴양림, 가까운 곳임

- 문화·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에서는 주민과 전문가 간 의견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시설 및 장소 제공’, ‘교통편의 증진’, ‘지역 내 공연·전시 개최’ 등이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전문가 조사에서는 ‘동호회·모임 운영 지원’, ‘바우처 등 경비 지원’,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이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 조사는 경제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등 콘텐츠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17. 문화·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관련 시설 및 장소 제공	39.7	38.9	42.8	40.7	38.4	24.1
교통편의 증진	31.1	53.7	29.4	23.0	21.7	27.6
지역 내 공연·전시 등 개최	24.4	24.2	25.6	23.0	26.1	20.7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19.7	16.1	16.1	22.5	23.2	24.1
관련 장비·재료·자료 지원	18.1	12.8	18.9	18.6	19.6	31.0
바우처 등 경비 지원	17.9	10.1	20.6	22.1	14.5	27.6
문화·여가 관련 교육활동 증진	16.0	14.8	16.1	15.2	18.1	17.2
강사 및 전문가 파견	13.3	9.4	12.8	12.3	18.1	20.7
동호회 및 모임 운영 지원	10.9	10.7	12.2	12.7	8.0	3.4
관련 정보의 제공	8.4	8.7	5.0	9.8	11.6	3.4
문화 산업에 대한 연구와 인식 개선	0.1	0.7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8. 문화·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전문가 조사

단위: %

지원 내용	응답률
동호회/모임 운영 지원	23.6
바우처 등 경비 지원	14.5
찾아가는 프로그램	12.7
강사/전문가 파견	12.7
교통편의 증진	10.9
지역내 공연, 전시 등 개최	9.1
관련 교육활동 증진	5.5
관련 정보의 제공	5.5
관련 시설 및 장소 제공	3.6
관련 장비/재료/자료 지원	1.8
합계	100.0



### 3.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방안

#### 3.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복지 정책 연계 사례

##### 3.1.1.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 전북은 2012년부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여가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국회,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2년차인 올해 2013년 2월 8일에는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전북의 삶의 질 정책은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전북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은 연간 4.7회로 전국 평균 4.2회보다 높았으나 희망 관람 횟수는 18.1회로 아직 도민들의 관람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전북은 자체적으로 달성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전라북도, 2012).
  - 연간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2010년 조사에 비해 평균 0.9회 증가하였으나 동지역 주민들이 연간 7.2회로 읍(5.6회), 면(5.7회)에 비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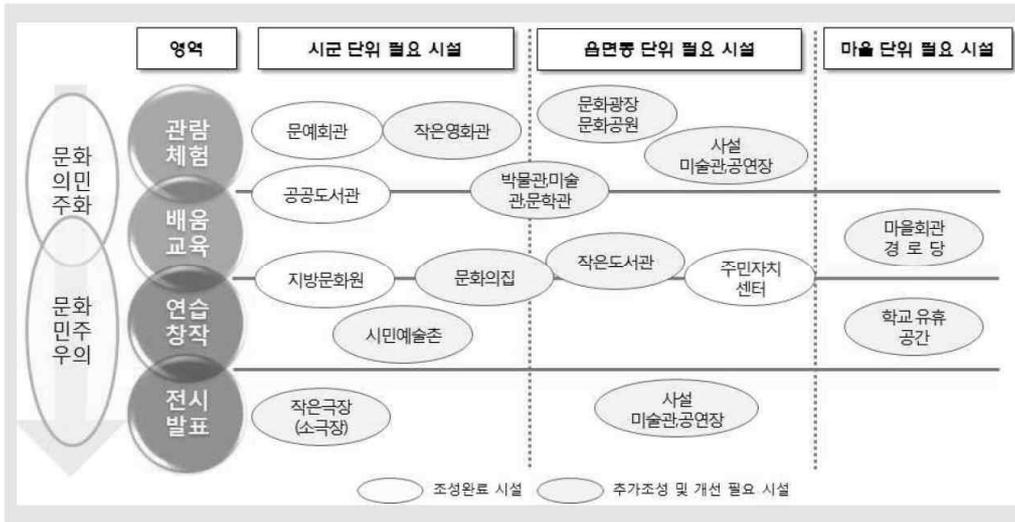
그림 3-1. 문화·예술 부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

항목	지표		08.03	10.03(연간)	12.04	1차목표(13.12기준)		2차목표	
			(연간)	(전국평균은 최고지역)	(연간)	목표치	도민목수 (12.04)	(16.12기준)	
문화예술 관람체험	예술행사 관람률	전북	72.4%	66.1%	69.5%	▶	73%	78.5%	80%
		전국	67.3%	67.2% (울산 71.9%)					
문화예술 관람체험	평균 관람횟수	전북	4.29회	3.87회	4.7회	▶	7.7회	18.1회	18회
		전국	4.88회	4.18회 (울산 5.51회)					
예술교육 입문과정	문화교육 참여율	전북	9.6%	8.9%	12.3%	▶	15%	24%	24%
		전국	8.6%	9.2% (울산 26.2%)					
문화예술 창작발표	동호회 참여율	전북	1.3%	6.5%	3.9%	▶	8%	20.9%	20%
		전국	2.9%	3.1% (전북 6.5%)					
문화예술 창작발표	창작발표 경험률	전북	1.3%	6.4%	2.4%	▶	3%	5.5%	6%
		전국	2.4%	2.2% (전북 6.4%)					
문화자원 봉사활동	문화봉사 참여율	전북	4.5%	8.6%	8.4%	▶	11%	-	20%
		전국	6.2%	7.2% (충남 12.7%)					

자료: 전라북도(2012), p.218

- 전북의 문화·예술 확충 사업들은 많은 지자체에서 배우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도 전국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에서 전북 내 시·군들의 달성률이 낮으나 전북 자체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 도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북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 영화관 1호점인 전북 김제의 ‘지평선 시네마’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2017년까지 극장이 없는 모든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2. 전북의 문화 향유 관련 영역별 필요 문화·복지 시설



자료: 전라북도(2012), p.165.

- 이른바 ‘작은’ 시리즈는 전북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작은 도서관,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에 더해 작은 예술촌, 작은 박물관·미술관, 작은 공연장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작은 예술촌은 문화동호인 및 아마추어 예술인을 위한 연습·발표·창작 공간으로 ‘1개 시·군 1개 주민예술촌’ 조성을 목표로 현재 23개가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 작은 미술관·박물관은 미술을 통한 체험과 치료가 복합된 공간 조성을 목표로 ‘1개 시·군 1개 작은 미술관·박물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립 미술관·박물관의 건립 또는 활성화를 지원한다.
  - 작은 공연장은 동호인의 연습 및 발표 공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연 관람장을 목표로 100~200석 내외의 소극장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0. 연차별 문화예술시설 배치 계획

단위: 개소

	2012	2013	2014	2015
도서관	6	4	0	0
박물관미술관	2	7	5	5
문예회관	2	1	1	0
문화원	0	0	1	0
문학관	2	2	2	2
문화의집	0	0	1	1
작은도서관	23	15	15	0
작은영화관	2	6	0	0
작은예술촌	0	4	5	5
작은공연장	0	2	2	2

자료: 전라북도(2012), p.167

- ‘작은’ 시리즈 외에도 전북에서는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민 자치센터의 주민복합문화공간화’, ‘야외문화공간 확대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림 3-3. 전북 김제의 지평선 시네마 개관식(좌)과 영화관 전경(우)



자료: 뉴스시스, 2013. 9. 5(좌); 전북도민일보, 2013. 12. 9(우)

- 문화 코디네이터는 전북에서 2012년 최초로 양성한 문화 전문인력으로 전북 각 시·군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호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문화 코디네이터와 달리 문화·복지 매개인력은 사회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사업 등의 문화·복지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표 3-21. 전라북도 문화인력 현황

문화인력	문화 코디네이터	문화복지 매개인력
대상	중산층 주부, 직장인, 노인, 생활문화 동호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생활과 이용시설 이용자, 장애인 1,2,3등급, 독거노인 등
	문화소외지역주민: 농산어촌, 도서 문화소외지역 주민, 도시근교 농촌동, 공장밀집 근로자 집단 거주지역, 도시 빈민 주거지역 주민	
범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 사업지역으로 부산과 함께 전라북도가 선정되어 총 20명이 배치

자료: 전라북도(2012).

-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시·군별 2명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문인력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조성 및 지원, 취약계층 문화·복지 담당, 읍·면·동 단위 별 마을문화공동체 조성 및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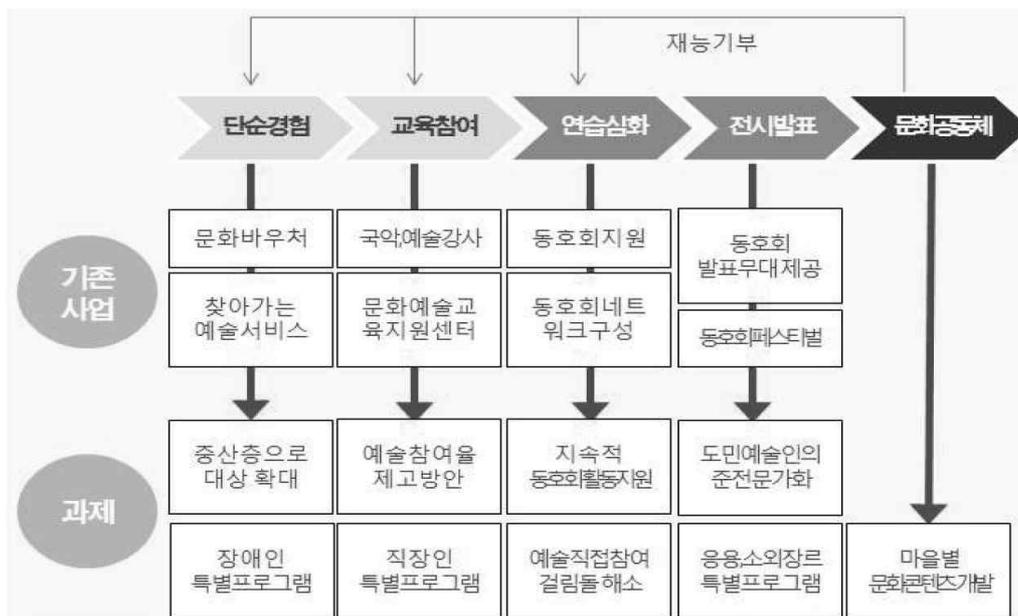
표 3-22. 문화·복지 인력 배치 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문화코디네이터	14명 (시·군별 1명)	14명 (시·군별 1명)	28명 (시·군별 2명)	28명 (시·군별 2명)
문화복지매개인력	20명	25명	32명	32명
문화자원봉사	34명	39명	60명	60명

자료: 전라북도(2012), p.201

- 전북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단순 경험(관람) 및 교육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발표 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활동을 통한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4. 문화·복지 프로그램 추진방향



자료: 전라북도(2012), p.183.

- 전북의 주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크게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및 교육을 위한 사업과 아마추어 문화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취약계층 문화 향유 사업은 공연이나 전시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방문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며, 아마추어 문화활동은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전문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전북은 도민의 문화·예술 관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000원의 행복’,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월 1회 장애인 문화나들이의 날’, 면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한 ‘농촌지역 주민 전용 배달강좌제’ 등의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1000원의 행복’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대학로 공연, 세종문화회관 공연비를 지원해주거나 연습공간이 부족한 동호인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이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1만 원으로 문화예술 입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표 3-23. 전북의 주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명	설명
취약계층 문화 향유 및 교육사업	신나는 예술버스	시·군별 공연신청을 받아 장소선정 (연 75회 대중예술, 전통무영, 민요, 댄스, B-boy 공연)
	용기종기 마실극장 (찾아가는 영화관)	문화적 소외계층을 찾아가 DVD 상영(2011년 70회상영 3,336명 관람)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프로그램 공연단체를 선정하여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공연 (푸른음악회: 5단체, 12회공연, 문화프로그램: 98개 단체 174회 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지역문화격차해소, 복지시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연 등 연간 30회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명	설명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를 희망하는 시·군 문화시설 및 학교 전시실에서 연간 12회 전시
아마추어 문화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어린이 예술단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의 교육 및 정기연주 지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페스티벌 개최)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전문가 파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 < 전북의 찾아가는 영화관 '용기종기 마실극장' >



용기종기 마실극장은 전라북도와 전북독립영화협회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북 도내 어느 곳이라도 보고싶은 영화를 신청하면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사업이다. 2013년 11월 4일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에 위치한 사회복지 법인 '아름다운 마을'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신청하였으며 이날은 인근 교회에서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지리산 고향뉴스, 2013.11.04., <http://www.jsghnews.com>)

### 3.1.2. 전북 진안군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진안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교육·생활인프라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민들은 공연 및 전시를 개최하거나 문화 동호회가 연습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주기를 가장 바라고 있다.
-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진안군에서도 ‘작은’ 시리즈의 시설 확충과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3-24. 진안군의 삶의 질 정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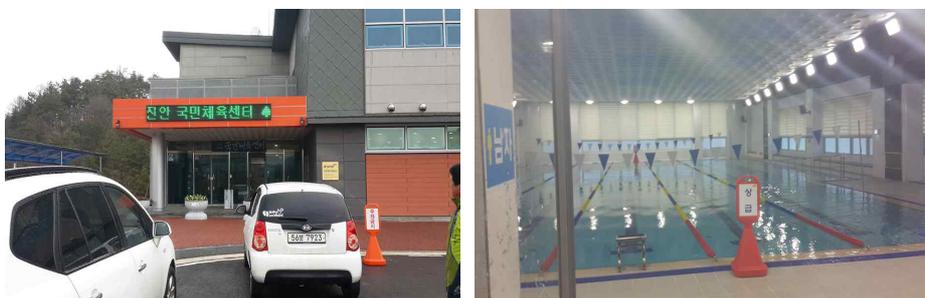
프로그램	추진경과	비고
작은 목욕탕	1개 개장 예정, 2014년 4개소 계획	이용료 2,000원으로 주민 이용
작은 영화관	스크린 2면의 작은 영화관을 2014년 초 착공 예정	건립비 약 16억 (군비 약 10억 소요)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2개, 마을 도서관 4개가 있으며 2014년 1개 계획	작은 도서관 중 흰구름 도서관에는 2층에 마을 박물관을 설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47개 동호회가 활동 중이며 문화 코디네이터 1명 지원	동호회 활동 및 발표회 경비 지원
다목적 공연장	진안 문화의 집 2,3 층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개관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자료: 진안군 문화예술 담당자 인터뷰(2013.12.09)

- 전북에서 시행하는 삶의 질 정책 외에 진안군에서는 군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센터, 문화전수관, 공방 등 다양한 시설들을 건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종합예술회관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 2013년 3월에 개장한 ‘국민체육센터’는 좋은 호응을 얻어 수영장의 예상 월 이용객 100명의 3배가 넘는 정기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 주 이용객이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다른 수영장보다 수온을 높여 유지하고 일일 이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월 5만 원의 비용으로 수영·헬스·에어로빅 등 모든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5.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입구(좌) 및 수영장(우)



- 어르신을 위한 ‘복합노인복지타운’은 진안군 어르신 2,63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노래와 춤, 마술, 운동, 건강관리 등 2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진안공공도서관은 유아 및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 책과 함께 떠나는 과학여행, 토요 도서관학교, 예쁜 손글씨, 직장인을 위한 기타 연주반, 토탈공예, 캘리그래피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전통문화 전수관은 금척무, 중평굿 전수, 민요, 판소리, 설장고, 요가, 풍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공연팀인 ‘마이골 음악회’의 공연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6.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전경(좌) 및 공연장(우)



- 옛 진안서초등학교에 설립된 ‘진안창작공예공방’은 2000년부터 폐교를 이용해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해 오다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들여 개관하였다. 예술분야 전문가 8명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약 1만여 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전통옹기, 도자기, 서각, 금각, 가죽공예, 목공예, 원예, 분재 등 8명 전문가의 공예 작업실과 전시관, 체험실, 카페 등을 갖추고 개관하였으며, 최근에는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공방의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을 통해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확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 3-7. 폐 교를 활용한 진안 창작공예공방 전경(좌) 및 청소년 체험장(우)



그림 3-8. 진안 창작공예공방 전경(좌)과 공방 내 작품 전시실(우)



- 진안군은 그동안 전문 문화공연을 열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복합문화시설인 ‘종합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진안군 공설운동장 내에 건립되는 종합예술회관은 500석 이상의 대공연장, 예총 분과별 소연습실,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관을 결합한 다목적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 진안군 종합예술회관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에 건립 계획이 있던 청소년 문화관을 종합예술회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그동안 군립 도서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군립 공공도서관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대규모 시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준공 후 차량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도울 계획이다.
- 진안군은 주민들의 문화·여가·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및 활동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족한 재정과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전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삶의 질 정책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삶의 질 정책 TF팀을 편성한 고창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보니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다양한 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전북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안군은 사업 매칭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예산 지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우며, 또한 건립 후 운영비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3.2. 민간 단체 주도의 농어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례

### 3.2.1. 경기도 광주시 퇴촌·남종 생활문화네트워크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과 남종면의 생활문화네트워크는 ‘생활문화축제로 풀어가는 퇴촌·남종 세대공감’이라는 사업 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012년에 선정되어 2013년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퇴촌면의 푸른숲학교, 도수초등학교, 광수중학교, 그리고 남종면의 분원초등학교의 학부모회 간 네트워크와 동호회 활동이 사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사업을 고민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3대가 어우러지는 마을문화만들기를 주제로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운영위원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 생활문화네트워크는 크게 축제·마을미디어사업(신문, 라디오)·마을장터·마을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각종 동호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① 지역 축제로서 퇴촌면에 토마토축제와 붕어찜 축제가 있으나 상인들을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연 2회(여름과 겨울) 축제를 기획하였다.

- 더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대규모의 축제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축제로 형식을 바꾸고 매월 장터(달팽이 마을 장터)에서는 주민 또는 학생들의 동호회 발표 행사를 하고 겨울에 모든 동호회가 모이는 축제를 만들었다.
- 2013년 여름에는 영화 전문가의 도움으로 청소년 영화제를 기획하였다. ‘내가 만드는 평화마을’이라는 주제로 초·중·고등학생들이 1~10분 내외의 짧은 영화를 제작하여 11월 1~3일 ‘퇴촌남중 청소년영화제’에서 10편을 상영하였고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평화마을을 위한 ‘평화선언문’을 만들었다.

#### ② 마을미디어사업(달팽이 신문, 달팽이 라디오)

- 2012년에 시작한 마을신문은 2013년에는 마을미디어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초기에는 사업을 알리는 홍보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기자가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짧은 글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여 신문을 만들고 있다.
- 마을 라디오인 달팽이 라디오는 학부모 중 지원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현안들과 전하고 싶은 말을 녹음하면 주민들이 모바일(팟캐스트)과 웹을 통해 들을 수 있다.

#### ③ 마을장터(달팽이 마을장터)

- 지역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규모의 장터를 기획하였고 장터에서는 한달에 한번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거나 장난감, 옷 등 중고품을 내놓는 벼룩시장이 되기도 한다.
- 마을장터는 주민들 간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도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의 동호회가 준비한 공연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④ 마을학교(어른들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달팽이 마을학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늘리고 특히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위해 의

부 강사를 초청하여 학부모 아카데미,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⑤ 동호회

- 동호회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아니나 4개 학교 학부모들이 수공예, 목공예, 술 빚기, 밴드 등의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동호회 활동이 현재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 수공예 동호회는 공방 카페를 마련하여 제작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기도 했으며, 밴드는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퇴촌·남종 생활문화네트워크는 지역의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3세대 공감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차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 생활문화네트워크의 프로그램들을 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다보니 어르신들의 참여가 부족했으나 점차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고 있으며 3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 동호회 활동, 공연, 축제 등을 위해 현재는 학교의 강당, 생협 판매장 등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 학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좀 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 퇴촌·남종 생활문화네트워크를 너른고을생협에서 분리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3년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3-9. 수공예 동호회 공방(좌)과 퇴촌 연주인 동호회 공간(우)



### 3.2.2. 원주시 문막읍 극단 노뜰의 후용공연예술센터

- 후용공연예술센터는 극단 ‘노뜰’이 2001년 폐교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후용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예술가들의 거주 및 공연 공간이다.
  - 예술가들이 농어촌에 들어가게 되면 중산층의 향유 공간으로 폐쇄적인 마을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나, 극단 노뜰은 창작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주민들 곁에서 지내기 위해 도시나 마을, 둘 다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을 찾다가 후용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 후용초등학교가 2000년 3월 폐교 후 가내수공업 공장이 들어섰던 자리에 2000년 가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 극단 ‘노뜰’은 창작 공간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작업 및 거주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후용공연예술센터는 크게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아티스트-인-레지던시)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술교육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은 연간 평균 10여 명 정도가 거주하며 짧게는 몇 주에서 7~8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며, 작품 활동 과정을 주민

들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매년 초 전세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거주신청서를 제출받아 미술, 퍼포먼스,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단기나 장기 거주를 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작가들의 창작 과정은 주민들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센터에서 하는 공연도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 정착 초기에는 대부분의 공연을 주민들이 관람하였으나, 최근 주민들은 작품 내용을 이해하고 공연에 대한 기호가 생기면서 원하는 공연을 선택해서 관람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지역 주민과의 교류는 크게 창작 공간 개방과 예술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을 볼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착 초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뜰 외에도 관련 정책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은 줄이고 주민이 창작 활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이웃 예술가’가 되고자 하고 있다.
- 좀 더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특히 해외 예술가들의 거주를 장려하여 국내외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정착한지 10여 년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스스럼없는 소통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 일례로 베트남에서 들어와 1년 동안 거주했던 퍼포먼스 예술가는 집집마다 있는 평상위에서 식사, 음주,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모든 집의 평상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 평상 위에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평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 인근 학교와 대학교 등에서는 매년 방학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숙식을 함께 하며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10. 예술가 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후용초등학교(좌)와 거주 시설(우)



그림 3-11. 후용공연예술센터 공연장(좌)과 의상·소품실(우)



- 후용공연예술센터는 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작 과정에서 주민들과 교류하는 지역의 예술단체로서 자리를 잡았으나, 활용 공간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후용초등학교는 건물이 낡아 보수가 필요해 유지·관리비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화재보험, 보증보험 등 운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소유부처인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후용공연예술센터는 초기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았으나 예술가의 창작활동보다는 주민과의 예술교육사업에 치중하게 되어, 현재는 지원 사업에 공모하지 않고 예술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주민과의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 3.3. 중간조직(지역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 기회 증진 사업 사례

- 지역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현재 광역 12개, 기초 33개 등 총 45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정책 개발, 문화·예술 진흥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나눔사업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지역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sup>35)</sup>
- 본 연구에서는 강원문화재단 사례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이 많고 문화 소외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원문화재단을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 1999년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강원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지원, 대관령국제음악제, 평창비엔날레, 강원 문화재 발굴,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35)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문화재단 45개 설립 운영 중”, 2012. 10. 11. 보도자료

- 문화·예술 진흥지원사업은 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원도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도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예술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특히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상주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하거나 창작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증진하고 여가를 즐기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또한 신진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대학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학술 연구 진흥 지원, 문화·예술 기획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원도 내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그림 3-12. 송계아트스튜디오(좌)와 태백탄광문화연구소 예술교육프로그램(우)



자료: 강원문화재단(2013)

- 강원문화예술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강원문화재단에 설치된 것으로 강원도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강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문학, 무용, 시각,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529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에 다른 지역에 비해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 한 해 동안 강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활동한 단체들은 연말 ‘강원문화예술교육 공감 마당’을 통해 다른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보이고 자신들의 공연을 만드는 기회를 갖고 있다.

표 3-25. 2013년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현황

단위: 건

	전문예술	생활예술	문화·예술	계
무용	12	1	2	15
문학	61	19	10	90
음악	21	22	27	70
연극	35	5	6	46
연예	12	16	0	28
시각예술	53	25	22	100
전통예술	35	16	17	68
다원예술	18	3	2	23
국제교류	31	1	0	32
지원예술	40	10	5	55
문화사업	0	0	2	2
합계	318	118	93	529

자료: 강원문화재단(2013)

그림 3-13. 군 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좌)과 강원문화예술교육 공감마당(우)



자료: 강원문화재단(2013)

- 강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중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기금에 의해 운용되는 한계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를 갖고 있다.
  -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도는 문화·예술 취약지역과 계층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충분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4. 문화 부문 심층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3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문화 부문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정책적 의의를 고찰하고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기준의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문화 부문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욕구와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서(도서관)와 문화 프로그램의 향유 빈도와 접근성에 대한 기준에는 대체로 현재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문공연 프로그램의 향유 기회에 대한 서비스기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 지난 3년 간 농어촌의 문화 부문 서비스는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아직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횟수는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필요한 지원에 대해 주민들은 관람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응답한 데 비해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등 콘텐츠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중간조직을 활용한 민간 예술단체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전북은 문화와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을 주민을 위한 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북 내 진안군을 비롯한 시·군에서는 매칭 예산 및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기도 광주시의 퇴촌·남종 생활문화네트워크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후용공연예술센터는 학교 또는 민간예술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사례이나 아직까지 민간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주민과 민간예술단체의 활동으로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중간조직으로서 광역 문화재단들은 정책 사업들의 수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데는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단, 행정구역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에서 대규모 시설의 공급은 주민들의 이용이 낮아 비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북의 ‘작은’ 시리즈와 같이 다수의 소규모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바람직하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문예회관과 공공박물관·미술관 등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서는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국비 또는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매칭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 시설 공급을 위해 신축보다 유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시설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마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담당 인력의 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문화·예술 분야 담당인력을 활용하다보니 업무 가중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제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또는 신설하여 담당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농어촌 순회공연의 증가로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나 문화 역량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물론,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의 이주·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중앙부처의 사업들은 전문인력 및 단체들이 순회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많은 농어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예술단체를 유치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술인의 거주를 돕는 이른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1년 내외의 단기 거주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 예술인 및 예술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정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 4 장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및 정책 수요

#### 1. 조사 및 분석 개요<sup>36)</sup>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서비스기준 팀은 동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관련 조사를 실시해 왔다.
  - 2011년에는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2011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31개 항목 반영 현황 분석, ‘제2기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현황 분석 등을 실시했다.
  - 2012년에는 농어촌 시·군의 기획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및 현장 적합성을 조사하고, 농어촌 주민 622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중요도, 향후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 2013년에는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36)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현황과 특성은 2013년 조사의 경우 제3장의 <표 3-2> 및 <표 3-3> 참조. 2012년 조사의 경우 해당연도 보고서 참조.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년 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실태와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sup>37)</sup>
  - 주로 지난 몇 년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이슈로 정리하여 농어촌 주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 조사 방법은 주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지역 현장조사 및 공무원 의견 청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문헌검토 등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실태 및 성과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제시하였다.
  - 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 평가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평가
  - ③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가능성 평가
  - ④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삶의 질 향상 만족도 평가
  - ⑤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주민 수요
  - 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적 요소 평가와 정책 수요

---

37)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장기 방향 제시는 제5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실태와 성과 평가

### 2.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 평가<sup>38)</sup>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 시 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해당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다.
  - 동법 제5조 제1항 제10호는 5년마다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시 모두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 중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발전역량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 즉 보건·복지, 교육, 기초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과 관련된다(김광선 등, 2011).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넓은 의미로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와 농어촌 지역사회개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5개 부문은 농어촌 지역사회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발전역량 부문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된다.

38) 김광선 등, 20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음.

- 지역발전역량 부문이 지역사회 영역과 관련되고,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이 시장(민간영리부문)영역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반면,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연계될 수 있는 보건·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문화·여가, 환경·경관 부문은 사회서비스 영역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광선 등, 2011).
- 위와 같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목표가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133개 세부추진과제 중 보건·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5개 부문의 세부추진과제의 사업내용이나 성과목표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실제 반영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된 2011년도의 31개 기준항목 중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로 직접 반영된 것은 5개 항목에 불과하며,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14개 기준항목에 그쳤다.
  - 나머지 7개 기준항목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반영된 정도를 보아도 이와 같은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011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125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31개 기준항목 중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세부추진과제로 직접 반영된 것은 4개 항목에 불과하며,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17개 기준항목에 그쳤다.
  - 나머지 5개 기준항목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보다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상대적으로 더 포함되어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 삶의 질 향상 지자체 계획 역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영하여 세부추진과제의 내용이나 성과목표를 설정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을 분석한 화천군의 경우 2011년의 31개 기준항목 중 20개 기준항목이 군 삶의 질 향상계획의 세부추진과제에 직·간접적으로 담겨 있는 반면, 장흥군의 경우는 이와 같은 기준항목이 13개 항목에 불과하여 지자체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한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 광역 지자체의 경우 우수계획 지자체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삶의 질 향상계획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계획 세부추진과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준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달성목표를 조정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 세부추진과제의 성과목표로 설정한 계획수립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 이처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규정대로 삶의 질 향상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반영된 비중은 중앙정부 차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평가

- 농어촌 시·군의 기획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세부기준)이 해당 시·군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적절한지,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각 기준항목에 대한 현장 적합성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농어촌에 적합하다고 평가된(평가 점수 8점 이상) 기준 항목(세부기준)은 주거 부문의 공동시설(운영비 지원)과 상수도(지자체 수질관리), 교육 부

문의 고등학교(우수고교 육성), 복지 부문의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주 1회 이상), 보건의료 부문의 진료서비스(주요 과목 1차 진료)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도농복합시에서는 면지역 상수도 보급(주거), 폐교 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교육),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 설치(교육),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보건의료), 의약품 구입(보건의료)이 8점 이상의 현장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 반면, 현장 적합성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세부기준)은 여객선(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과 여객선(도서주민 운임 지원), 난방(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난방(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도서·벽지 응급(환자이송체계)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구분	매우 적합(8점 이상)	매우 부적합(6점 미만)
현장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li> <li>▪ 상수도: 지자체 수질관리</li> <li>▪ 고등학교: 우수고교 육성</li> <li>▪ 진료서비스: 1차 진료 가능</li> <li>▪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li> <li>▪ 상수도: 면부 상수도 보급(시)</li> <li>▪ 폐교: 폐교시 주민의견 수렴(시)</li> <li>▪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시)</li> <li>▪ 순회방문: 월 1회 순회방문(시)</li> <li>▪ 의약품구매: 20분 내 구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읍부 도시가스 보급</li> <li>▪ 난방: 신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li> <li>▪ 여객선: 1일 1회 이상 왕복 운행</li> <li>▪ 여객선: 도서주민 운임 지원</li> <li>▪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li> <li>▪ 대중교통: 준공공 교통프로그램(군)</li> </ul>

주: (시)는 도농복합시에만, (군)은 군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괄호가 없는 항목은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의미.

자료: 김광선 등, 2012.

- 현장 적합성 평가 결과는 시·도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주도의 경우 난방(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정책) 항목만이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전체 제시된 42개 항목 중 절반이 넘는 26개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강원도의 경우 도내 농어촌 시·군들이 재정이나 서비스인력 등의 부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각 군의 특성이 워낙 달라 비교적 다양한 항목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타났다.

### 2.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가능성 평가

- 앞서 언급한 138개 농어촌 시·군 기획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시·군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목표치를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료 시기인 2014년까지 달성 가능한지를 ‘달성 가능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에서 공통적으로 공동시설(운영비 지원), 상수도(지자체 수질 관리) 두 항목만이 8점 이상을 받아 달성 가능성이 높을 뿐 대부분의 기준 항목이 2014년까지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 다만, 군 지역과 달리 도농복합시의 경우 상기 두 항목 외에도 주택, 공동시설(상설프로그램 운영), 상수도(면지역 보급), 하수도, 고등학교, 노인, 영유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항목에서도 8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 군 지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도농복합시와 군 공통으로 6점 미만의 낮은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가 도출된 항목은 여객선, 난방, 도서·벽지 응급(환자이송체계), 대중교통(준공 교통 프로그램) 등으로, 이는 현장 적합성 평가 시 낮게 평가된 항목과 거의 일치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에 대한 시·도별 평가 역시 큰 차이를 보여, 제주도의 경우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기준항목이 전무한 반면, 강원

도 내 시·군들의 경우 제시된 42개 세부기준 중 27개 세부기준에 대해 달성 가능성을 6점 미만으로 평가하였다.

표 4-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

구분	달성 가능(8점 이상)	달성 어려움(6점 미만)
달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li> <li>▪ 상수도: 지자체 수질관리</li> <li>▪ 주택: 최저주거기준(시)</li> <li>▪ 공동시설: 프로그램운영(시)</li> <li>▪ 상수도: 면부 상수도보급(시)</li> <li>▪ 하수도보급(시)</li> <li>▪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서비스(시)</li> <li>▪ 고등학교: 우수고교 육성(시)</li> <li>▪ 영유아: 20분 내 보육시설(시)</li> <li>▪ 문화시설: 월 1회 이상 관람(시)</li> <li>▪ 문화시설: 분기 1회 전문공연(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읍부 도시가스 보급</li> <li>▪ 난방: 신재생에너지 등 난방비 저감</li> <li>▪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li> </ul>

주: (시)는 도농복합시에만, (군)은 군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괄호가 없는 항목은 두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의미.

자료: 김광선 등, 2012.

##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체감도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공급에서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증대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으로의 전환이다.

- 이러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이라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3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각 기준항목별로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관련 서비스의 개선 또는 악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 과거 3년 전과 비교해 기준 항목별 서비스 개선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대중교통’이며, 반대로 가장 악화된 항목은 ‘난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개선 정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대중교통에 이어 초고속망, 독서, 방과후학교, 인도,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응급서비스, 유치원·초·중학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이 개선 정도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
  - 서비스가 오히려 악화된 항목으로는 난방 외에도 경찰 순찰, 방범설비, 순회방문, 폐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경찰 출동, 다문화가족, 인도,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항목이 악화 정도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
  - 인도(人道) 항목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이 높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등 응답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주로 주거, 교통, 문화 부문에서 주민들의 서비스 개선 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체감이 높은 반면, 안전 부문의 항목은 대부분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시행 직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정도, 즉 정책 효과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모든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서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악화되었다는 응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개선’ 응답 비중이 50%를 넘는 기준 항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즉 대부분의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이행 직전이나 지금이나 관련 서비스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체감하고 있다.

표 4-3. 농어촌 주민들의 과거 3년 전과 비교한 기준항목별 개선 체감도 평가

단위: %, 순위

부문	항목	악화	비슷	개선	악화 순위	개선 순위
주거	주택	6.6	64.0	29.4	31	19
	난방	18.3	49.6	32.1	<b>1</b>	17
	마을공동시설	8.6	51.4	40.0	21	<b>6</b>
	상수도	8.9	51.7	39.4	16	<b>7</b>
	하수도	8.3	58.7	33.0	23	14
교통	대중교통	9.3	45.6	45.1	15	<b>1</b>
	여객선	8.6	63.4	28.0	20	21
	인도	10.4	49.1	40.4	<b>9</b>	<b>5</b>
교육	유치원·초등학교	8.6	53.3	38.1	22	<b>9</b>
	고등학교	8.1	61.4	30.4	24	18
	폐교	13.3	65.4	21.3	<b>5</b>	31
	방과후 학교	6.1	52.6	41.3	32	<b>4</b>
	의견수렴	7.9	62.9	29.3	25	20
	평생교육	8.7	56.7	34.6	18	12
보건의료	진료 서비스	10.1	62.0	27.9	12	22
	순회방문	13.7	67.0	19.3	<b>4</b>	32
	의약품 구입	6.9	60.1	33.0	30	15
복지	노인	7.9	59.7	32.4	26	16
	청소년	9.9	65.0	25.1	14	27
	아동	10.3	64.0	25.7	11	25
	영유아	6.9	59.0	34.1	29	13
	다문화 가족	10.7	62.6	26.7	<b>8</b>	23
응급	응급서비스	7.6	54.1	38.3	27	<b>8</b>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10.4	64.0	25.6	<b>10</b>	26
안전	경찰 순찰	14.7	61.0	24.3	<b>2</b>	29
	방법설비	14.3	50.3	35.4	<b>3</b>	11
	경찰 출동	11.9	64.9	23.3	<b>7</b>	30
	소방 출동	8.9	66.3	24.9	17	28
문화	독서	8.7	49.6	41.7	19	<b>3</b>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1	53.0	36.9	13	<b>10</b>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13.1	60.6	26.3	<b>6</b>	24
정보통신	초고속망	7.6	49.4	43.0	28	<b>2</b>

주: '개선'은 3년 전에 비해 '매우 개선되었다'와 '다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합한 응답 비중이며, '악화'는 '매우 악화되었다'와 '다소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합한 응답 비중임.

- 전문가들 역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후 3년이 지난 현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6.7%가 ‘향상된 편이다’고 응답하였지만,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응답 역시 40.0%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로 인한 정책 효과가 아직 크지 않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 동 질문에 ‘매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 그러나 기준 항목별로 과거 3년 전과 비교 시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농어촌 주민들과 매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즉,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상위 10개 기준 항목 중 주민들은 반대로 20위 이하로 평가한 항목이 6개나 포함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상수도, 방법설비, 하수도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후 3년 정도가 지났지만 정책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 제2장의 <표 2-6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7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지난 3년 간 이행실태(목표달성 정도)가 향상된 항목이 21개 항목에 달하지만, 그 향상 정도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 정도나 삶의 질 향상 정도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응답 비중이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중보다 농어촌 주민과 전문가들에게 있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체계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체계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동 제도를 시행한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요 이슈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주로 ‘기준 항목의 적절성’, ‘제도 운영 주체의 정책적 추진 의지’, ‘관련 계획과의 연계’, ‘이행실태 점검·평가와 활용 문제’, ‘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동 제도 운영체계를 평가하였다.
  - 평가 방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표 4-4>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를 조사하는 방식을 따랐다.
  - 기타 ‘예산’, ‘추진조직’, ‘기준 운용 방향’, ‘정부조직의 기준 이행 촉진 방안’ 등과 관련된 이슈는 이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정책 수요에서 다루었다.

표 4-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

단위: %

주요 이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여러 목표치가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3.3	30.0	26.7	40.0	0.0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이 너무 많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3.3	20.0	26.7	43.3	6.7
관련 중앙 부처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3.3	10.0	13.3	43.3	30.0
각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0.0	26.7	10.0	40.0	23.3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과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0.0	13.3	30.0	36.7	20.0

주요 이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 겠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0.0	3.3	3.3	46.7	46.7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0.0	3.3	6.7	50.0	40.0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다수 항목이 공식 통계 부재 등으로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가 곤란하다.	3.3	0.0	26.7	46.7	23.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	3.3	3.3	26.7	53.3	13.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대 국민 또는 농어촌주민 홍보가 부족하다.	3.3	0.0	20.0	50.0	26.7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부재하다.	0.0	6.7	26.7	46.7	20.0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여러 목표치가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슈에는 동의하는 의견의 비중이 40.0%로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의견 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의 비중(33.3%)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앞서 제시하였듯이 일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현장 적합성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 조사에 응한 전문가 중 50.0%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이 너무 많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있다.
  -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을 되도록 많이 제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러한 공공서비스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국가적 최소 기준으로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 정부 예산이나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수많은 항목으로 구성

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모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인구 규모도 작고 재정 자립도도 낮은 낙후지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
  - 관련 정부 부처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73.3%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63.3%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부문·항목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매년 점검하여 결과를 관계 부처에 배포하여 왔지만 이행실태가 저조한 기준 항목이나 지역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별도의 정책사업이 관계 부처로부터 발굴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청남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배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과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이 제대로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56.7%에 이르고 있다.
  - 이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삶의 질 향상계획 내용 분석 결과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지자체 계획의 세부추진과제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성과지표나 계획내용에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연계·협력과 중앙-지방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는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93.4%에 달하며, 중앙-지방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90.0%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 중앙정부로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 지자체로서는 중앙정부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만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예산, 조직 등) 제공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할 뿐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다수 항목이 공식통계의 부재 등으로 이행실태(달성 정도) 점점 자체가 곤란하다는 의견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 또한 점점 결과에 대한 활용 부족에 대해서도 약 67.0%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또는 농어촌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6.7%의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 조사에 응한 30명의 전문가 중 19명(63.3%)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10명(33.3%)은 시행 목적과 내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주민 대상 조사에 응한 700명의 농어촌 주민 중 44.7%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22.7%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결국 국민 중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할 농어촌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끝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부재하다는 의견에도 66.7%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 이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궁극적으로 달성 또는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중·장기 운영 방안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 3. 농어촌 주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관련 정책 수요

#### 3.1. 공공서비스 관련 농어촌 주민의 애로점과 수요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주민의 비중이 18.7%에 불과한 가운데, 주택의 세부사항 중에서는 난방시설, 지붕·외벽, 목욕시설 등의 순으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주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난방과 관련해 현재 사용하는 난방시설이 기름보일러라고 응답한 비중이 49.1%로 거의 절반에 가까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난방시설이 27.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반면 농어촌 주민들이 희망하는 난방시설은 태양열 난방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가스가 23.4%, 기름·화목겸용 보일러가 15.8%로 뒤를 잇고 있다.
-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수질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주민의 비중이 28.4%에 이르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광역 및 지방 상수도를 마신다는 농어촌 주민의 응답 비중이 42.7%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버스 운행 횟수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라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 1일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행정리)의 비중이 90.4%에 이르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른 최소 대중교통 운행 횟수에 대해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인도(보도) 설치와 도로의 포장·정비,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농어촌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비중은 22.8%에 불과한 가운데, 교육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너무 먼 통학거리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교사의 전문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교육 기회 등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주민의 비중이 높다.
- 한편,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이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로 수정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농어촌 특성을 살린 전원학교’라는 응답 비중이 38.6%로 가장 높았다.
- ‘특기·적성과목에 특화된 학교’(25.6%), ‘인성개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13.4%)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반면 ‘소규모 학교가 통합된 학교’라는 응답 비중은 3.4%에 불과했으며, ‘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과 과목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라는 응답의 비중도 10.6%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에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특기·적성과목에 특화된 교육’(42.1%), ‘농어촌 특성을 살린 전원학교’(26.7%), ‘우수한 교사’(25.7%) ‘인성개발 위주의 교육’(20.1%)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 반면 ‘기숙사와 같은 학생 생활시설’(15.9%), ‘도시 수준의 교과 과목 수업’(13.3%), ‘자율형 공립 고교화 추진’(10.4%)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 병원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비중은 18.1%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이 병원 이용 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의료인력의 질, 낙후된 의료시설, 의료기관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중해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층이라는 응답 비중이 43.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영유아 및 아동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하나인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큰 불만사항은 적은 지원금 또는 높은 자부담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 노인 복지서비스의 한정된 지원 대상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 응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주민 비중이 25.7%로 나타난 가운데, 구급차의 지연 도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센터가 없다는 불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소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27.7%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불만으로는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의 부족, 두 번째는 소방차의 지연 도착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차의 출동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나 소화기의 설치를 원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 범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 농어촌 주민의 59.3%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최근 농어촌 지역에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 대상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난 1년 간 도난이나 대인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9.7%에 이르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중요성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은 주택의 질(최저 주거기준), 난방비, 위험도로 구간에 인도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순으로 향후 가장 중요한 기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 특히 군 지역의 주민들은 도농복합시 주민들과 달리 주택의 질(최저주거 기준)을 향후 가장 중요한 기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6.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구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군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도농 복합시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체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공동 5위)

자료: 김광선 등, 2012.

-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인·구직서비스’(26.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는 경제활동 다각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에 이제 일자리 관련 서비스가 새로운 공공서비스로서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외에 ‘법률상담 서비스’(15.1%)도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금융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등도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 3.2.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정책 수요

- 국민으로서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할 최소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전문가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에 최소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의견이 43.3%로 나타났다.
  - 그 뒤를 이어 ‘공공서비스 공급의 도·농간 격차(지역 간 차이) 해소’가 높은 응답 비중(23.3%)을 보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할 최소 이상의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은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달성’과 같이 중기적으로(5년 간) 달성해야 할 수치화된 관련 부처의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에 앞서 ‘모든 농어촌 주민에 안전한 마실 물 공급’과 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의 기준으로도 함께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가 조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도 함께 제시하며(이상 중앙정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발전목표나 지역 현실을 감안한 5년 중기목표로 (시·군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에) 함께 제시하는 3 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53.3%로 가장 높았다.
  -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도 함께 제시하는 2 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30.0%로 나타났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 또는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부처별로 향후 5년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각

기준 항목별로 동 기본계획에 담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총리실에)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전문가 조사 결과 40.0% 선택).

- 이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익년도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삶의 질 향상 시행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총리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연계 방안이 될 수 있다(전문가 조사 결과 36.7% 선택).

- 현재 지자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별도 예산 지원없이 권고사항으로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보다는 직접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4-7.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별도 재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주요 이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이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	3.3	13.3	16.7	40.0	26.7
이미 삶의 질 향상 대책 예산에 포함되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26.7	36.7	20.0	13.3	3.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의 지원보다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	30.0	30.0	13.3	16.7

- 농어촌에 속한 지역일지라도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적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도

- 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의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는 90.0%에 이르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현되는 농어촌 현장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문가 조사 결과 53.3% 선택).
- 이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다양한 실·과·소의 업무와 연관되므로 기획·예산 담당 부서가 이들의 관련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제 5 장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 과제 발굴

#### 1. 농어촌서비스기준 중·장기 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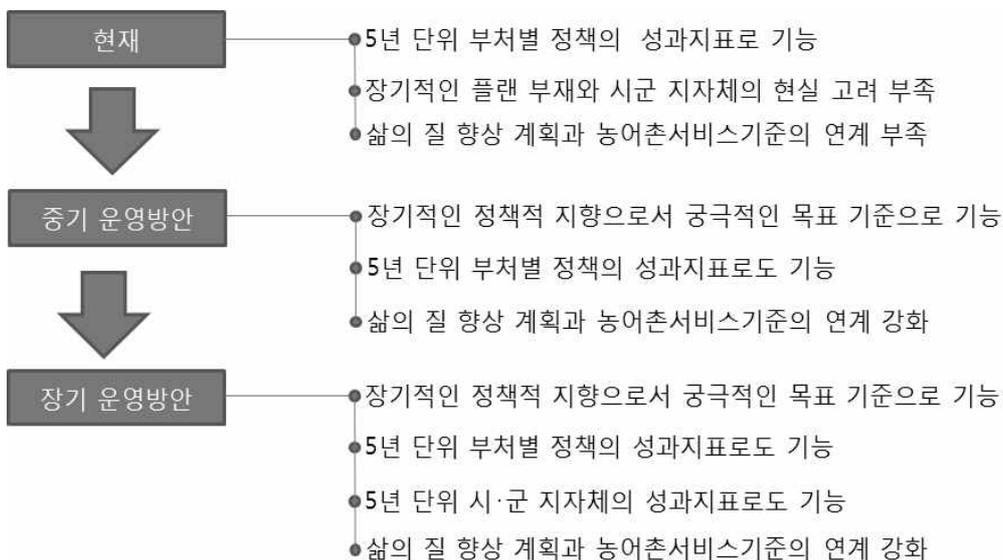
#####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책적 기능 정립

-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제4장에서 제시하였듯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농어촌 주민에 최소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공공서비스 공급의 도·농간(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이 현재와 같이 ‘삶의 질 향상 계획 주기(5년)’에 따라 항목별 관계 부처에서 달성해야 할 중기 정책의 성과지표로 기능해야 하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적 지향성만을 지닌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 기능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관계 부처의 중기 정책의 성과지표로 기능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1일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다'로 설정되겠지만, 장기적인 정책적 지향성만을 지닌 궁극적 목표 기준으로 기능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앞서 제시하였듯이 전문가들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두 가지 기능 모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지향성만을 지닌 궁극적 목표 기준으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운영하고, 각 부처에서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을 활용하여 궁극적 목표 기준으로서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2 Track 접근).
- 그러나 전문가 조사 결과로 제시되었듯이 장기적으로는 위의 2 Track 접근에 더해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지역 발전 목표나 지역 현실을 감안한 5년 중기 성과지표로서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을 시·군 삶의 질 향상 계획에 적시하도록 하는 3 Track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5-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 방안



## 1.2.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연계 강화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근거법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자체 계획’ 수립 시 기준 이행 촉진에 대한 내용을 이들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제2기 삶의 질 향상 계획(2010~14)이 시작된 지 1년 뒤인 2011년에 시행된 이유로 각 계획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에 더해 관계부처의 관심 부족으로 매년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 시행 계획’에도 동 기준의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 김광선 등(2011)의 분석에 의하면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133개 세부추진사업 중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5개, 부분적으로 포함된 항목은 5개, 세부추진사업의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14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개 항목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이러한 실정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나 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지자체 계획의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고려되지 못한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관련 세부추진사업의 목표(계획지표)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목표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계획 수립·시행 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세부추진사업 목표 또는 지표가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목표를 반영하도록 동 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관계 부처에서는 당해 연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익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이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총리실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A부처와 관련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가 저조할 경우, A부처는 익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세부추진사업의 계획 내용에 동 기준 항목의 이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총리실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하여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특히, 농어촌 전체적으로는 이행실태가 양호한 기준 항목일지라도 일부 지역에서의 이행실태가 극히 저조한 상태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 부족 등을 감안하면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5년) 수립 시 모든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이행 촉진 방안을 해당 계획에 담아 실천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현황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삶의 질 향상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 선정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 이전에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그림 5-1>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장기 운영방안’에서 지적하였듯이 동 제도의 운영을 3 Track으로 접근하여 시·군에서도 국가적 기준을 포함한 자율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 방안을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사업 정비

- 현재 지자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목표달성)에 관심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기준의 이행 촉진 실천을 위한 별도의 사업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 역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전문가 응답: 매우 동의 28.6%, 대체로 동의 35.7%, 중간·유보 17.9%, 대체로 반대 14.3%, 매우 반대 3.6%
- 그러나 예산 규모가 제한된 정부로서는 일시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관련 사업예산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대한 첫 번째 대안으로는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의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기초인프라 조성’,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단일 지자체 단위의 사업 추진 시 유용할 수 있다.
  - 두 번째 대안으로는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같이 인근 지자체 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추진 시 유용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포괄보조사업으로 ‘(가칭)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별도의 예산을 통해 지자체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사업 및 예산을 함께 연계하여 추진·집행하는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앞서 <그림 5-1>에서 제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장기운영방안과 연계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조직 정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처 간 정책 연계·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의 격상과 부처 간 정책 조정기능 강화
  -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 기능 강화: 관련 부처 실무 공무원이 파견·근무하는 통합 사무실 설치·운영 및 (타 기관 업무위탁이 아닌) 사무국 운영하의 별도 전문지원기관 설치·운영
    - \*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정책,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 업무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기획·예산 담당 부서 내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
  - 광역자치단체(도)에서는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 정책과’와 같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담당 부서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계’ 또는 삶의 질 향상 정책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정, 시·군정 차원에서 지자체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sup>39)</sup>

39) 지자체 수준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 조직 마련에 대한 전문가 응답.

→ ‘다양한 실·과·소의 업무가 연관되므로 기획·예산 담당 부서가 농어촌서비스기

## 1.5.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축소와 목표 수정

- 지자체 조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기준 항목의 경우 축소 또는 달성목표 수정이 필요하다.
  -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준 항목으로는 도서지역이나 오·벽지 등 전체 농어촌이 아닌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과감히 국가 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 그런 후 <그림 5-1>에 제시된 장기 운영방안의 틀 내에서 장기적인 정책적 지향인 목표기준으로 기능하는 국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별도로 해당 지역의 자율적 시·군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제정·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미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목표 달성에 근접한 항목의 경우 제3기 삶의 질 향상 계획기간에 운용될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외하거나 달성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목표 달성이 매우 저조한 항목의 달성목표치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012년도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기 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개 항목
    - \* 하수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 경찰 출동 항목은 달성률이 100%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검통계의 한계상 실제와 차이가 예상된다.
  - 목표치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7개 항목
    - \* 주택, 여객선, 의약품구입, 청소년, 아동, 다문화가족, 소방 출동
  - 목표치 달성이 저조한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항목
    - \*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노인, 영유아, 방법설비, 독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준 운영 업무를 전담해야 함' 의견에 53.6%,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위해 농정 담당 부서에서 전담해야 함' 의견에 25.0% 응답.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통계의 구득이 곤란한 항목의 경우 향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과감히 제외시키거나 객관적 지표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준의 세부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표 5-1>과 같은 관계 부처의 내부자료 협조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항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 경찰 출동의 경우 ‘코드 1’으로 구분되는 긴급상황에 대한 출동 건별 도착시간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경찰청에서는 출동 건별 자료가 아닌 시·군별 평균 출동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준항목의 이행실태가 항상 100%로 나타나고 있다.
  - 경찰 순찰의 경우 살인(미수 포함),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과 같은 5대 강력범죄가 최근 1년 간 1회 이상 발생했거나 또는 최근 5년 간 3회 이상 발생했던 범죄취약(행정리)에 대한 경찰의 순찰 실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지만 현재 관련 자료가 없으며, 이후에도 이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 방범설비 항목의 경우 마을별 방범용 CCTV설치 현황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관리가 경찰청과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어 정확한 이행실태 점검이 어렵다. 특히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구득하는 CCTV 설치현황 자료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의 경우 지방문화원의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개최 현황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제공받고 있지만, 각 지방문화원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공연 개최 실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료 누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40) 해당 자료 요청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모든 행정리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에 답변하였음.

표 5-1.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한 점검통계 구축 논의 사항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자료 협조 시 논의 사항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군별 각 건에 대한 도착소요시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경찰청은 시·군별 평균도착소요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함.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현재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미구축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서 목적별 CCTV 현황 및 설치 주소 자료가 있으나, 최신화되지 않아 부정확함. - 경찰청에서는 CCTV를 운영만 할 뿐, 설치와 관리의 책임이 타부처와 지자체에 있어 일괄적인 제공이 어려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지방 문화원의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주관 현황을 파악하는데, 누락된 사항이 많음 - 자료 구축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행정계통을 통한 협조 요청이 필요함.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한 이행실태 점검통계 구축 시에도 마을 공동시설, 인도, 순회방문,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의 기준 항목에 있어 <표 5-2>와 같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나타났다.

표 5-2.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한 점검통계 구축 논의 사항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행정조사 시 논의 사항
마을 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주어진 시설에 대한 지원 행정리 수가 아닌, 두 시설 수의 합을 기록하는 문제 발생. 결과적으로 총 행정리 수보다 큰 값이 나옴 -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략적인 수치 입력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동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소재지로의 도로 파악 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한 개의 도로가 2개 도로가 될 수 있음. -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담당자가 관련 자료 없이 대략적인 수치를 입력하는 문제 발생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행정조사 시 논의 사항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 행정조사 시 의료 취약마을에 대한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응답하는 경우 발생 - 의료진 순회방문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 발생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 관련 담당자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 최근 찾아가는 서비스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다수 이루어지는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관련 사항을 알기는 어려움.

## 2. 정책 개선 과제 발굴

### 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 도입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 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 낙후된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한정된 예산 규모로 인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이행지수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동 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하는 대상 지역을 의미한다.

- 이들 대상 시·군은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향후 5년 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 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을 선정하여 별도의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기간에는 일부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은, 영국의 지방 공공서비스 협약제도(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면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제4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부터 (가칭)‘삶의 질 향상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도입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에 포괄보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2. 관계 부처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5년) 동안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경우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 동안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1일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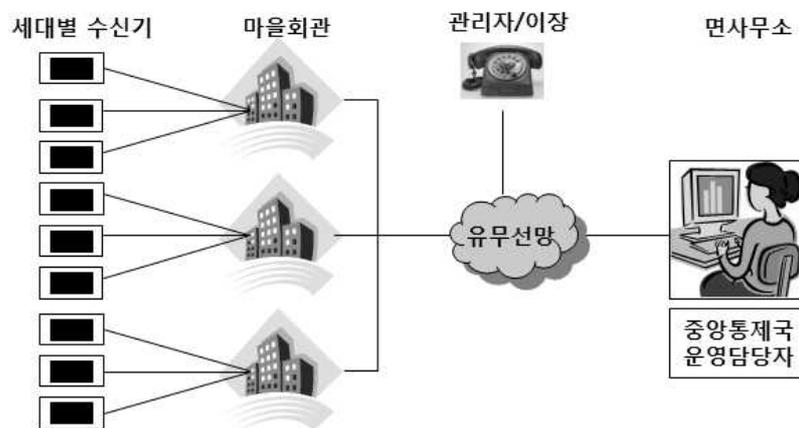
- 이를 위해서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부처별 중기 특화사업을 명시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 또한 매년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도 부처 별 중기 특화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2.3.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국가적 최소 서비스기준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으로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계획·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농어촌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례는 국내에서도 일부 모범 사례가 발굴되고 있는데, 먼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의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활용의 사례를 들 수 있다.
  - 석문면의 경우 주민숙원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0개 마을, 2012년 9개 마을 등 총 19개 마을 2,500여 세대에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 가정에 화재 발생, 응급환자 발생, 범죄피해 발생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선 수신기에 달린 비상줄을 당기면 해당 세대 주민의 이름이 들어간 ‘□□□ 긴급호출’이라는 소리음이 1분 간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석문면은 산불예방정보, 농사정보, 시정정보, 기상정보 등을 개별 가정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재난·재해 예방, 범죄 피해 감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석문면의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은 세대별로 약 19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그림 5-2. 당진시 석문면의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진료소 사업도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광암보건진료소 및 사창보건진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 소장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인 ‘마을건강원’을 주민들의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례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이를 통해 다양한 보건진료소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예방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었다.

## 2.4.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 방안 발굴

- 농어촌은 인구 과소화, 고령화 등의 특성과 함께 서비스 공급 중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서비스 공급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난방 항목의 경우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50%’ 기준은 면부 주민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실상 인구가 분산분포하는 면부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오지마을의 경우는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1일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기준 역시 달성하기 수월하지 않다.
  - 5분 대응론이나 8분 대응론이 있을 정도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화재진압의 경우도 오지 마을의 경우 ‘화재 신고 직후 5분 내 소방차 현장 도착’ 기준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난방’ 항목의 경우 특히 면부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태양열’이나 ‘화목 겸용 보일러’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읍부 도시가스 보급과 더불어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실제 농어촌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농어촌 주민들이 희망하는 난방형태는 태양열 보일러가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가스와 화목 겸용 보일러가 선호되고 있다.
- 대중교통 항목의 경우도 농어촌 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공급은 농어촌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는 대량수송(mass transit)으로서의 대중교통보다는 공공교통(public transportation)으로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방식과 이에 맞는 차량 운영이 필요하다.

- ‘소방 출동’ 항목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소방차의 출동만을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 목표로 삼기보다는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 설치 및 이의 사용 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읍·면별 의용소방대 조직을 정비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 농어촌 주민들 역시 화재 발생 시 소방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 부족을 지적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충청남도의 경우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차 출동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유인도서 마을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부록 1

###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문별·부처별 사업 예산

#### (1) 주거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00,000	500,000
			영세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개선 (농어촌집고쳐주기사업)	1,700	1,750
		환경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14,500	48,000
		보건 복지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3,800	3,800
		국토 교통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30,000	종료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산림청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9,610	20,610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5,000	2,500
		산업통상 자원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4,290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43,500	42,900
			도시가스보급 배관사업	62,000	62,000
마을 공동 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림축산 식품부	지역개발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사업(문화이모작)	240	400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42,437	343,778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50,482	36,116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71,266	72,500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환경부	농어촌지역 하수도설치	386,326	490,904

## (2) 교통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강화 (벽지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금 보전 및 공영버스 일부 구입 비용 지원)	80,401	87,695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	내항여객선운임보조	17,404	18,030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안전행정부	농어촌도로정비	12,106	14,504

## (3) 교육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교육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14,260	13,370
		지자체	무료통학버스 지원	52,162	63,598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교육부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21,325	16,000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	-	-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교육부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84,527	73,74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2,500	2,500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자체	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 27조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 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교육부	학교 평생학습관 지정 및 학부모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155	228

## (4) 보건의료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 복지부	공공보건기관기반확충(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7,717	89,083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육성	89,070	113,67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4,400	7,900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확보(공중보건의 우선배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순회 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8,725	7,002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장이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8호	

## (5) 복지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487,875	541,210
			노인돌봄서비스(종합서비스)	102,733	118,162
			노인요양시설확충(종합재가기관)	49,684 782	52,175 4,806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 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여성 가족부	청소년시설확충(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등)	40,348	49,168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6,729	90,526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506	4,902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	910	6,452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60,106	64,649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	6,330	9,220
		농림축산 식품부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 이민여성 농업인 1:1맞춤 농업교육	750 426	900 426

## (6) 응급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 처치를 한다.	보건 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역센터 및 기관 지원)	22,122	19,908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3,569	1,895
도서 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 한다.	보건 복지부	응급환자 항공(헬기)이송 지원사업	5,400	8,400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지원	5,630	2,500
		소방 방재청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보강		10,000

## (7) 안전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소방 방재청	노후소방차 교체예산	69,977 (2011년)	90,704 (2012년)
			의용소방대활성화	226	326
			소방정보시스템구축	3,737	4,439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 한다.	경찰청	지역 여건에 따라 순찰팀의 순찰횟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결정할 수 있음	경찰청훈령 제581호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방법 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경찰청	이동형 CCTV 설치사업	-	8,838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경찰청	경찰기동력 강화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55,892	61,290
			112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완료	39,331	15,094
			112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콜백시스템 구축사업 (2013.9.6. 사업발주)	-	1,360

## (8) 문화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체육 관광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10,281	15,636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1,830	1,473
			찾아가는 도서관	747	733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	농촌지역 문화공연 실시	680	680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3,750	3,750
			어르신문화학교	1,520	1,666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203	219
			문화동아리	98	120
			어르신 문화축제	142	210
			신바람놀이 문화 프로그램	387	600
		미래창조 과학부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9,500	3,672
찾아 가는 문화 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	방방곡곡 문화예술지원	3,035	2,883
			모셔오는 박물관	179	119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80	85
			어르신 및 전문강사 파견 프로그램	365	420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운영	617	650
			문화바우처사업	48,700	49,346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1,200	1,180
			문화관광축제육성	13,400	13,400

## (9) 정보통신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주관 부처 및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2년	2013년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방송통신 위원회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12,435	12,735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정보이용활성화	9,494	8,100
		안전행정부	정보화마을조성및활성화	7,497	7,497

## 부록 2

###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 점검 결과

#### 1. 주거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96.5	60.6	88.3	38/138	27.5	
난방	읍 도시가스 보급률	97.7	0.0	47.9	32/135	23.7	3(읍 無)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	21.8	0.4	2.9	138/138	100.0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100.0	0.0	95.0	64/138	46.4	
	프로그램 지원	100.0	0.0	40.4	19/138	13.8	
상수도	면 상수도 보급률	100.0	10.9	59.0	32/138	23.2	
	소규모급수시설 수질 관리 의무	100.0	0.0	97.2	107/138	77.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96.7	1.3	77.6	56/138	40.6	

#### 2. 교통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	100.0	69.1	90.4	1/138	0.7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	-	-	68/137	49.6	1(무응답)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	100.0	66.7	94.4	10/11	90.9	127 (도서 無)
인도	인도 구분 설치	100.0	0.0	11.4	7/134	5.2	4(무응답)

## 3. 교육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유치원/ 초·중학교	농어촌학교 육성(읍·면별 초교 유지)	100.0	60.0	98.4	123/138	89.1	
	초교 통학수단 제공	100.0	15.2	62.2	9/138	6.5	
고등학교	우수고등학교 육성	-	-	-	119/138	86.2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	100.0	83.3	98.2	38/39	97.4	99 (폐교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99.9	51.6	80.0	122/138	88.4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	-	-	94/138	68.1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	100.0	0.0	21.1	2/138	1.4	

## 4. 보건의료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	-	-	-	97/138	70.3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	100.0	0.0	27.8	16/73	21.9	65 (오자마을無)
의약품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의약품 구입	100.0	66.7	99.5	131/138	94.9	

## 5. 복지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노인	도움이 필요한노인 주1회 이상 재가노인서비스	85.9	30.9	65.9	0/138	0.0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	-	-	-	127/138	92.0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	100.0	57.1	97.9	118/138	85.5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	100.0	15.4	70.3	32/138	23.2	
다문화 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130/138	94.2	
	방문서비스 제공	-	-	-	137/138	99.3	

## 6. 응급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82.9	61.3	73.4	0/138	0.0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소방청 EMS 전용 헬기 운영	-	-	-	-	-	-
	해경 및 산림청 헬기 및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	-	-	-	-	-

주: 도서벽지 응급서비스의 경우 시도 소방서·지방해경청·산림청별로 이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이행실태 점검이 불가능함.

## 7. 안전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경찰 순찰	범죄 취약지역 마을별 1일 1회 이상 순찰						
방법설비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	100.0	1.3	30.0	9/133	6.8	5(무응답)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	100.0	0.0	7.6	1/48	2.1	90 (항포구無)
경찰 출동	112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	100.0	100.0	100.0	138/138	100.0	
소방 출동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	88.0	10.0	42.8	0/138	0.0	

## 8. 문화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	100.0	5.6	43.6	4/138	2.9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	-	-	-	64/136	47.1	2(무응답)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	-	-	-	137/138	99.3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가능	-	-	-	43/137	31.4	1 (문화시설 無)
	분기별 1회 전문공연 관람 가능				108/137	78.8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100.0	0.0	34.7	19/135	14.1	3 (무응답)

## 9. 정보통신 부문

항목	세부기준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달성 시·군		
					달성 시·군	달성 비율	비고
초고속망	초고속망 구축률(100%)	100.0	100.0	100.0	138/138	100.0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100.0	28.0	73.4	67/138	48.6	

## 부록 3

##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별 이행실태의 변화(2012~13년)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2년 달성률 (%)	2013년 달성률 (%)	향상 여부
1. 주거	주택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90%)	88.3	88.3	*1
	난방	읍 도시가스 보급률 (50%)	44.7	47.9	↑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시(여부)	1.5	2.9	↑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100%)	89.2	95.0	↑
		프로그램 지원(100%)	28.4	40.4	↑
	상수도	면 상수도 보급률(75%)	56.1	59.0	↑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관리 의무(여부)	-	97.2	*2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71%)	74.1	77.6	↑	
2. 교통	대중교통	일 3회 대중교통 이용(100%)	90.4	90.4	*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여부)	35.5	49.6	↑
	여객선	본도에 1일 1회 왕복 여객선(100%)	97.3	94.4	↓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여부)	-	-	*4
	인도	인도 구분 설치(100%)	14.0	11.4	↓
3. 교육	유치원/ 초·중학교	농어촌학교 육성(읍·면별 초교 유지)(100%)	-	98.4	*2
		초교 통학수단 제공(100%)	-	62.2	*2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유무)	86.3	86.2	↑
	폐교	폐교시설 재활용 의견 수렴(100%)	95.7	98.2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70%)	82.8	80.0	↓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여부)	66.7	68.1	↑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 거점시설(100%)	19.8	21.1	↑	
4. 보건 의료	진료서비스	모든 중요과목 의사 진료(여부)	78.3	70.3	*3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전문인력 순회방문(100%)	6.7	27.8	*3
	의약품 구입	자동차 20분 내 일반 의약품 구입(100%)	99.6	99.5	↓

분야	항목	달성 기준(목표치)	2012년 달성률 (%)	2013년 달성률 (%)	향상 여부
5. 복지	노인	취약계층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서비스(100%)	27.1	65.9	*3
	청소년	자동차 30분 내 청소년센터(유무)	91.4	92.0	↑
	아동	자동차 20분 내 초등생 방과후돌봄시설(100%)	98.0	97.9	↓
	영유아	자동차로 20분 내 소규모 보육시설(100%)	67.9	70.3	↑
	다문화가족	자동차 30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무)	90.6	94.2	↑
방문서비스 제공(여부)		99.3	99.3	—	
6.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30분 내 도착(100%)	99.5	73.4	↓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해경 및 산림청 헬기 및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100.0	100.0	↑
		소방청 EMS 전용 헬기 운영	100.0	100.0	↑
7. 안전	경찰 순찰	범죄 취약지역 마을별 1일 1회 이상 순찰	-	•	*2
	방법설비	마을별 도난방지 CCTV 설치(100%)	20.2	30.0	↑
		항포구 도난방지 CCTV 설치(100%)	7.2	7.6	↑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 10분 이내(100%)	100.0	100.0	↑
	소방서비스	5분 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55%)	52.3	42.8	↓
8. 문화	독서	읍·면 내 도서 열람/대출(100%)	43.2	43.6	↑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안서비스(유무)	47.1	47.1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 30분 내 문화시설(유무)	98.6	99.3	↑
		월 1회 문화프로그램 관람 가능(여부)	55.4	31.2	↓
		분기별 1회 전문 공연 관람 가능(여부)	75.5	78.3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 2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100%)	30.2	34.7	↑	
9. 정보 통신	초고속망 *	초고속망 구축률(100%)	67.5	100.0	↑
		광대역통합망 구축률(80%)	61.2	81.0	↑

주: 1) 여객선 운임지원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제외함.

2)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정체된 경우 —, 하락한 경우 ↓로 나타냄.

3) 2012년과 2013년 활용 데이터가 동일하거나(\*1), 2013년에 새롭게 점검하는 경우(\*2), 점검 체계나 방법이 변경된 경우(\*3), 법적 의무 사항인 경우(\*4)는 이행실태 향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4) 고등학교 항목의 경우 활용통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지 총 시군 수의 변화로 인하여 이행

실태가 약간 변한 경우로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다만, 보완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가 2012년 점검 당시보다 증가하여 향상된 것으로 간주함.

- 5) 도서벽지응급서비스의 2개 세부기준의 경우 2012년, 2013년 모두 100%로 동일하지만, 선박 및 헬기 등 보유 장비의 증가로 실제적인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6) 초고속망 항목은 2012년에는 구축률을 확인할 수 없어 가입률로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나, 2013년에는 구축률 자료(광대역통합망 구축률)를 구득하여 점검하였으므로 본래 향상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움(초고속 인터넷 구축률은 정부에서 이미 모든 곳에 구축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음). 다만, 이러한 인프라의 경우 구축되었다가 철수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향상된 것으로 간주함.

## 부록 4

###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면·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산재생애복지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상상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로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중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도로 정비사업 인도 구분	읍·면·별 초·중·고등학교 유지	초·중·고등학교 통학 수단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순회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부산	기장군	89.1	65.4	1.8	0.0	0.0	96.1	97.8	87.2	95.7	0	-	50.0	100.0	58.8	1	-	91.4	×	40.0	○	-	100.0
대구	달성군	90.2	90.2	1.8	100.0	100.0	98.5	100.0	79.6	93.6	0	-	0.0	100.0	44.0	2	-	89.7	×	44.4	○	-	100.0
인천	강화군	86.6	47.4	1.9	99.5	99.5	32.0	100.0	45.2	91.4	0	100.0	40.0	100.0	78.3	3	-	89.7	○	15.4	○	-	100.0
	옹진군	87.4	-	3.7	90.7	66.7	23.4	98.5	26.6	77.3	1	66.7	-	100.0	53.8	0	-	98.8	○	0.0	○	100.0	100.0
울산	울주군	91.2	89.6	4.1	95.1	95.1	68.4	100.0	77.7	97.6	0	-	12.1	100.0	20.6	1	100.0	80.6	×	33.3	○	-	100.0
	평택시	92.9	80.5	4.2	79.1	0.7	78.2	93.9	79.0	96.3	1	-	51.1	100.0	31.0	1	-	65.9	×	22.2	○	0.0	100.0
	남양주시	95.0	80.4	1.5	56.6	38.6	79.1	100.0	92.0	99.4	1	-	0.0	100.0	17.5	1	-	60.0	×	100.0	○	-	100.0
	용인시	95.1	75.6	8.8	98.7	54.7	86.2	100.0	91.6	95.7	1	-	31.3	100.0	16.7	1	-	77.1	×	100.0	○	-	100.0
	파주시	94.2	63.0	1.6	87.2	2.9	78.7	100.0	70.8	98.0	1	-	100.0	100.0	30.0	1	-	68.3	○	54.5	○	0.0	90.9
	이천시	92.6	58.5	2.3	97.7	42.3	72.7	100.0	77.5	94.9	2	-	8.8	100.0	33.3	1	-	68.0	○	50.0	○	-	100.0
	안성시	90.7	90.1	1.6	82.5	35.0	72.4	100.0	52.2	93.7	1	-	53.8	100.0	78.8	0	-	70.8	○	50.0	○	0.0	100.0
	김포시	94.3	80.9	2.3	100.0	11.6	74.0	100.0	65.6	99.1	1	-	19.0	100.0	42.1	1	-	68.2	×	33.3	○	-	100.0
	화성시	94.4	79.0	1.8	82.9	82.9	92.5	100.0	81.5	94.8	1	-	8.4	100.0	54.5	1	-	62.9	×	46.2	○	0.0	92.3
	광주시	92.0	73.0	2.6	100.0	65.9	54.4	100.0	91.0	97.6	1	-	12.5	100.0	27.8	1	-	75.3	×	42.9	○	-	100.0
	양주시	94.6	69.5	2.1	100.0	86.0	83.8	100.0	90.5	97.0	1	-	100.0	100.0	73.3	1	-	62.3	○	40.0	○	-	100.0
	포천시	90.4	65.8	0.9	96.4	18.3	42.3	100.0	57.4	88.8	1	-	4.8	100.0	50.0	1	-	58.1	○	16.7	○	-	100.0
	여주군	91.7	75.4	1.1	100.0	0.0	51.1	100.0	62.0	96.4	2	-	100.0	100.0	70.4	1	100.0	83.0	○	20.0	○	-	100.0
	연천군	90.0	47.4	1.0	95.8	95.8	90.2	100.0	77.4	96.9	0	-	27.3	60.0	86.7	1	-	73.5	○	10.0	×	-	90.0
가평군	89.3	0.0	4.5	97.6	97.6	60.2	100.0	72.1	96.8	0	-	14.5	100.0	81.3	1	-	83.2	×	66.7	○	-	100.0	
양평군	88.6	37.6	2.4	100.0	100.0	38.7	100.0	87.5	95.4	0	-	63.0	100.0	73.9	1	-	85.2	○	33.3	○	100.0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면·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산재생애치보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상수도보급률 75% 이상	소규모급수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운행 마을 비율	중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회 이상 왕복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등학교 유지	초등학교 동화수단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기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강원도	춘천시	89.5	0.0	10.5	80.3	24.9	61.3	100.0	92.0	86.9	1	-	27.8	80.0	60.0	0	-	51.6	×	30.0	○	0.0	100.0
	원주시	90.8	73.1	8.9	84.5	14.4	18.1	96.9	86.7	93.9	0	-	43.8	100.0	50.0	0	-	57.9	○	22.2	○	-	88.9
	강릉시	86.6	0.0	3.9	95.4	38.9	50.8	100.0	87.9	95.9	0	-	-	100.0	33.3	0	-	61.7	×	37.5	○	-	100.0
	삼척시	80.8	0.0	4.3	98.1	98.1	44.6	85.5	82.9	88.1	1	-	14.1	100.0	55.6	0	100.0	71.4	○	0.0	○	-	100.0
	홍천군	84.6	62.6	1.5	99.0	33.7	41.0	100.0	73.7	86.7	0	-	52.9	100.0	44.1	3	100.0	79.3	○	10.0	○	0.0	100.0
	횡성군	84.2	37.1	1.2	97.7	97.7	39.0	100.0	53.8	88.6	1	-	2.5	100.0	47.6	2	100.0	66.9	○	33.3	○	0.0	100.0
	영월군	78.6	0.0	1.0	93.9	16.8	59.4	100.0	70.1	96.0	1	-	46.7	100.0	55.0	1	-	79.5	○	11.1	×	22.2	100.0
	평창군	85.5	0.0	1.4	89.5	53.2	73.7	100.0	65.8	69.1	0	-	21.1	100.0	70.0	1	100.0	82.4	×	37.5	×	0.0	100.0
	정선군	79.1	0.0	0.5	76.7	76.7	59.3	100.0	77.7	85.6	0	-	18.5	100.0	66.7	1	-	85.5	×	11.1	○	0.0	100.0
	철원군	89.9	0.0	1.5	99.1	43.4	61.6	100.0	48.6	92.7	1	-	37.5	85.7	68.8	3	100.0	68.9	○	28.6	×	-	85.7
	화천군	83.8	0.0	0.7	100.0	0.0	46.2	100.0	37.3	95.1	1	-	0.0	100.0	33.3	1	-	83.8	○	40.0	×	0.0	100.0
	양구군	86.8	0.0	0.9	100.0	100.0	62.3	100.0	83.1	86.8	1	-	27.3	100.0	77.8	2	100.0	81.0	○	20.0	×	0.0	100.0
	인제군	86.5	0.0	1.1	94.0	94.0	64.8	100.0	81.7	86.9	0	-	12.9	100.0	26.3	2	-	82.1	×	50.0	○	0.0	100.0
	고성군	85.2	0.0	0.6	89.0	85.0	92.4	100.0	88.3	93.7	0	-	3.0	100.0	25.0	1	-	87.2	×	40.0	×	0.0	100.0
충청북도	양양군	86.1	0.0	0.6	93.5	93.5	67.5	100.0	54.7	92.8	1	-	34.4	100.0	47.1	1	-	67.4	×	16.7	×	-	100.0
	충주시	89.9	0.1	6.5	97.9	78.1	34.5	99.6	92.2	93.7	2	-	70.0	100.0	95.5	2	-	77.6	○	23.1	○	0.0	100.0
	제천시	88.6	27.1	21.8	100.0	33.5	51.6	100.0	94.3	87.6	1	-	0.0	87.5	90.9	2	-	86.6	×	37.5	×	68.8	100.0
	청원군	91.0	82.3	3.2	90.3	33.6	57.5	97.7	44.9	97.6	1	-	30.7	100.0	84.4	1	100.0	92.1	×	30.8	○	20.6	100.0
	보은군	81.2	0.0	1.9	98.0	39.3	19.6	100.0	69.8	83.4	0	-	0.0	100.0	93.8	1	-	97.5	○	9.1	×	100.0	100.0
	옥천군	84.3	19.0	2.3	99.5	54.8	57.2	100.0	86.9	89.0	2	-	1.9	100.0	80.0	1	100.0	93.6	×	11.1	○	-	100.0
	영동군	80.3	14.1	1.7	100.0	70.4	61.4	100.0	67.8	72.2	1	-	0.0	100.0	93.3	1	-	88.5	○	9.1	○	-	100.0
	진천군	87.2	34.9	2.5	90.9	0.0	66.0	100.0	66.4	91.4	0	-	61.3	100.0	93.3	1	100.0	84.2	○	14.3	○	-	100.0
	괴산군	81.3	7.9	2.7	99.3	99.3	40.0	100.0	40.5	93.2	2	-	20.0	100.0	93.3	1	-	94.0	×	27.3	○	9.1	100.0
	음성군	92.1	39.4	4.8	99.7	61.2	69.4	99.4	51.3	81.1	0	-	20.5	100.0	90.5	1	100.0	92.4	○	44.4	○	100.0	100.0
단양군	83.9	13.4	3.1	96.7	36.4	38.1	100.0	71.3	95.3	1	-	27.0	100.0	73.3	1	-	95.0	○	12.5	×	100.0	100.0	
증평군	92.0	56.1	2.5	89.4	57.7	90.7	100.0	86.9	97.0	0	-	27.8	100.0	50.0	1	-	91.3	○	50.0	○	0.0	100.0	

구분	시·군·명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산재생애치보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3회 이상 운행 마을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중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일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 초·중·고등학교 유지	초·중·고등학교 수당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충청남도	천안시	90.8	55.8	0.8	92.5	14.0	33.0	0.0	92.4	96.2	1	-	66.7	100.0	51.6	1	-	84.6	○	33.3	○	-	100.0	
	공주시	87.5	0.0	4.5	100.0	0.0	38.4	95.4	63.2	90.5	0	-	25.0	100.0	90.0	1	100.0	90.2	○	30.0	○	-	100.0	
	보령시	90.5	0.0	1.5	98.7	42.4	34.5	99.4	62.6	93.6	1	-	56.3	100.0	64.0	0	-	89.5	○	9.1	○	-	100.0	
	아산시	92.2	76.4	9.8	96.6	19.9	74.6	100.0	62.5	95.7	2	-	29.4	100.0	37.9	1	-	89.9	○	54.5	○	-	100.0	
	서산시	91.4	46.9	4.7	99.6	26.5	62.8	100.0	67.0	93.5	0	-	6.0	100.0	76.2	0	100.0	75.5	○	20.0	×	-	100.0	
	논산시	86.7	5.5	2.5	98.6	33.3	27.1	100.0	50.6	91.4	3	-	2.4	100.0	55.2	1	100.0	90.2	○	30.8	○	-	100.0	
	계룡시	96.5	-	7.8	95.3	95.3	95.1	100.0	95.3	100.0	1	-	100.0	100.0	25.0	0	-	91.0	○	0.0	○	100.0	66.7	
	당진시	91.9	67.3	3.1	95.9	95.9	49.8	100.0	60.3	95.0	1	-	0.0	100.0	81.5	1	-	74.3	○	0.0	○	-	100.0	
	금산군	78.2	45.2	1.1	100.0	40.6	37.2	100.0	68.1	91.6	2	-	5.9	100.0	88.2	2	-	87.2	○	30.0	○	50.0	100.0	
	부여군	87.6	0.0	1.0	97.2	9.3	59.9	89.3	41.5	95.4	2	-	0.9	100.0	76.0	1	-	90.5	○	12.5	○	100.0	100.0	
	서천군	87.4	40.6	0.8	100.0	93.3	37.8	100.0	43.9	89.8	1	-	25.8	100.0	84.2	2	-	91.4	○	7.7	○	41.5	100.0	
	청양군	85.2	0.0	3.5	100.0	19.1	10.9	100.0	46.7	85.8	0	-	2.2	100.0	83.3	2	100.0	85.4	○	30.0	×	100.0	100.0	
	홍성군	88.9	39.6	1.2	97.9	44.6	22.5	96.2	60.1	88.3	0	-	67.9	100.0	57.1	2	-	87.7	○	18.2	○	11.5	100.0	
	예산군	91.5	33.3	1.6	100.0	100.0	14.9	98.5	54.3	90.8	2	-	10.0	100.0	73.9	1	-	97.1	○	16.7	○	8.9	100.0	
태안군	89.7	11.7	2.6	100.0	100.0	49.8	100.0	45.6	93.5	0	-	3.3	87.5	63.6	1	-	93.9	○	25.0	×	-	100.0		
전라북도	군산시	92.7	0.0	3.7	100.0	7.4	61.8	100.0	89.8	94.6	2	-	100.0	100.0	57.7	0	100.0	64.4	○	18.2	○	-	100.0	
	익산시	90.6	0.0	9.8	100.0	0.0	92.2	100.0	85.2	93.0	*	-	6.3	100.0	90.0	0	-	72.8	○	0.0	○	-	100.0	
	정읍시	90.6	0.0	3.1	100.0	4.3	82.5	0.0	69.5	95.3	0	-	13.0	100.0	100.0	2	100.0	88.0	×	6.7	○	-	100.0	
	남원시	85.0	0.0	1.6	100.0	16.9	51.3	100.0	79.4	94.0	0	-	0.0	100.0	100.0	2	-	85.2	○	18.8	○	0.0	93.8	
	김제시	89.4	0.0	2.0	88.4	19.4	86.5	100.0	56.8	96.3	0	-	0.0	100.0	89.3	1	-	78.4	×	6.7	○	-	100.0	
	완주군	84.2	59.3	6.5	92.3	12.2	46.4	99.5	68.7	95.5	1	-	-	100.0	93.3	1	-	89.2	×	30.8	○	59.8	100.0	
	진안군	79.6	0.0	2.7	19.1	0.0	41.2	100.0	59.1	91.8	0	-	37.1	90.9	92.3	1	-	93.0	○	18.2	×	0.0	100.0	
	무주군	79.4	0.0	2.1	100.0	28.0	55.8	100.0	67.0	98.7	1	-	21.7	100.0	90.0	1	-	92.5	○	16.7	×	0.0	100.0	
	장수군	79.2	0.0	2.3	100.0	3.5	54.4	100.0	58.6	93.0	0	-	16.7	100.0	88.9	1	-	92.5	×	14.3	×	-	100.0	
	임실군	75.3	25.9	0.9	100.0	100.0	61.2	0.0	64.3	93.0	0	-	24.1	100.0	100.0	1	-	97.1	×	33.3	×	-	100.0	
	순창군	78.5	7.0	1.7	99.3	2.0	41.7	100.0	45.5	89.1	1	-	21.2	100.0	93.3	1	-	89.0	×	9.1	×	0.0	100.0	
고창군	90.4	21.7	3.6	89.9	6.7	96.8	100.0	55.4	94.1	1	-	0.4	100.0	100.0	1	-	87.9	○	7.1	○	0.0	100.0		
부안군	91.4	18.0	1.3	90.6	7.5	98.9	100.0	51.3	84.6	0	100.0	50.0	100.0	82.6	1	-	93.6	×	7.7	○	-	100.0		

구분	시·군·명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면·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산재생애치보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상수도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중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일 1회 이상 왕복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초등학교 유지	초등학교 통학 수단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기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이상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전라남도	여수시	90.2	0.0	12.5	98.0	34.8	21.0	97.6	83.4	73.7	0	100.0	0.0	100.0	31.4	1	100.0	75.1	○	14.3	○	-	100.0
	순천시	90.5	0.0	1.8	100.0	4.0	66.5	100.0	90.5	96.3	0	-	5.9	100.0	55.0	0	-	69.6	○	9.1	○	0.0	100.0
	나주시	85.3	0.0	1.8	100.0	0.0	43.0	100.0	53.0	95.7	1	-	4.6	100.0	82.4	1	-	92.0	○	15.4	○	-	100.0
	광양시	91.5	91.4	4.0	100.0	100.0	43.5	100.0	91.3	96.9	0	-	0.0	100.0	35.3	1	-	84.2	○	28.6	×	0.0	100.0
	담양군	81.7	19.5	2.4	100.0	6.9	45.8	100.0	56.5	98.3	0	-	2.7	100.0	56.3	1	-	93.9	○	25.0	○	-	100.0
	곡성군	80.2	0.0	0.9	100.0	5.4	60.7	100.0	65.4	88.6	1	-	25.0	72.7	100.0	1	-	85.1	○	18.2	×	4.9	100.0
	구례군	87.7	0.0	0.6	100.0	100.0	35.1	100.0	86.6	96.1	0	-	20.5	100.0	54.5	1	-	82.9	×	12.5	×	0.0	100.0
	고흥군	88.4	0.0	0.9	98.8	0.0	45.8	96.1	43.1	94.4	0	100.0	0.0	93.8	66.7	1	100.0	78.1	○	6.3	○	0.0	100.0
	보성군	84.9	0.0	1.0	100.0	47.5	25.6	99.7	55.5	94.0	0	-	48.9	100.0	75.0	2	-	93.8	○	16.7	×	0.0	100.0
	화순군	83.3	77.9	3.7	99.1	5.9	64.6	100.0	72.4	90.2	0	-	18.8	100.0	55.6	2	-	84.8	○	7.7	×	0.0	100.0
	장흥군	81.7	0.0	1.2	100.0	37.7	27.9	93.9	59.4	92.3	1	-	100.0	100.0	86.7	1	-	88.7	×	10.0	○	19.0	100.0
	강진군	87.7	0.0	2.4	100.0	45.0	28.3	100.0	56.0	88.7	0	-	0.0	100.0	71.4	1	-	88.7	○	9.1	○	13.1	100.0
	해남군	86.5	0.0	1.0	100.0	5.8	29.5	100.0	42.0	89.5	0	-	15.7	100.0	64.3	1	-	90.6	○	14.3	○	0.0	100.0
	영암군	88.6	48.1	3.6	100.0	11.2	55.8	100.0	63.4	90.9	1	-	0.0	100.0	72.2	1	-	86.5	○	27.3	○	-	100.0
	무안군	90.1	45.8	5.4	95.2	17.8	37.7	100.0	47.1	85.5	0	-	0.0	100.0	55.0	1	-	82.7	○	22.2	×	-	100.0
	함평군	84.4	0.0	0.8	96.0	9.6	33.2	99.2	49.3	93.4	0	-	22.0	100.0	90.9	1	-	90.9	○	11.1	×	-	100.0
	영광군	88.1	19.2	0.6	97.9	20.5	80.8	100.0	53.3	93.5	0	100.0	25.0	100.0	66.7	2	-	92.1	○	18.2	○	-	100.0
	장성군	83.8	29.9	1.6	96.9	96.9	27.5	100.0	59.0	89.7	1	-	28.0	90.9	83.3	1	-	99.2	○	18.2	○	13.9	100.0
	완도군	90.5	0.0	1.6	100.0	43.7	63.5	100.0	54.4	75.2	0	100.0	0.0	100.0	60.0	1	-	96.1	×	16.7	○	0.0	100.0
	진도군	86.2	0.0	1.0	100.0	0.0	89.7	100.0	59.6	82.6	1	100.0	27.6	100.0	50.0	1	100.0	84.7	×	14.3	○	0.0	100.0
신안군	82.1	0.0	1.2	100.0	100.0	75.5	100.0	31.4	69.7	1	100.0	3.3	100.0	34.3	1	100.0	98.6	○	14.3	×	0.0	100.0	
경상북도	포항시	89.2	76.7	5.2	98.4	33.9	62.9	100.0	79.3	88.0	0	-	0.0	100.0	51.5	0	100.0	84.6	○	21.4	○	-	100.0
	경주시	83.7	26.0	1.0	100.0	0.3	62.3	98.7	85.4	89.2	0	-	22.4	100.0	30.3	1	-	90.9	○	41.7	○	-	100.0
	김천시	83.3	0.0	6.2	100.0	100.0	37.5	100.0	70.1	90.5	0	-	0.0	100.0	60.0	2	-	90.3	○	0.0	○	0.0	100.0
	안동시	77.7	0.0	1.4	90.9	11.6	42.0	100.0	75.8	88.4	0	-	33.3	100.0	68.2	0	-	86.2	○	21.4	○	0.0	100.0
	구미시	91.4	43.9	1.1	100.0	15.8	72.1	100.0	96.7	86.3	0	-	5.1	100.0	69.2	2	100.0	85.6	○	12.5	○	-	100.0
	영주시	76.7	0.0	1.5	96.0	0.0	26.5	99.4	79.2	80.4	0	-	13.2	100.0	100.0	2	100.0	83.9	○	10.0	○	100.0	100.0
영천시	75.3	46.6	0.6	98.2	98.2	61.8	100.0	61.8	92.8	0	-	6.6	100.0	75.0	2	100.0	88.2	○	27.3	○	50.0	100.0	

구분	시·군·명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도·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면·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산재생애치보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3회 이상 운행 마을	대중교통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일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초·중·고등학교 유지	초·중·고등학교 수당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기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월회 이상 순회 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상주시	76.4	0.0	1.9	100.0	1.7	33.6	99.2	66.2	82.6	0	-	0.2	94.4	65.4	1	100.0	93.5	○	11.1	×	0.0	100.0
	문경시	80.4	0.0	1.2	100.0	18.5	72.8	100.0	77.2	85.2	0	-	-	100.0	71.4	2	-	90.4	○	11.1	○	0.0	100.0
	경산시	86.1	97.7	16.8	98.7	0.0	89.9	100.0	88.7	98.7	0	-	38.9	100.0	26.3	0	-	84.7	○	50.0	○	-	100.0
	군위군	60.9	0.0	0.4	98.9	14.5	54.0	100.0	9.1	77.7	0	-	3.9	87.5	87.5	1	100.0	99.9	○	12.5	×	-	100.0
	의성군	61.8	0.0	2.0	100.0	0.0	43.4	100.0	37.2	80.0	0	-	7.0	94.4	89.5	2	-	86.7	○	5.6	○	-	100.0
	청송군	60.6	0.0	1.5	100.0	19.1	58.4	100.0	17.2	86.0	0	-	0.0	100.0	100.0	1	-	88.3	○	12.5	×	-	100.0
	영양군	62.6	0.0	0.6	95.6	24.6	61.9	100.0	49.7	81.6	0	-	4.0	100.0	87.5	1	-	92.2	○	16.7	×	100.0	100.0
	영덕군	77.2	0.0	0.6	100.0	100.0	83.7	100.0	72.1	77.5	0	-	11.4	88.9	84.6	1	100.0	95.0	○	22.2	×	0.0	100.0
	청도군	73.8	0.0	1.3	100.0	34.9	32.4	97.4	51.5	87.1	0	-	10.0	100.0	78.6	1	100.0	93.0	○	11.1	×	100.0	100.0
	고령군	71.2	0.0	8.5	100.0	5.3	79.8	100.0	55.9	89.4	0	-	39.1	100.0	88.9	0	-	99.6	○	25.0	×	-	100.0
	성주군	71.3	0.0	1.4	100.0	16.3	22.6	100.0	29.9	70.0	0	-	6.3	100.0	43.8	1	100.0	88.6	○	10.0	×	0.0	100.0
	칠곡군	88.6	81.4	3.4	92.5	92.5	65.0	100.0	67.5	91.5	0	-	0.0	100.0	22.7	1	-	95.9	○	62.5	○	-	100.0
	예천군	72.8	0.0	0.6	94.0	94.0	41.7	99.2	32.3	87.2	0	-	14.8	75.0	100.0	1	-	90.0	×	8.3	○	-	100.0
	봉화군	64.2	0.0	1.3	99.4	99.4	35.6	100.0	53.1	76.3	0	-	14.9	100.0	65.0	1	100.0	91.3	○	10.0	×	-	100.0
	울진군	80.1	0.0	1.9	100.0	32.7	47.9	100.0	25.3	80.6	0	-	0.0	100.0	52.6	2	-	86.1	○	10.0	○	-	100.0
	울릉군	81.9	0.0	1.7	88.0	16.0	69.7	100.0	1.3	96.0	1	-	8.0	100.0	40.0	0	100.0	92.4	○	33.3	×	-	100.0
	창원시	89.6	81.3	14.2	49.5	49.5	60.9	100.0	94.4	97.4	2	-	27.8	100.0	33.3	1	100.0	94.7	×	25.0	○	-	100.0
	진주시	85.5	31.3	2.2	96.7	96.7	93.0	100.0	91.1	94.6	1	-	100.0	100.0	83.3	1	-	78.0	○	6.3	○	0.0	100.0
	통영시	87.4	0.0	1.0	80.3	8.1	85.8	100.0	80.0	78.9	1	100.0	66.7	100.0	41.2	1	83.3	89.7	○	14.3	○	68.2	100.0
	사천시	86.5	68.8	12.8	100.0	100.0	88.9	100.0	91.8	82.6	1	-	50.0	87.5	72.7	1	100.0	87.3	×	37.5	○	-	100.0
	김해시	92.2	66.9	1.9	99.2	48.8	88.0	100.0	94.0	97.3	2	-	43.6	100.0	15.2	1	-	82.4	×	37.5	○	0.0	100.0
	밀양시	78.7	0.0	0.9	100.0	16.7	33.3	98.7	71.5	82.6	1	-	0.0	100.0	77.8	1	-	91.3	×	27.3	○	-	100.0
	거제시	89.4	-	3.8	99.5	99.5	80.1	100.0	82.7	95.4	1	-	4.6	100.0	55.6	1	-	93.1	×	11.1	○	100.0	100.0
	양산시	92.9	80.2	19.2	100.0	74.8	57.9	100.0	84.6	95.7	1	-	53.3	100.0	23.5	1	-	82.8	×	40.0	○	-	100.0
	의령군	69.5	0.0	3.0	100.0	100.0	21.7	99.2	54.5	81.1	1	-	66.7	100.0	92.9	1	-	92.7	○	15.4	×	0.0	100.0
	함안군	82.9	0.0	0.7	100.0	4.4	79.5	100.0	36.1	93.1	1	-	19.2	100.0	73.7	1	100.0	95.2	○	20.0	○	-	100.0
	창녕군	70.3	0.0	2.0	100.0	100.0	83.5	100.0	65.4	85.3	0	-	0.0	100.0	72.2	1	-	91.7	×	21.4	○	-	100.0
	고성군	80.8	7.0	2.2	100.0	100.0	43.6	99.6	46.8	91.2	1	-	0.0	100.0	94.7	2	100.0	95.4	○	7.1	×	0.0	100.0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주택	난방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여객선	인도	유치원/초·중교	고등학교	폐교	방과후 학교	의견수렴	평생교육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시·군·명	시·군·명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90%이상	읍·면·도시 가스 보급률 50% 이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면부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소규모 급수 시설 수질 관리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도보 15분 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중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본도와 도서 지역 1일 1회 이상 왕복	생활 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읍·면·별 초·중·고 학교 유지	초·중·고등학교 통학 수단 제공	우수 고등학교 1개 이상	폐교 주민 의견 수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이상	교육 발전 위원회 설치	읍·면·별 평생 교육 시설 1개 이상	모든 주요 과목 1차 진료 가능	마을별 순회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제주도	남해군	82.8	0.0	2.1	100.0	100.0	42.4	100.0	58.9	97.7	2	-	20.0	100.0	84.6	1	-	98.3	×	10.0	○	0.0	100.0
	하동군	83.4	0.0	4.9	100.0	4.1	38.7	100.0	67.3	79.6	1	-	42.9	100.0	68.4	1	-	95.4	○	7.7	×	100.0	100.0
	산청군	71.9	0.0	1.8	100.0	100.0	36.6	100.0	60.9	80.4	0	-	7.7	100.0	100.0	1	-	99.0	×	27.3	×	100.0	100.0
	함양군	79.5	0.0	1.6	100.0	78.1	18.9	100.0	69.3	87.1	1	-	0.0	100.0	84.6	1	-	82.8	○	9.1	○	-	100.0
	거창군	75.4	6.3	3.0	100.0	100.0	18.5	97.0	78.7	88.0	2	-	4.3	100.0	82.4	1	-	90.0	○	8.3	○	9.8	100.0
	합천군	66.3	0.0	0.7	100.0	2.9	23.9	100.0	44.1	79.7	0	-	7.9	100.0	90.0	1	100.0	97.7	○	5.9	○	-	100.0
제주도	제주시	86.6	0.0	1.7	100.0	100.0	100.0	100.0	88.3	92.7	1	100.0	13.2	100.0	22.5	0	-	87.2	×	28.6	○	100.0	100.0
	서귀포시	86.8	0.0	0.7	100.0	78.9	100.0	100.0	87.2	93.4	1	-	33.3	100.0	30.0	0	-	90.3	×	60.0	○	100.0	100.0

## 부록 4

###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계속)

단위: %, 개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노인 주1회이상 계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시설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0%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여 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부산	기장군	52.9	3	100.0	100.0	1	○	63.7	49.2	29.4	100.0	58.5	60.0	1	1	0.0	0.0	100.0	100.0
대구	달성군	65.4	2	100.0	88.9	1	○	78.7	34.8	-	100.0	54.5	55.6	0	1	1.3	0.0	0.0	99.6
인천	강화군	61.2	7	100.0	53.8	1	○	66.2	23.7	9.1	100.0	35.4	23.1	0	2	1.3	21.0	7.7	82.7
	옹진군	30.9	0	57.1	57.1	0	×	70.8	24.0	2.2	100.0	33.3	28.6	*	0	-	0.0	-	81.3
울산	울주군	61.1	4	100.0	75.0	1	○	73.5	21.2	33.3	100.0	48.2	83.3	0	2	26.8	18.5	25.0	100.0
경기도	평택시	71.0	6	100.0	88.9	1	○	69.7	12.5	0.0	100.0	35.1	55.6	3	4	5.1	66.0	66.7	92.8
	남양주시	72.3	5	100.0	100.0	1	○	70.2	32.4	-	100.0	31.2	100.0	2	1	0.0	0.0	88.9	100.0
	용인시	72.2	6	100.0	100.0	1	○	74.2	15.5	-	100.0	21.0	71.4	1	2	0.0	4.5	57.1	99.3
	파주시	68.8	5	90.9	81.8	1	○	71.4	18.2	-	100.0	26.5	90.9	1	1	0.0	0.0	72.7	95.9
	이천시	71.3	8	100.0	100.0	1	○	70.8	40.0	-	100.0	23.3	50.0	2	1	0.0	26.0	100.0	95.3
	안성시	60.2	2	100.0	91.7	1	○	66.5	16.4	-	100.0	14.8	41.7	2	2	0.0	0.0	66.7	91.2
	김포시	74.4	5	100.0	100.0	1	○	81.5	36.0	66.7	100.0	22.1	66.7	1	1	0.0	0.0	66.7	100.0
	화성시	70.6	4	100.0	100.0	1	○	68.6	29.0	100.0	100.0	32.0	61.5	0	3	0.0	29.8	100.0	97.7
	광주시	70.7	1	100.0	85.7	1	○	74.8	14.4	-	100.0	36.7	42.9	0	2	4.2	58.8	0.0	99.4
	양주시	76.2	4	100.0	100.0	1	○	70.3	100.0	-	100.0	27.6	100.0	0	2	0.3	13.5	40.0	100.0
	포천시	73.6	7	100.0	100.0	1	○	74.1	20.7	-	100.0	27.0	58.3	2	2	4.3	41.5	58.3	99.2
여주군	76.6	4	100.0	100.0	1	○	76.0	100.0	-	100.0	31.3	70.0	1	1	0.8	0.0	10.0	94.7	
연천군	76.9	2	70.0	60.0	1	○	82.2	21.9	-	100.0	33.8	60.0	2	2	0.0	11.0	50.0	100.0	
가평군	69.9	8	100.0	100.0	1	○	77.3	22.4	-	100.0	44.0	66.7	2	2	3.7	13.3	100.0	96.0	
양평군	69.3	4	100.0	100.0	1	○	72.7	100.0	-	100.0	15.4	33.3	2	2	0.0	12.8	8.3	90.7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노인 주1회이상 계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시설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 센터 또는 초등학교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여 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강원도	춘천시	75.6	5	90.0	80.0	1	○	78.7	20.7	-	100.0	57.6	40.0	1	2	0.0	40.0	20.0	79.6
	원주시	69.4	6	100.0	100.0	1	○	71.5	14.9	-	100.0	36.0	66.7	3	2	0.2	27.8	88.9	95.6
	강릉시	85.9	3	100.0	87.5	1	○	76.1	27.5	45.5	100.0	53.0	25.0	2	3	0.0	47.3	-	99.3
	삼척시	73.1	2	87.5	62.5	0	○	79.3	18.8	37.5	100.0	75.4	50.0	3	2	1.5	30.0	25.0	70.0
	홍천군	63.0	3	100.0	60.0	1	○	72.4	93.4	-	100.0	25.9	20.0	1	2	0.0	8.3	20.0	84.2
	횡성군	71.3	1	100.0	88.9	1	○	77.2	10.3	-	100.0	37.4	33.3	0	1	2.2	0.0	22.2	71.0
	영월군	65.7	1	100.0	44.4	1	○	76.1	46.4	-	100.0	49.4	22.2	*	2	0.4	8.5	33.3	78.5
	평창군	62.2	3	100.0	100.0	1	○	74.4	15.3	-	100.0	35.9	50.0	1	2	0.9	10.8	12.5	72.3
	정선군	62.6	3	100.0	100.0	1	○	77.0	44.4	-	100.0	67.7	55.6	1	2	0.0	15.3	33.3	81.2
	철원군	59.2	3	85.7	71.4	1	○	75.6	35.4	-	100.0	55.4	42.9	0	2	0.0	11.3	42.9	93.8
	화천군	78.3	2	100.0	100.0	0	○	76.0	25.3	-	100.0	25.6	60.0	1	2	0.5	6.5	40.0	100.0
	양구군	63.4	5	100.0	100.0	1	○	77.3	56.4	-	100.0	50.0	40.0	0	2	2.8	12.5	60.0	100.0
	인제군	51.4	5	100.0	100.0	1	○	70.4	100.0	-	100.0	43.1	33.3	2	2	0.0	4.8	50.0	98.8
	고성군	74.5	6	100.0	100.0	0	○	79.0	23.6	50.0	100.0	42.0	80.0	0	2	0.0	0.3	60.0	100.0
양양군	71.9	0	100.0	66.7	0	○	76.9	20.2	50.0	100.0	22.2	33.3	0	1	0.7	0.0	33.3	73.3	
충청북도	충주시	65.0	2	100.0	84.6	1	○	70.4	23.1	-	100.0	67.4	46.2	0	3	0.9	27.5	46.2	52.3
	제천시	52.7	4	100.0	75.0	1	○	68.6	30.3	-	100.0	53.1	50.0	1	2	0.0	16.3	37.5	63.3
	청원군	70.6	1	100.0	100.0	1	○	68.3	61.9	-	100.0	46.3	61.5	0	1	2.0	0.0	53.8	78.8
	보은군	55.1	5	100.0	36.4	1	○	67.8	18.6	-	100.0	34.5	9.1	1	2	2.5	8.5	63.6	50.6
	옥천군	64.8	3	88.9	33.3	1	○	76.5	13.2	-	100.0	49.3	11.1	0	3	0.0	10.3	44.4	62.6
	영동군	66.7	2	100.0	63.6	1	○	76.0	53.9	-	100.0	47.2	54.5	0	2	0.2	3.0	36.4	67.8
	진천군	65.4	1	100.0	100.0	1	○	67.4	5.2	-	100.0	59.3	42.9	0	3	0.0	10.3	42.9	73.3
	괴산군	69.7	5	100.0	54.5	1	○	74.1	69.4	-	100.0	26.8	54.5	0	1	0.0	0.0	9.1	48.4
	음성군	68.6	3	100.0	100.0	1	○	69.1	100.0	-	100.0	41.9	66.7	0	2	0.0	13.8	100.0	73.2
	단양군	75.6	4	100.0	62.5	1	○	68.9	35.1	-	100.0	55.2	25.0	1	2	0.7	0.0	12.5	66.9
증평균	69.1	1	100.0	100.0	1	○	80.5	97.1	-	100.0	56.5	100.0	1	2	0.0	2.8	100.0	77.2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계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시설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학교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여 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광역통합망 구축률 80%
충청남도	천안시	72.4	4	100.0	83.3	1	○	70.4	22.1	-	100.0	75.1	83.3	0	4	28.9	21.3	100.0	87.7
	공주시	64.0	1	100.0	100.0	1	○	71.7	36.8	-	100.0	44.8	10.0	1	2	3.8	32.5	0.0	81.2
	보령시	67.2	3	100.0	72.7	1	○	79.6	34.3	8.0	100.0	47.6	45.5	2	2	0.6	18.0	-	80.1
	아산시	62.3	1	100.0	100.0	1	○	73.7	100.0	-	100.0	51.6	90.9	2	1	0.8	0.0	100.0	90.1
	서산시	70.6	4	100.0	100.0	1	○	71.7	15.9	28.6	100.0	43.5	70.0	2	2	16.8	33.5	30.0	84.7
	논산시	66.0	3	100.0	92.3	1	○	74.3	53.2	-	100.0	52.0	30.8	0	2	1.7	34.0	7.7	85.0
	계룡시	68.6	0	100.0	66.7	0	○	67.6	9.4	-	100.0	64.3	33.3	2	2	0.0	11.8	66.7	95.2
	당진시	71.8	3	100.0	81.8	1	○	71.0	23.6	42.9	100.0	47.1	81.8	1	2	2.3	28.8	27.3	80.8
	금산군	64.2	2	100.0	80.0	1	○	72.6	33.9	-	100.0	52.8	30.0	0	2	1.4	9.5	0.0	74.3
	부여군	71.2	2	100.0	62.5	1	○	75.4	-	-	100.0	41.2	18.8	0	2	0.0	3.0	12.5	64.1
	서천군	73.5	1	100.0	53.8	1	○	77.5	1.3	42.9	100.0	59.2	38.5	0	2	0.0	5.0	15.4	50.8
	청양군	72.6	2	100.0	60.0	1	○	74.9	60.7	-	100.0	43.9	10.0	0	2	1.3	8.5	10.0	79.2
	홍성군	78.7	3	100.0	72.7	1	○	72.5	29.2	16.7	100.0	52.7	36.4	1	2	14.8	19.0	9.1	65.5
	예산군	67.5	0	100.0	66.7	1	○	72.9	38.9	-	100.0	56.0	16.7	0	2	0.0	8.3	50.0	82.6
태안군	64.5	4	100.0	62.5	1	○	65.3	16.1	19.0	100.0	44.4	37.5	0	2	0.7	12.3	62.5	97.3	
전라북도	군산시	69.3	2	100.0	90.9	1	○	78.6	3.3	27.8	100.0	88.0	45.5	1	2	0.5	33.8	0.0	77.1
	익산시	71.1	4	100.0	66.7	1	○	74.8	25.0	-	100.0	61.0	40.0	2	2	0.3	62.5	26.7	47.3
	정읍시	64.9	4	100.0	60.0	1	○	69.4	58.6	-	100.0	49.3	26.7	1	2	2.3	21.5	20.0	47.2
	남원시	68.7	2	100.0	62.5	1	○	69.8	65.3	-	100.0	61.3	31.3	0	2	0.0	69.3	31.3	38.0
	김제시	62.0	6	100.0	46.7	1	○	74.4	-	-	100.0	71.1	46.7	0	2	0.0	24.5	40.0	33.0
	완주군	62.1	4	100.0	84.6	1	○	71.7	30.8	-	100.0	40.4	69.2	0	2	0.0	2.8	23.1	57.3
	진안군	64.4	3	90.9	36.4	1	○	68.7	16.8	-	100.0	21.2	36.4	0	2	0.0	0.5	18.2	50.0
	무주군	57.5	4	100.0	83.3	1	○	61.3	60.7	-	100.0	23.3	50.0	0	2	0.2	25.3	16.7	81.3
	장수군	65.5	2	100.0	42.9	1	○	74.3	5.0	-	100.0	44.4	71.4	0	2	0.0	2.0	28.6	83.4
	임실군	62.7	1	100.0	25.0	1	○	68.3	11.3	-	100.0	45.7	25.0	0	1	0.0	0.0	100.0	50.4
	순창군	52.5	2	100.0	72.7	1	○	69.1	16.1	-	100.0	42.5	9.1	0	2	0.0	3.0	18.2	36.5
고창군	51.9	3	100.0	64.3	1	○	75.3	41.0	0.0	100.0	56.1	21.4	0	2	2.9	10.0	7.1	28.0	
부안군	52.1	2	100.0	53.8	1	○	68.1	23.4	23.8	100.0	46.6	30.8	1	2	0.0	5.0	100.0	43.3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계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시설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학교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여 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광역통합망 구축률 80%
		전라남도	여수시	56.0	2	100.0	100.0	1	○	74.7	17.9	6.3	100.0	63.5	42.9	2	2	0.0	22.5
순천시	61.6		2	100.0	81.8	1	○	72.9	72.3	0.0	100.0	58.9	81.8	0	2	0.0	36.5	54.5	69.5
나주시	58.0		1	100.0	92.3	1	○	74.0	-	-	100.0	48.3	23.1	1	2	0.3	44.8	15.4	40.9
광양시	57.3		2	100.0	71.4	1	○	74.4	87.0	0.0	100.0	65.4	14.3	1	2	0.7	12.5	100.0	98.4
담양군	64.8		3	100.0	33.3	1	○	73.9	6.9	-	100.0	31.3	58.3	0	2	5.3	5.8	33.3	80.9
곡성군	49.9		1	72.7	36.4	1	○	75.1	20.7	-	100.0	39.1	54.5	0	2	9.6	5.8	18.2	55.5
구례군	68.3		2	100.0	37.5	0	○	66.2	16.4	-	100.0	50.0	25.0	1	1	0.0	0.0	25.0	71.7
고흥군	66.1		2	100.0	75.0	1	○	75.4	7.6	6.2	100.0	58.9	37.5	1	2	0.1	11.0	31.3	40.0
보성군	51.5		1	100.0	50.0	1	○	72.9	9.8	0.0	100.0	50.7	58.3	0	1	6.1	0.0	100.0	57.9
화순군	65.7		1	100.0	23.1	1	○	73.8	8.2	-	100.0	36.0	38.5	0	2	3.3	34.0	23.1	71.7
장흥군	60.9		4	100.0	70.0	1	○	77.4	18.3	6.1	100.0	55.2	70.0	0	2	0.0	8.5	0.0	49.5
강진군	66.9		0	100.0	54.5	1	○	73.4	12.7	12.5	100.0	41.2	45.5	2	2	0.0	8.0	100.0	83.8
해남군	65.2		1	100.0	71.4	1	○	70.1	4.1	2.0	100.0	34.3	21.4	0	2	4.0	13.0	50.0	68.8
영암군	64.4		1	100.0	81.8	1	○	74.6	7.0	-	100.0	42.8	27.3	1	2	2.5	0.3	54.5	61.2
무안군	60.6		1	100.0	88.9	1	○	75.1	3.1	0.0	100.0	58.8	66.7	0	2	0.7	5.5	0.0	74.2
함평군	60.1		0	100.0	100.0	1	○	79.4	7.7	0.0	100.0	38.7	33.3	0	1	1.4	0.0	22.2	58.3
영광군	60.2		0	90.9	54.5	1	○	75.5	4.5	4.5	100.0	54.1	45.5	1	1	6.4	0.0	100.0	66.1
장성군	63.0		1	100.0	45.5	1	○	75.0	30.1	-	100.0	20.0	36.4	1	1	0.0	6.5	63.6	62.9
완도군	63.4		3	100.0	83.3	1	○	73.1	-	3.5	100.0	40.0	33.3	0	2	0.2	13.5	16.7	65.4
진도군	58.2		1	100.0	85.7	1	○	74.6	5.8	2.8	100.0	46.9	14.3	0	2	0.0	12.0	0.0	74.8
신안군	49.0	1	100.0	85.7	0	○	77.5	3.8	1.9	100.0	47.1	35.7	2	1	1.1	0.0	0.0	48.4	
경상북도	포항시	65.6	3	100.0	78.6	1	○	73.5	12.6	14.8	100.0	45.4	57.1	0	3	0.0	151.8	35.7	79.2
	경주시	64.3	5	100.0	100.0	1	○	74.2	28.2	16.7	100.0	51.6	41.7	1	4	17.2	59.5	0.0	90.5
	김천시	60.8	2	100.0	53.3	1	○	77.5	6.2	-	100.0	22.1	13.3	0	3	0.0	21.0	0.0	75.6
	안동시	65.0	2	100.0	71.4	1	○	73.3	31.3	-	100.0	18.6	14.3	0	3	0.6	42.5	0.0	64.6
	구미시	76.4	3	100.0	62.5	1	○	73.7	9.9	-	100.0	29.2	25.0	1	2	1.3	88.0	0.0	88.1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증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시설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여 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경상북도	영주시	70.5	4	100.0	60.0	1	○	77.3	76.4	-	100.0	46.1	20.0	0	2	0.0	15.0	0.0	69.8
	영천시	72.5	2	90.9	72.7	1	○	67.6	14.1	-	100.0	17.6	45.5	0	2	0.0	12.8	100.0	66.7
	상주시	60.7	2	94.4	50.0	1	○	75.2	93.1	-	100.0	31.9	5.6	1	2	0.0	10.3	5.6	63.3
	문경시	72.2	3	100.0	66.7	1	○	74.1	41.7	-	100.0	18.4	33.3	0	2	0.9	14.8	100.0	67.4
	경산시	73.3	2	100.0	75.0	1	○	74.6	-	-	100.0	26.7	50.0	0	2	0.5	78.3	12.5	81.9
	군위군	82.3	1	87.5	25.0	1	○	75.9	69.8	-	100.0	10.0	50.0	0	2	0.2	6.8	0.0	76.4
	의성군	75.3	1	88.9	38.9	1	○	76.1	46.3	-	100.0	14.0	22.2	1	1	1.1	0.0	5.6	59.5
	청송군	67.4	0	100.0	75.0	1	○	75.0	73.5	-	100.0	17.1	37.5	0	1	0.4	0.0	0.0	80.1
	영양군	57.9	1	100.0	66.7	1	○	79.7	17.5	-	100.0	20.0	33.3	1	2	0.9	0.0	50.0	52.6
	영덕군	75.8	2	88.9	44.4	1	○	75.6	14.7	17.2	100.0	31.3	33.3	0	2	4.3	7.5	77.8	67.2
	청도군	81.3	1	88.9	55.6	1	○	77.2	26.9	-	100.0	24.5	33.3	1	1	0.3	0.0	22.2	79.7
	고령군	54.7	0	100.0	62.5	1	○	75.4	24.3	-	100.0	44.3	37.5	0	2	0.0	1.0	37.5	77.5
	성주군	67.2	0	90.0	80.0	1	○	75.8	100.0	-	100.0	19.3	70.0	1	2	0.0	4.8	90.0	76.0
	칠곡군	70.7	1	100.0	87.5	1	○	80.0	25.4	-	100.0	30.4	75.0	0	2	1.6	18.0	100.0	97.5
	예천군	62.6	1	75.0	58.3	1	○	77.6	40.0	-	100.0	16.3	16.7	0	2	2.4	3.3	41.7	69.4
	봉화군	57.5	1	90.0	60.0	1	○	78.9	41.0	-	100.0	11.5	60.0	0	1	0.6	0.0	0.0	92.9
울진군	67.4	2	100.0	80.0	1	○	77.3	13.3	13.0	100.0	19.4	60.0	1	2	0.9	5.0	40.0	69.4	
울릉군	41.3	2	66.7	33.3	1	○	65.6	32.0	14.3	100.0	56.3	33.3	0	2	0.2	3.5	33.3	92.0	
경상남도	창원시	62.6	8	100.0	100.0	2	○	74.1	11.2	-	100.0	71.6	62.5	0	6	6.3	149.0	0.0	86.3
	진주시	54.9	1	100.0	87.5	1	○	69.2	26.1	-	100.0	49.1	37.5	1	2	0.0	31.3	0.0	79.2
	통영시	55.7	1	100.0	42.9	1	○	64.6	10.1	1.8	100.0	46.6	71.4	1	2	0.3	28.8	57.1	63.9
	사천시	63.8	2	100.0	75.0	1	○	78.4	16.7	2.2	100.0	40.9	75.0	0	2	0.4	29.3	12.5	79.0
	김해시	58.2	5	100.0	100.0	1	○	67.8	15.4	-	100.0	33.8	87.5	0	2	0.0	51.0	62.5	100.0
	밀양시	58.6	3	100.0	81.8	1	○	68.2	24.2	-	100.0	66.3	36.4	1	1	1.3	0.0	9.1	81.9
	거제시	53.1	4	100.0	66.7	1	○	68.4	18.9	8.5	100.0	35.3	11.1	2	2	2.8	37.8	33.3	85.2
	양산시	53.7	3	100.0	80.0	1	○	70.1	30.3	-	100.0	32.5	80.0	1	2	0.0	32.8	60.0	100.0
	의령군	57.7	3	100.0	15.4	1	○	80.7	7.6	-	100.0	12.9	38.5	0	2	0.5	5.3	15.4	93.3
합안군	55.6	1	100.0	70.0	1	○	78.2	21.4	-	100.0	23.1	30.0	2	2	0.0	21.5	0.0	91.9	

구분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		응급서비스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고속망	
시도명	시·군명	도움이 필요한 노인 주1회이상 계가노인 복지서비스	청소년 활동 진흥시설 1개이상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실 운영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개소 이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응급출동 30분 내 현장 도착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항포구 CCTV 설치	경찰출동 10분 내 현장 도착	소방출동 5분 내 도착률 55% 이상	읍·면 공공/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대여 대안 시스템	문화시설 (문화원, 문예회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행정리별 연2회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0%
		제주도	창녕군	46.6	3	100.0	50.0	1	○	73.8	60.4	-	100.0	44.3	50.0	0	1	0.0	3.5
고성군	58.9		2	100.0	42.9	1	○	79.6	8.0	4.5	100.0	25.0	21.4	0	2	0.0	2.0	14.3	80.9
남해군	59.1		0	100.0	60.0	1	○	77.0	9.5	5.4	100.0	24.7	50.0	0	2	4.5	2.0	20.0	86.0
하동군	60.8		7	100.0	61.5	1	○	72.8	12.5	7.1	100.0	23.6	84.6	0	2	0.3	2.3	0.0	85.6
산청군	64.2		4	100.0	54.5	1	○	74.5	28.4	-	100.0	27.5	36.4	1	2	0.0	11.0	36.4	80.0
함양군	70.5		1	100.0	45.5	1	○	73.1	15.6	-	100.0	26.1	45.5	0	2	0.0	4.3	0.0	86.7
거창군	68.4		2	100.0	33.3	1	○	78.4	100.0	-	100.0	35.6	16.7	2	2	1.3	15.0	8.3	79.4
합천군	55.3		4	100.0	41.2	1	○	80.2	19.3	-	100.0	36.7	41.2	0	2	7.8	2.0	11.8	68.7
제주도	제주시	72.3	12	100.0	100.0	1	○	82.9	30.2	6.8	100.0	64.3	71.4	1	4	0.1	112.5	100.0	97.9
	서귀포시	69.5	15	100.0	100.0	1	○	82.4	100.0	12.5	100.0	60.6	100.0	0	1	0.8	0.0	100.0	90.8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               |
|---------------|---------------|
| 1) 서울시 ☞ 조사종료 | 2) 부산시 ☞ 조사종료 |
| 3) 대구시 ☞ 조사종료 | 4) 인천시 ☞ 조사종료 |
| 5) 광주시 ☞ 조사종료 | 6) 대전시 ☞ 조사종료 |
| 7) 울산시 ☞ 조사종료 | 8) 세종시 ☞ 조사종료 |
| 9) 경기도        | 10) 강원도       |
| 11) 충청북도      | 12) 충청남도      |
| 13) 전라북도      | 14) 전라남도      |
| 15) 경상북도      | 16) 경상남도      |
| 17) 제주특별자치도   |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과)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합니다.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공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국가에서 정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두고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 총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설명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시행의 목적이 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32개 항목의 내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②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 ③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 ④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들어 보았다.
- ⑤ 전혀 몰랐다(처음 듣는 얘기다).

문2.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내용>과 함께 아래의 <평가기준>을 읽으신 후 각 항목의 **과거(3년 전)와 비교한 현재의 개선 정도**를 아래 <평가점수>에 따라 1~5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단위>를 보시고 해당 항목을 선생님의 '개인 및 가족'의 입장이나, 혹은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마을', '읍·면', '시·군'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정도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척도는 "① 과거에 비해 매우 악화되었다. ② 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다. ③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④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⑤ 과거에 비해 매우 개선되었다."임

### [1. 주거 부문]

항목	세부내용	평가 기준	평가 단위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1)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방수·먹는물·부엌·화장실·목욕시설·안정성·쾌적성 등에 대한 종합 기준임	주택 구조와 시설 수준	개인 및 가족	①·②·③·④·⑤
(2)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난방비 절감	개인 및 가족	①·②·③·④·⑤
(3)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 관리·운영 지원	마을	①·②·③·④·⑤
(4)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먹는 물 수질의 안전성	개인 및 가족	①·②·③·④·⑤
(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안전한 생활하수 처리	개인 및 가족	①·②·③·④·⑤

## [2. 교통 부문]

항목	세부내용	평가 기준	평가 단위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6)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	마을	①·②·③·④·⑤
(7)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여객선 이용 여건	읍·면	①·②·③·④·⑤
(8)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읍내 가는 도로 인도설치	읍·면	①·②·③·④·⑤

## [3. 교육 부문]

항목	세부내용	평가 기준	평가 단위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 여건	읍·면	①·②·③·④·⑤
(10) 고등학교	사·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우수 고등학교 육성	사·군	①·②·③·④·⑤
(11)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사·군	①·②·③·④·⑤
(12)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한다.	자녀의 방과후 학교 여건	읍·면	①·②·③·④·⑤
(13) 의견수렴	사·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사·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사·군	①·②·③·④·⑤
(14)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주민의 평생교육 여건	읍·면	①·②·③·④·⑤

## [4. 보건의료부문]

항목	세부내용	평가 기준	평가 단위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15) 진료 서비스	사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 이용 여건	사군	①·②·③·④·⑤
(16)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 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마을별 순회방문 진료	마을	①·②·③·④·⑤
(17)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약품 구입 여건	읍면	①·②·③·④·⑤

## [5. 복지부문]

항목	세부내용	평가 기준	평가 단위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18)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여건	마을	①·②·③·④·⑤
(19)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청소년의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여건	사군	①·②·③·④·⑤
(20)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여건	읍면	①·②·③·④·⑤
(21)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여건	읍면	①·②·③·④·⑤
(22)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여건	사군	①·②·③·④·⑤

## [6. 응급 부문]

항목	세부내용	평가 기준	평가 단위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23)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	마을	①·②·③·④·⑤
(24)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도서·벽지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의 신속한 출동	해당 도서(섬)	①·②·③·④·⑤



문4. 국가적인 최소 기준으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수를 줄여야 한다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번에서 (32)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을 제외할 수 있을지 5개 항목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5. 반대로 항목 수를 줄이더라도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5개 항목만 선택해 주십시오.

부문	항목	문4	문5
1. 주거	(1) 주택		
	(2) 난방		
	(3) 마을공동시설		
	(4) 상수도		
	(5) 하수도		
2. 교통	(6) 대중교통		
	(7) 여객선		
	(8) 인도(人道)		
3. 교육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10) 고등학교		
	(11) 폐교		
	(12) 방과후 학교		
	(13) 의견수렴		
	(14) 평생교육		
4. 보건의료	(15) 진료 서비스		
	(16) 순회방문		
	(17) 의약품 구입		
5. 복지	(18) 노인		
	(19) 청소년		
	(20) 아동		
	(21) 영유아		
	(22) 다문화 가족		
6. 응급	(23) 응급 서비스		
	(24)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7. 안전	(25) 경찰 순찰		
	(26) 방범설비		
	(27) 경찰 출동		
	(28) 소방 출동		
8. 문화	(29) 독서		
	(3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31)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9. 정보통신	(32) 초고속망		

문6. 현재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외에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예: 법률상담 서비스, 구인·구직 정보서비스, 고민상담 서비스, 우편서비스 등)

---



---

문7. 선생님께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란 어떤 특성의 학교라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소규모 학교 유지           | ② 농어촌 특성을 살린 전원학교  |
| ③ 인성개발 위주의 교육         | ④ 특기·적성과목에 특성화된 교육 |
| ⑤ 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과 과목 수업 | ⑥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
| ⑦ 기타(직접 기입: _____)    | )                  |

문8. 선생님께서는 농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내로 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우수한 교사            | ② 기숙사와 같은 학생 생활시설  |
| ③ 인터넷·교육방송 등을 위한 기반 | ④ 농어촌 특성을 살린 전원학교  |
| ⑤ 인성개발 위주의 교육       | ⑥ 특기·적성과목에 특성화된 교육 |
| ⑦ 자율형 공립고교화 추진      | ⑧ 영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 ⑨ 도시 수준의 교과 과목 수업   | ⑩ 기타(직접 기입: _____) |

문9.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읍·면에는 주민들이 책을 빌리거나 읽을 수 있는 전용의 도서관 시설로 무엇이 있습니까? 해당 시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국공립 공공도서관        | ② 작은도서관                 | ③ 학교도서관 |
| ④ 마을문고(마을도서관)      | ⑤ 없음 → 선택 시 다른 보기 선택 불가 |         |
| ⑥ 기타(직접 기입: _____) | )                       |         |

문10.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읍·면에는 도서관시설 외에 책을 빌려서(대출하여)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이동도서관                       | ② 도서대출 배달서비스 |
| ③ 마을회관·경로당·주민센터 등 공동시설에 도서 비치 |              |
| ④ 버스정류장·정자 등 야외에 도서 비치        |              |
| ⑤ 기타(직접기입: _____)             | )            |

문11.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농어촌 주민들이 독서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 읍·면 단위에  
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국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 ② 작은도서관 운영             |
| ③ 학교도서관 운영        | ④ 마을문고 운영              |
| ⑤ 이동도서관 운영        | ⑥ 도서대출 배달서비스           |
| ⑦ 공동시설 건물에 도서 비치  | ⑧ 버스정류장·정자 등 야외에 도서 비치 |
| ⑨ 기타(직접기입: _____) |                        |

문12.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 간 전시회, 공연, 연극 등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한 경험이 몇  
회나 되십니까?

- |             |           |            |
|-------------|-----------|------------|
| ① 1~3회 관람   | ② 4~8회 관람 | ③ 9~11회 관람 |
| ④ 12회 이상 관람 | ⑤ 전혀 없음   | ☞ 문14로     |

문12-1. 앞서 응답하신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한 장소는 주로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 ② 시·군 내 지방문화원     |
| ③ 시·군청 시설              | ④ 시·군 내 민간 문화공연시설 |
| ⑤ 읍·면사무소 시설            | ⑥ 읍·면 내 주민자치센터    |
| ⑦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내 공동시설 | ⑧ 타 시·군의 관련 시설    |
| ⑨ 기타(직접기입: _____)      |                   |

문13.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 간 전문가들이 하는 공연(연극·뮤지컬·오페라·콘서트 등)을 관  
람한 경험이 몇 회나 되십니까?

- |         |         |         |            |
|---------|---------|---------|------------|
| ① 1회 관람 | ② 2회 관람 | ③ 3회 관람 | ④ 4회 이상 관람 |
| ⑤ 전혀 없음 | ☞ 문14로  |         |            |

문13-1. 앞서 응답하신 전문공연을 관람했던 장소는 주로 어디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  
십시오.

- |                        |                   |
|------------------------|-------------------|
| ①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 ② 시·군 내 지방문화원     |
| ③ 시·군청 시설              | ④ 시·군 내 민간 문화공연시설 |
| ⑤ 읍·면사무소 시설            | ⑥ 읍·면 주민자치센터      |
| ⑦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내 공동시설 | ⑧ 타 시·군의 관련 시설    |
| ⑨ 기타(직접기입: _____)      |                   |



- ① 관련 시설 및 장소 제공
- ② 관련 장비·재료·자료 지원
- ③ 교통편의 증진
- ④ 강사 및 전문가 파견
- ⑤ 동호회 및 모임 운영 지원
- ⑥ 지역 내 공연·전시 등 개최
- ⑦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⑧ 바우처 등 경비 지원
- ⑨ 문화·여가 관련 교육활동 증진
- ⑩ 관련 정보의 제공
- ⑪ 기타(직접기입: \_\_\_\_\_ )

문18. 선생님 생각에는 향후 농어촌 주민 중 보다 많은 문화·여가 활동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청소년·학생
- ② 청·장년
- ③ 노인
- ④ 주부
- ⑤ 기타(직접 기입: \_\_\_\_\_ )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중 본인을 포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만 65세 이상	①	②
(2) 만 6세 미만(유치원생 이전)	①	②
(3) 유치원생	①	②
(4) 초등학교	①	②
(5) 중학교	①	②
(6) 고등학교	①	②

DQ2. 귀 댁에는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Q3. 귀 댁은 다문화가정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 ➡ DQ4-1로
- ② 자영업(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 ③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및 외판원 등)
- ④ 생산/기술직/단순노무직(기계·조립 종사자, 토목 관련 현장업, 경비, 배달/운반 등)



## 부록 6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 이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업무의 일환으로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어촌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3년 간 운영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동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담당자: 김광선 박사(02-3299-4361) /노승철 박사(02-3299-4107) /윤병석 연구원(02-3299-4175)

성명: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주택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은행	<5만 원>
전문분야: 보기 중 선생님의 전문분야와 <b>가장 가까운 분야 ‘한 가지’</b> 에 √표해 주십시오. ① 주거    ② 교통    ③ 교육    ④ 보건의료    ⑤ 사회복지    ⑥ 응급의료    ⑦ 사회안전 ⑧ 문화여가    ⑨ 정보통신    ⑩ 지역개발    ⑪ 지역종합행정    ⑫ 기타(직접 기입: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과)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합니다.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공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국가에서 정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두고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에 총 32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설명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시행의 목적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32개 항목의 내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표)

- ①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②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 ③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 ④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들어 보았다.      ⑤ 전혀 몰랐다(처음 듣는 얘기다).

문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표)

- ① 농어촌 주민에 최소 이상 공공서비스 공급
- ② 농어촌의 가장 취약한 공공서비스 공급
- ③ 농어촌의 가장 시급한 공공서비스 공급
- ④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
-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도·농 간 격차 해소
- ⑥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정부 등)의 정책목표 제시
- ⑦ 기타(직접 기입: \_\_\_\_\_ )

문3. 선생님께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후 3년이 지난 현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 ① 매우 향상되었음      ② 향상된 편임      ③ 변함이 거의 없음
- ④ 오히려 악화된 편임      ⑤ 오히려 매우 악화되었음
- ⑥ 기타(직접 기입: \_\_\_\_\_ )

문4.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별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주거’에서 ‘정보통신’까지) 중 각각의 **중요성을 1~9위까지로** 평가해 주십시오. (빈칸에 순위 기입)

부 문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안전	문화	정보통신
순 위	( )위								

문5. [별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내용>과 함께 아래의 <평가기준>을 읽으신 후 각 항목의 **과거(3년 전)와 비교한 현재의 개선 정도**를 아래 <평가점수>에 따라 **1~5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표)

<평가점수> ①과거에 비해 매우 악화되었다. ②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다.  
 ③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④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⑤과거에 비해 매우 개선되었다.

부문	항목	평가 기준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악화 ← → 개선
1. 주거	(1) 주택	주택 구조와 시설 수준	①...②...③...④...⑤
	(2) 난방	난방비 절감	①...②...③...④...⑤
	(3)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 관리·운영 지원	①...②...③...④...⑤
	(4) 상수도	먹는 물 수질의 안전성	①...②...③...④...⑤
	(5) 하수도	안전한 생활하수 처리	①...②...③...④...⑤
2. 교통	(6)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여건	①...②...③...④...⑤
	(7) 여객선	여객선 이용 여건	①...②...③...④...⑤
	(8) 인도(人道)	읍내 가는 도로 인도설치	①...②...③...④...⑤
3. 교육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 여건	①...②...③...④...⑤
	(10)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 육성	①...②...③...④...⑤
	(11) 폐교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①...②...③...④...⑤
	(12) 방과후 학교	자녀의 방과후 학교 여건	①...②...③...④...⑤
	(13) 의견수렴	시·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①...②...③...④...⑤
	(14) 평생교육	주민의 평생교육 여건	①...②...③...④...⑤
4. 보건의료	(15) 진료 서비스	병원 이용 여건	①...②...③...④...⑤
	(16) 순회방문	마을별 순회방문 진료	①...②...③...④...⑤
	(17) 의약품 구입	약품 구입 여건	①...②...③...④...⑤
5. 복지	(18)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여건	①...②...③...④...⑤
	(19) 청소년	청소년의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여건	①...②...③...④...⑤
	(20) 아동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여건	①...②...③...④...⑤
	(21)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여건	①...②...③...④...⑤
	(22)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여건	①...②...③...④...⑤
6. 응급	(23)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	①...②...③...④...⑤
	(24)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도서·벽지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의 신속한 출동	①...②...③...④...⑤

부문	항목	평가 기준	3년 전과 비교한 개선 정도 악화 ← → 개선
7. 안전	(25) 경찰 순찰	범죄 취약지역 경찰 순찰	①...②...③...④...⑤
	(26) 방법설비	마을 내 방법 CCTV 설치	①...②...③...④...⑤
	(27) 경찰 출동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	①...②...③...④...⑤
	(28)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①...②...③...④...⑤
8. 문화	(29) 독서	도서의 대출·열람 여건	①...②...③...④...⑤
	(3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예회관, 문화원 등에서의 문화공연 관람 기회	①...②...③...④...⑤
	(31)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읍·면 단위에서의 문화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 기회	①...②...③...④...⑤
9. 정보통신	(32) 초고속망	초고속 인터넷 이용 여건	①...②...③...④...⑤

문6. 국가적인 최소 기준으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수를 줄여야 한다면 **[별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1)번에서 (32)번까지 중에서 **어떤 것을 제외**할 수 있을지 **10개 항목**만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 )번, ( )번

문7. 반대로 항목 수를 줄이더라도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10개 항목**만 **[별지]**에서 선택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 )번, ( )번

문8.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외에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빈 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률상담서비스, 구인·구직정보서비스, 고민상담서비스, 우편서비스 등)

추가 기준 항목 이름(안)	세부 내용

문9. 지난 3년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하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정도> 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한다.  
 ③ 그렇다고 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④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⑤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반대 ←	→ 동의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여러 목표치가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이 너무 많아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 관련 중앙 부처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4) 각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5)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과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6)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국가적 기준항목은 최소화 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7)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이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8) 이미 삶의 질 향상 대책 예산에 포함되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9)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의 지원보다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0)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다수 항목이 공식 통계 부재 등으로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가 곤란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대 국민 또는 농어촌주민 홍보가 부족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부재하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16) 기타 의견(직접 기입)	기타 의견이 있을 시 외쪽 빈칸에 기재해 주십시오	

문10. 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1)~(16)까지 중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5가지 이하로만 선택한다면 무엇인지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번호	대안 설명
( )번	

문11. 농어촌서비스기준이 현재와 같이 정해진 기간(5년: 삶의 질 계획기간) 내 관련 부처별로 달성해야 할 중기적인 정책목표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예: 먼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달성)과, 이와는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농어촌 주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항목과 그 수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즉 언젠가는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의 기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예: 모든 농어촌 주민에 안전한 마실 물 공급)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 ① 현재처럼 농어촌서비스기준이 **5년간의 중기 정책목표로 기능**해야 함
- ② 오히려 지금보다 더 짧은 기간 내 달성해야 할 **단기적 정책목표로 운영**되어 현안에 대처해야 함
- ③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언젠가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의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함
- ④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도 함께 제시. 즉 2 TRACK 접근**
- ⑤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도 함께 제시**하며(이상 중앙정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발전목표나 지역 현실을 감안한 5년 중기목표로 (시·군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에) 함께 제시. 즉 **3 TRACK 접근**
- ⑥ 기타(직접 기입: \_\_\_\_\_ )

문1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로 관련 부처의 기준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달성정도) 점검·평가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시하고 해당 부처는 이에 대해 익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지역(시·군)별, 기준 항목별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담아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표)

- ① 제시된 의견대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부처별로 매년 익년도의 기준 이행촉진 방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② 매년보다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주기에 맞추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향후 5년 간 기준 이행촉진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함
- ③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기타(직접 기입: \_\_\_\_\_ )

문1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등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차원(시·도 및 시·군)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어떠한 별도의 조직도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기준 달성을 위해 어떤 형태의 추진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 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특성 상 수많은 실·과·소가 관련되므로 별도의 추진조직을 둘 수 없음
- ②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위해 농정 담당 부서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업무를 전담해야 함
- ③ 다양한 실·과·소의 업무가 연관되므로 기획·예산 담당 부서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업무 전담
- ④ 별도의 TF를 꾸려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업무 전담
- ⑤ TF보다는 별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해야 함
- ⑥ 기타(직접 기입: \_\_\_\_\_ )

**[문화부문 심층 조사]** 이하에서는 문화부문(문화·여가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14.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문화부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기준 항목의 세부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적합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아래 <적합성 정도>에 따라 ①~⑤로 평가해 주시고(√표), 세부 내용으로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제일 오른쪽 빈칸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합성 정도>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대체로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③ 딱히 적합하다 또는 부적합하다 판단이 어렵다. ④ 대체로 적합한 편이다.  
 ⑤ 매우 적합하다.

기준 항목	세부 내용	적합성 정도		대안적인 세부 내용			
		부적합 ←	→ 적합				
도서관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①	②	③	④	⑤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으며	①	②	③	④	⑤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추가해야 할 문화부문 서비스 기준이 있으면 왼쪽에 기입해 주십시오

문15. 독서 항목은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기준이며, 이에 따라 읍·면 단위로 **도서관의 운영 여부(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도서배달서비스 등 포함)**로 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적인 기준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표)

- ① 현행 기준대로 읍·면 단위로 독서 항목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마을문고 등을 포함해 행정리별로 독서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읍·면과 행정리 중간 범위인 마을권역별로 독서 기준 항목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접근성 보다는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하여 거점 읍·면 단위나 시·군 단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기타(직접 기입: )

문16. 현행 문화부문 서비스기준은 주로 공급자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수동적인 문화서비스 소비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정도가 서비스기준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에 대한 **객관적 점검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행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표)

- ① 반대      ② 동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 \_\_\_\_\_ )

문17. 선생님께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향후 어떤 것이 보완 또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표)

- |                    |                   |
|--------------------|-------------------|
| ① 관련 시설 및 장소 제공    | ② 관련 장비·재료·자료 지원  |
| ③ 교통편의 증진          | ④ 강사 및 전문가 파견     |
| ⑤ 동호회 및 모임 운영 지원   | ⑥ 지역 내 공연·전시 등 개최 |
| ⑦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⑧ 바우처 등 경비 지원     |
| ⑨ 문화·여가 관련 교육활동 증진 | ⑩ 관련 정보의 제공       |
| ⑪ 기타(직접기입: _____ ) |                   |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전문가 설문조사 별지]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항목/세부내용

부문	항목	세부내용
1. 주거	(1)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b>*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 방수 먹는물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안정성 쾌적성 등에 대한 종합 기준임</b>
	(2)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3)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2. 교통	(6)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7)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8)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11)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12) 방과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13)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14)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4. 보건 의료	(15)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능하다.
	(16)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17)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5. 복지	(18)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20)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21)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도달할 수 있다.
	(22) 다문화 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응급	(23)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24)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7. 안전	(25)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26) 방범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27)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28)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8. 문화	(29)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3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31)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9. 정보 통신	(32)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참고 문헌

- 강원문화재단. 2013. 「강원, 문화의 숲을 가꾸다」.
- 김광선·채중현·윤병석. 2012.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채중현·윤병석. 20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송미령·김용렬·권인혜·윤병석. 2010.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선. 2010. “무엇으로부터 소외인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미술교육논총」, 24(1): 153-175.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주요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문화예술 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송미령·박대식·김광선·성주인·조미형·심재현·윤병석·정규형·류경선. 2013.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송미령 등, 2009a).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시현·성주인·김광선·권인혜. 2009(송미령 등, 2009b).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라북도. 2012.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슬로시티, 문화·체육복지 중장기 계획」.
- 조현성·김영범·이주연·신정호. 2004. 「노인문화복지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2012. 「2012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 연구보고서」.
- OECD. 2008. “Public Service Delivery in Rural Areas: Issue Paper”. OECD.